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본연구 01-0

충청도 관찰사 기초 연구

임 선빈

2002. 10.

충남발전연구원

발 간 사

한국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실시된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근대시기의 군주제도 하에서는 지방관을 국왕이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각 고을에 파견된 수령들과 도 단위에 파견된 관찰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국왕이 임명하여 각도에 파견한 명실상부한 지방장관이었다.

우리 나라의 역사는 최근까지도 중앙집권사회였으므로, 참된 의미의 지방문화가 존재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지역사와 지역문화는 중앙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리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의 역사와 문화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충청도 관찰사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관찰사는 고려말에 처음 등장하였으니, 충청도에 관찰사가 부임하기 시작한 지 6세기가 지났으며, 충청도 관찰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충청감영이 충남의 공주에 개영된 지도 400년이 되었다. 공주에서는 감영개영 행사가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충청도 관찰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충청도 관찰사에 대해서는 역대 관찰사의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대기에서 일일이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관찰사 연구의 기초작업은 물론, 향후 충청지방 지역사와 지역문화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임선빈 충청학연구부장에게 감사한다.

2002년 월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차 례 ◆

발 간 사

I. 머 리 말	1
II. 외관과 외관제도	3
1. 외관과 외방사신	3
2. 외관제의 정비와 운영	6
III. 관찰사제의 확립과 변천	11
1. 조선초기 관찰사제의 확립과정	11
2. 관찰사제의 운영구조와 변천	17
IV. 충청도관찰사의 재임실태와 주요업적	29
1. 충청도의 연혁과 충청도관찰사	29
2. 충청도 도선생안의 검토와 복원	38
3. 충청도관찰사의 재임실태 분석	84
4. 충청도관찰사의 주요업적과 관련유적	96
V. 맷 음 말	108
◆ 참 고 문 헌	110

◆ 표 차례 ◆

〈표 1〉 조선시대 충청도 명칭의 변천	31
〈표 2〉 조선시대 충청도의 고을별 외관파견 규정	34
〈표 3〉 조선시대 충청도에 파견된 외관 수	37
〈표 4〉 충청도 도선생안 (복원)	40
〈표 5〉 충청도관찰사의 성관별 인물	85
〈표 6〉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된 인물의 성관분포	92
〈표 7〉 충청도관찰사 송덕비 현황	106

I. 머리말

지방화시대에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의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조선시대 관찰사에 관한 연구와 정리는 지방행정의 입장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연구 작업의 하나이다.

고려말에 등장한 관찰사는 조선초기에 8도제가 확립되면서 도내의 모든 외관을 관할하는 종2품 외관직으로 정착되었다. 관찰사(觀察使)는 감사(監司) 외에 방백(方伯), 도백(道伯), 도신(道臣), 도수신(道帥臣), 방면지임(方面之任), 번임(藩任), 열사(臬司) 등으로도 불리웠는데, 고려시대의 안찰사·안렴사와는 달리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명실상부한 지방장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도 관찰사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지역사 연구의 토대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제2장 ‘외관과 외관제도’는 관찰사를 포함한 조선시대 외관의 존재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외관을 고려시대의 외직 및 조선시대의 외방사신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고, 조선초기 외관제의 정비과정과 운영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관찰사제의 확립과 변천’에서는 조선초기 외관제의 운영구조 속에서 관찰사제가 어떻게 확립되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확립된 관찰사제가 어떠한 운영구조 속에서 운영되었는지, 관찰사제의 변천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제4장 ‘충청도 관찰사의 재임실태와 주요업적’은 충청도 관찰사에 대한 기초조사와 정리이다. 먼저 충청도의 연혁과 도명의 변경, 조선시대 충청도의 외관파견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충청도 도선생

안(道先生案)에 대해 검토하면서 여기에 누락된 관찰사 명단을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하여 복원한 후, 이들의 재임실태와 주요업적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외관과 외관제도

고려시대 수 백년 간 추구되어온 중앙집권화 정책의 결과 조선초기의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면 형식적으로는 일단 중앙집권제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제의 다양한 변수 가운데 군현제(郡縣制)와 외관제(外官制)는 중요 요소이다. 특히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군현제와는 달리, 외관제는 조선초기에 이르러 새로 등장하는 관찰사를 중심으로 정비되고 확립됨으로써 『경국대전』에서는 경관직에 상응하는 외관직이 설정되고, 이러한 틀은 조선말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조선시대 외관제도의 틀이 마련되는 과정과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외관과 외방사신

조선초기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이전(吏典)」과 「병전(兵典)」에 각각 경관직(京官職)에 상응하는 외관직(外官職)이 설정되어 있다. 동반직에 해당하는 이전 외관직의 경우, 종2품의 관찰사와 부윤, 정3품의 대도호부사·목사, 종3품의 송의전사·도호부사, 종4품의 (송의전수)·서윤·군수, 종5품의 (송의전령)·도사·판관·현령, 종6품의 (송의전감)·찰방·현감·교수, 종9품의 참봉·훈도·역학훈도·왜학훈도·심약·검률·역승·도승 등이 외관의 범주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중앙에서 외

1) 외관과 외관제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朝鮮初期 外官制度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8)를 중심으로 요약했음을 밝힌다.

방에 파견되어 일정기간 상주하는 관료들이었다. 이와 같은 조선초기 외관직의 설정은 고려시대와는 다른 점이다.

원래 향호(鄉豪)를 통한 지방지배가 이루어지던 고려초기에는 후대의 외관기능을 각 군현의 읍사(邑司)를 운영하던 지방세력이 담당하고 있었다. 중앙에서는 외방(外方 : 지방, 전근대시기에는 오늘날의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을 ‘외방’이라고 지칭하였다)을 통제하기 위해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일정기간 한 지역에 상주하는 외관이 아니었다.

고려 성종 2년부터 상주외관(常駐外官)이 파견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 수나 기능에 있어서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고려전기에는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의 구분보다 경관(京官)과 향직(鄉職)의 구분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후 외관의 중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주속현체제(主屬縣體制)에서 주현에만 파견되던 고려시대의 외관은 한 고을에서 장관(長官)과 속관(屬官)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관직을 지닌채 외방에 파견되고 있었고, 녹봉도 받은 경창(京倉)에서 지급 받았다. 따라서 고려시대 외관의 존재형태는 경·외관 미분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²⁾ 또한 이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는 외관직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이 후대의 ‘상주외관’과 ‘외방사신’(外方使臣 : 이는 權設職으로 京官에 해당)을 ‘외직(外職)’으로 설정하여 함께 취급하고 있다.³⁾

今有·租藏, 兵馬使, 行營兵馬使, 轉運使, 安撫使, 按廉使, 監倉使, 廉問使,

南京留守官, 團練使·都團練使·刺使·觀察使, 大都護府, 諸牧, 大都督府,

2) 이와 같은 外官 屬官制와 京官兼帶의 실상은 <慶州府尹先生案>에서도 확인된다

3) 여기에서 ‘外方使臣’이란 중앙에서 국왕의 명을 받고 外方에 파견되는 사신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로, 넓은 범주로는 觀察使·水陸節制使(節度使) 등도 외방사신에 포함된다. 반면에 『고려사』 여복지 노부조나 식화지 녹봉조에서는 외관아종이나 외관록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백관지 외직조의 상주외직만을 다루고 있다.

中都護府, 防禦鎮, 州·郡, 諸縣, 諸鎮, 館驛使, 勾當, 儒學教授官⁴⁾

고려 중·후기 감무(監務)의 증치(增置)는 고려시대의 외관 속관제를 무너뜨리고, 경·외관직의 분화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공민왕 5년에 이르

‘대(帶)’하지 않는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경·외관직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전임외관(專任外官)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령의 전임외관화가 이루어진

수령의 임기가 강조되는 등 외관직에 대한 인사규정이 정비되었다. 수령의 기능도 전기의 찰이치(察吏治)에서 벗어나 수령오사(守令五事)와 같은 보다 실제적인 지방사무가 주 임무로 부각되었다.

조선초기에 이르면, 고려의 외방사신 가운데 일부는 외방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외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외방사신으로 남게 되었다.

조선초기 외방사신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고, 그 명칭은 파견지역, 파견 목적과 기능, 관품(官品)에 따라 달라졌는데, 관품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때 제사(諸使), 경차관(敬差官), 별감(別監) 그리고 기타 사헌부 판원[行臺監察·分臺御史]과 어사(御史)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조선초기 제사(諸使)는 원래 다양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었고, 기능에 따라 명칭도 달리 사용되었으나, 성종조에 이르면 대체로 품계를 기준으로 한 (도)체찰사(都體察使)·(도)순찰사(都巡察使)·찰리사(察理使)로 정리되어 갔다. 조선초기에 처음 등장하는 경차관(敬差官)은 참상관 외방사신의 명칭으로, 황제가 파견하던 중국의 흠파관(欽差官)에 상응하여 명명된 것이지만, 그 기능은 고려의 찰방(察訪)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차관의 등장은 조선초기 외방사신 파견의 활성화에 공헌했다. 별감(別監)은 주로 특별한 기능을 띠고 파견된 외방사신으로 경차관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사

4) 『高麗史』 卷77, 志31 百官2 外職條.

행 회수와 그 기능은 축소되어 유지(宥旨)·점마(點馬)·행향(行香) 등과 같은 몇몇 분야에만 남게 되었다. 이들 외방사신류가 조선말기의 『증보 문현비고』 직관고에서는 권설직조에 포함되어 있다.

2. 외관제의 정비와 운영

조선초기에는 군현제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고을에 원칙상 1인의 수령(守令)을 파견하고, 교화를 담당하는 교관(敎官)도 목민관이 파견되는 모든 군현에 파견하고자 하여, 원칙상 모든 고을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외관이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수령과 교관은 고려말부터 이미 전임외관(專任外官)이었다. 그러나 여말까지만 해도 모든 고을에 수령과 교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전기부터 수령(守令) 증치(增置)가 행해지고 있었으나, 조선초기에 이르러서야 군현제 개편과 정비가 마무리되어, 외방의 모든 고을에 빠짐없이 수령이 파견될 수 있게 되었다. 교관(敎官)도 여말까지는 목(牧)·부(府)와 같은 큰 고을에만 파견되던 것이 조선초기에 외방의 향교교육이 강화되면서 점차 교관파견 고을이 증가하였고,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면 모든 고을에 교관이 설치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수령과 교관의 증치와 함께 고려의 외방사신(外方使臣) 가운데 일부는 외방(外方)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외관(外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니 관찰사(觀察使)와 찰방(察訪)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안렴사(按廉使)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여말에 처음 등장한 관찰사의 기능에는 관찰출척(觀察黜陟)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감창(監倉)·안집(安集)·전수(轉輸)·권농(勸農)·관학(管學)·형옥(刑獄)·병마(兵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개 고려시대에는 각각 별도의 사신을 파견하여 수행하던 업무였다. 따라서 조선초기에 관

찰사를 파견하면서 조정에서 기대하던 역할에는 사명(使命)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국용(國用)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찰사를 한때 경직겸차(京職兼差)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찰사의 외관적 성격(外官的性格)에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반면에 감사겸목법(監司兼牧法)의 실시는 관찰사의 외관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초기에는 관찰사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경관겸차(京官兼差)와 겸목법(兼牧法)의 치폐가 반복되면서 관찰사의 사신적 성격(使臣的性格), 즉 경관(京官)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약화되어 『경국대전』에서는 관찰사가 외관직(外官職)에 편입되고 있다. 한편 관찰사의 수령관(首領官)인 경력(經歷) · 도사(都事)도 관찰사의 성격변화와 짹하여 경관적 성격에서 점차 외관적 성격으로 나아가 『경국대전』의 외관직에 편입되고 있다.

조선초기의 찰방(察訪)도 고려시대 봉명사신(奉命使臣)이었던 찰방사(察訪使)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태종조에는 경관직을 지닌 채 임명되고 있었고, 종류도 정역찰방(程驛察訪) 외에 수군찰방(水軍察訪) · 참로찰방(站路察訪) · 해도찰방(海道察訪) · 행궁찰방(行宮察訪) · 수가찰방(隨駕察訪) 등 다양했다. 역로(驛路)와 관련하여 파견되던 정역찰방의 기능도 교통전담관원인 역승(驛丞)과 규찰관원인 관찰사(觀察使)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조 중반기에 이르면 이 찰방은 관찰사의 고과(考課) 대상이 되고 경직(京職)의 임명이 배제되는 등 외관적 성격을 지녀가다가, 후반기에는 외관화(外官化)하면서 그 자질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후에도 찰방은 역승과 관련하여 치폐가 반복되기도 하고 역승과 함께 설치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경국대전』에서는 역승(驛丞)과 함께 외관직(外官職)에 편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초기 사신적(使臣的) 외관(外官)의 전임외관화(專任外官化)는 여말에 이미 전임외관화한 수령(守令) · 교관(敎官) 등의 중치와 함께 조선초기 『경국대전』의 외관제(外官制)가 확립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⁵⁾

조선초기에는 외관의 수적 증가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관직 인사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먼저 수령직 인사규정이 정비되면서 이 규정이 다른 외관으로 확대·적용되었고, 나아가 경관직 인사운영과 외관직 인사운영의 통일성이 기해졌다. 이와 같은 외관의 증가와 인사규정의 정비과정을 통해 경국대전 체제의 외관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조선초기에 정비된 외관제도는 관계제도, 겸직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운영되고 있었다. 원래 조선 건국초의 외관원(外官員)은 참상관 중심이었다. 수령은 물론 관찰사조차도 당상관의 개념이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재상(宰相)에 해당하는 경관직을 지니고 부임하지 않는 한, 당상관이 아닌 참상관이었다. 동일한 고을에 부임하는 수령직 [외관직]의 명칭도 부임하는 외관원의 품계에 따라 달리 호칭되었다.

그런데 세종 전반기에 경·외관 통계법(通計法)의 실시, 순자법(循資法)의 강화 등으로 경·외관 인사운영이 형식상 통일되면서, 세종 13년에는 『주관육익』에 근거하여 외관직의 관계가 고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세종조 중엽에도 여전히 경관직에 비해 외관직은 차별되었고, 관원들은 외관직을 기피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수령을 거치지 않은 자의 승진규제(세종 22)와 경관직에 실시하던 행수법(行守法, 세종 24년)의 외관직 확대 실시(세종 25년)였다. 행수법은 외관직 관계의 고정으로 인해 야기된 관원(官員)의 관계(官階)와 관직(官職)의 관계(官階)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행수법의 실시로 관계가 관직에서 분리·독립되자, 관제 운영의 기준이 관직보다는 관계를 중시하게 되면서 당상관의 개념도 관계를 기준으

5) 조선초기에는 군현제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고을에 원칙상 1인의 守令을 파견하고, 교화를 담당하는 教官도 목민관이 파견되는 모든 군현에 파견하고자 하여, 원칙상 모든 고을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외관이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

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종조 이후에는 수령을 포함한 외관직도 당상관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상 외관의 등장은 범제상으로도 당상 외관과 당상관이 아닌 외관의 구분을 가져왔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당상외관의 등장과 짹하여 참봉·훈도·심약·검률·역승·도승 등의 참외외관은 『경국대전』의 규정과 같은 종9품으로 정리되었으니, 이와 같은 현상은 외관관계의 확대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수령직과 같은 외관직의 품계(品階)는 조선 건국초부터 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외관직의 품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범위만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관직도 부임하는 외관원(外官員)의 품계에 따라 관직명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세종 후반기 이후 외관직의 품계가 제정되고 나아가 관계(官階)가 관직(官職)과 분리되어 관계를 기준으로 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면서 『경국대전』의 외관직 품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원래 여말선초에는 참상관(叅上官) 뿐이었던 수령직이 당상관(堂上官)의 범위가 확대되고 개념이 변하면서, 큰 고을의 수령직은 당상관에 참여하여 『경국대전』에는 당상수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초기 다양한 외관겸직은 경관이 외관을 겸직하는 경우와 외관이 외관을 겸직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경관직과 외관직이 분리되어 별도의 관직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경국대전 체제가 성립되기 전의 조선초기에는 경·외관직의 분화(分化)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관직에 따라서는 경관을 본직으로 하고 외관을 겸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고려 공민왕 5년에 전임외관의 등장으로 경·외관직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경국대전』과 같은 외관직의 확립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말에 일찍이 전임외관화한 수령직의 경직겸차(京職兼差)는 드문 일이었으나, 사신적 외관의 경직겸차는 자주 이루어졌다. 조선초기에 외관이 외관을 겸직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였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제

도화되어 법전의 규정으로 남게 되었다. 외관이 외관을 겸직하는 다양한 사례는 동·서반(東西班) 외관의 상호겸직과 동·서반 외관의 반내겸직(班內兼職)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동·서반 외관의 상호겸직은 관찰사의 병·수사(兵水使) 겸직, 병사(兵使)의 수령 겸직, 수령의 병마직(兵馬職) 겸직, 수령의 수군직(水軍職) 겸직을 들 수 있고, 동·서반 외관의 반내 겸직은 관찰사의 수령 겸직, 병사의 수사 겸직을 들 수 있다. 그 외 감목관은 동반직(東班職)인 수령·역승과 서반직(西班牙職)인 만호·천호 등이 지역상황에 따라 겸직할 수 있었다.

III. 관찰사제의 확립과 변천

1. 조선초기 관찰사제의 확립과정

조선초기에는 외관제의 운영구조 속에서 관찰사제가 확립되었다. 『경국대전』에 종2품 외관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관찰사는 세조 12년(1466)의 신관제(新官制)에서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는 명칭이 관찰사(觀察使)로 바뀐 것이다.⁶⁾ 이 도관찰출척사는 창왕(昌王) 즉위년(1388년)에 처음 등장하는데, 양부(兩府) 출신으로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을 하사받아 외방의 각도에 파견되었다.⁷⁾ 그러나 이 관찰사는 태조가 즉위하기 직전인 공양왕 4년(1392) 4월에 혁파되어 안렴사(按廉使)로 복구되었다.⁸⁾ 그러니까 태조가 즉위할 때에는 외방에 안렴사가 파견되어 있었다. 태조의 즉위교서에서도 외방 각도의 안렴사가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조는 즉위한 후에도 외방에 안렴사를 두 차례 파견하고 있다.⁹⁾ 여말선초의 이들 안렴사는 경관직을 지닌채 춘추(春秋)로 2회 파견되고 있었고,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보고하는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관직을 지니고 있던 이 안렴사는 전임(專任) 외관이라고 하기 어렵다.

태조는 두 번째 파견한 안렴사의 임기가 끝나는 2년 9월부터 관찰출척

6) 『世祖實錄』 卷38, 世祖 12年 正月 丁未條, (8-2가). 같은 책, 戊午條, (8-3라).

7) 『高麗史節要』 卷33, 新昌 卽位年 8月條.

8) 『高麗史節要』 卷35, 奉讓王 4年 4月條.

9) 卽位 후 2개월이 지난 9월에 한 차례, 다시 이들의 6개월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3월에 또 한 차례 파견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안렴사가 春秋로 2회 파견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太祖實錄』 卷2, 太祖 元年 9月 己丑條, (1-29가). 같은 책 卷3, 太祖 2年 3月 戊辰條, (1-42가).]

사(觀察黜陟使)를 보내고 있는데,¹⁰⁾ 이 관찰출척사의 파견은 정도전의 외방지배 구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¹¹⁾ 따라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관찰사제를 혁파하고, 한때 경기좌·우도와 5도에 안렴사를 파견하였다.¹²⁾ 그러나 이들 안렴사는 후에 안렴사 제직시 새로 개간한 밭을 양전(量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파출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³⁾ 아마 자질이 부족하여 중앙의 의도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관찰사제는 태종 원년 11월 사간원의 상소에 의해 다시 복구된다. 그런데 당시 사간원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의해 관찰사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자, 태종은 이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¹⁴⁾, 이 도관찰사에게 외官의 출척을 전담시키면서 일체의 사명(使命)을 과(罷)하고 있다.¹⁵⁾ 그러니까 도관찰사를 파견하면서 중앙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외방지배를 하기 위해 보내고 있던 다양한 사명의 역할을 도관찰사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시기 관찰사의 직함에는 의정부의 관제개편으로 의정부의 지사(知事)·참지사(叅知事)가 혁파되기 전까지는 조선초기의 여러 대신이 의정부의 직을 겸대(兼帶)했던 것과 같이 동지의정부사(同知議政府事) 또는 동참지의정부사(同叅知議政府事)가 겸대되어 있었다.¹⁶⁾ 따라서 이와같은 관찰사를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앞

10) 『太祖實錄』 卷4, 太祖 2年 9月 乙卯條, (1-49나).

11) 鄭道傳은 『經濟文鑑』에서 監司條를 설정하여 중국과 고려에서 시행된 監司制度의 연혁을 고찰한 후, 本朝[朝鮮]의 都觀察使가 좋은 제도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監司의 責務와 資質에 대해서도 監司當擇其人, 監司當盡其職, 監司當行舉劾, 監司不可過爲寬厚, 監司當親巡遠地라는 5조목을 설정하여 설명한 후, 考課法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三峯集』 卷10, 經濟文鑑 下, 監司條).

12) 『太宗實錄』 卷1, 太宗 元年 正月 甲申條, (1-194나).

13) 『太宗實錄』 卷4, 太宗 2年 7月 辛丑條, (1-242나).

14) 『太宗實錄』 卷2, 太宗 元年 11月 辛卯條, (1-216나).

15) 『太宗實錄』 卷3, 太宗 2年 2月 辛未條, (1-226나).

16) 各道 觀察使의 직함에 同知議政府事·同叅知議政府事를 띠던 것이 혁파된 것은 태종 14년 4월의 일이다.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4月 廿中條, 2-13나.)

서 언급한 안렴사는 말할것도 없고 관찰사도 외관이라기 보다는 경관의 성격이 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찰사의 정식명칭도 ‘도관찰출척사 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형옥병마공사(都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로서 여기에는 도관찰출척사라는 본직(本職) 외에 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형옥·병마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¹⁷⁾ 고려시대에는 이들 각각이 감창사(監倉使)·안집사(安集使) 등 별도의 사신(使臣)으로 파견되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건국초에는 관찰사제가 실시되면서 관찰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지대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유능한 관찰사의 확보는 조정의 관심사였다. 원래 관찰사는 고려말에 처음 실시될 때부터 대간에 의해 천거되고 있었는데, 태조도 3년 6월에 대성(臺省)의 장무(掌務)에게 승지(承旨)·전서(典書) 이상으로 관찰사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면 현직·퇴직을 막론하고 관찰사 적임자를 천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이들에 의해 천거된 인물을 다음날 도관찰사(都觀察使)로 임명하였다.¹⁹⁾ 이와같은 대간의 관찰사 천거는 그대로 『경제육전』 원전(元典)에 실리고 있다.²⁰⁾ 또한 원전에는 도관찰사나 안렴사로서 그 직책에 적절하지 않은 자는 사헌부에서 아뢰고 규찰하여 다스린다는 규정도 실려 있었다.²¹⁾ 이는 조선 건국초부터 관찰사의 적임자 확보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육전』 원전의 규정이 반드시 그대로 잘 실행되지 는 않았다. 그리하여 태종 13년에 사간원에서는 감사의 선임은 정부(政府)·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천거케 하자고 다시 건의하였고²²⁾, 17년에는 원전에 규정된 대간만이 아니라 정부(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으로

17) 張炳仁, 앞의 논문, 171쪽.

18)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6月 千辰條, (1-65나).

19)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6月 癸巳條, (1-65나).

20)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12月 乙酉條, (2-194가).

21) 『世宗實錄』 卷72, 世宗 18年 5月 丁丑條, (3-675나).

22) 『太宗實錄』 卷26, 太宗 13年 7月 己丑條, (1-677나).

하여금 명망있는 사람을 천거하도록 청함으로써 이 규정이 항식화(恒式化)되었다.²³⁾ 그런데 이 관찰사의 천거문제는 세종 5년의 경관겸차(京官兼差)가 실시되면서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관찰사의 천거문제가 논의된다거나 천거가 이루어진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경관겸차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구전임명(口傳任命)을 행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후 세종 16년 관찰사(觀察使)의 경관겸차제도(京官兼差制度)가 폐지되면서²⁴⁾ 관찰사의 천거문제는 다시 거론된다. 이러한 관찰사의 천거규정은 후에 『경국대전』에도 반영되고 있다.²⁵⁾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초기 관찰사에게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명(使命)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찰사를 외관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경관겸차의 시비는 이와 같은 관찰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도관찰사의 경관겸차는 정종 원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판중추원사 정홍(鄭洪)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²⁶⁾ 그러나 이때의 경관겸차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또한 세종 5년 12월에 이조판서 허조(許稠)가 본조(本朝)의 구제(舊制)에서도 경관으로 도관찰사와 안렴사를 겸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각도의 도관찰사·병마도절제사·수군도안무처치사, 관찰사의 수령관인 경력·도사의 경관직 겸임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²⁷⁾ 정종조에 실시되던 경관겸차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된 것 같지는 않다.

세종 5년에 재개된 관찰사의 경관겸차는 세종 16년까지 실시되었다.²⁸⁾

23) 『太宗實錄』 卷34, 太宗 17年 12月 乙酉條, (2-194가).

24) 이때 觀察使의 京官兼差가 폐지된 것은 世宗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국가에 승평일이 오래 계속되어 國用의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25) 『經國大典』 卷1, 吏典 薦舉條.

26) 『定宗實錄』 卷2, 定宗 元年 12月條, (1-160나).

27)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2月 甲寅條, (1-567가). 단 이때에 평양·함길양도의 관찰사는 舊例에 의해 평양·함흥의 부윤을 겸하고, 병마절제사는 판안주목사·관길주목사를 겸하도록 하자고 청하고 있다.

28) 세종 5년의 경관겸차는 앞서 소개한 이조판서 許稠의 계문이 있은지 나흘 후에 이루어진 인사조치이다.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2月 戊午條,

그런데 경관겸차가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는 여말부터 관찰사의 칭호에 붙어있던 ‘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형옥병마공사(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라는 긴 직함도 함께 삭제되었다.²⁹⁾ 물론 이 긴 직함은 세종 16년에 경관겸차가 폐지되면서 다시 복구되고 있다.³⁰⁾ 또한 세종 16년에는 경관겸차를 폐지하면서 관찰사·절제사·처치사·수령관 등을 전례에 따라 하비(下批)로 임명하여 보내고, 녹봉(祿俸)은 실직(實職)에 따라 한 등을 감하여 나누어 주고, 육조(六曹)의 참판(叅判)과 참의(叅議)를 각각 하나씩 혁파하여 참의 넷을 중추원에 이속시켜 첨지(僉知)로 삼고 있다.³¹⁾

조선초기에 관찰사나 병·수사의 경관겸차가 실시된 가장 큰 이유로는 그 동안 국용(國用)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지적되어 왔다.³²⁾ 물론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종조와 세종조에 있었던 관찰사의 경관겸차 시비에서 경관겸차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배경에는 관찰사가 아직 외관직에 확고하게 편제되어 있지 않고 사명의 성격을 지닌 경관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관찰사를 경관으로 겸차할 때에는 구전차견(口傳差遣)하고, 경관으로 겸차하지 않을 때에는 하비차견(下批差遣)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각도 감사와 병·수사의 경관겸차에는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했다. 1,2품 관원이 부족하여 제사(祭祀)에 현관(獻官)의 품계를 낮추어 조정하여 3품관까지 참여시키고 있으며³³⁾, 중앙군의 절제사에 전에는 2품 이상 첨총제(僉摠制)를 임명하던 것을 전함(前衡)도 임명해야만 했다.³⁴⁾

2-567다)

29) 『世宗實錄』 卷22, 世宗 5年 12月 甲寅條, (2-567가).

30) 세종 16년에 이루어진 觀察使의 긴 兼職銜 복구는 <경상도선생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1) 『世宗實錄』 卷66, 世宗 16年 10月 己巳條, (3-598가).

32) 張炳仁, <朝鮮初期의 觀察使> (『韓國史論』 4, 서울대 국사학과, 1978) 141-143쪽.

33) 『世宗實錄』 卷28, 世宗 7年 11月 癸卯條, (2-699나).

한편 세종말에 감사가 목사(牧使)나 부윤(府尹)을 겸하도록 한 조치는 관찰사의 외관적 성격이 확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감사의 겸목은 고려시기부터 외관으로 인식되고 있던 양계지방의 관찰사에게는 이미 일찍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일이다. 또한 문종 즉위년 사간원의 상소 가운데 감사겸목의 보완책으로 선조(先祖)의 봉명사신(奉命使臣)인 찰방(察訪)의 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은³⁵⁾ 겸목법의 시행으로 관찰사의 사신적 성격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겸목법이 실시되면서 관찰사의 임기도 당상관 수령과 동일한 30개월 임기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감사겸목법은 단종 2년 7월 의정부 당상의 의논에 의해서 폐지되었다.³⁶⁾

이후 세조 3년 7월에는 용관(冗官)·용원(冗員) 도태책의 일환으로 다시 여러 도의 관찰사·절제사·처치사·경력·도사를 모두 경관이 겸하도록 하였다.³⁷⁾ 즉 감사의 경관겸차가 다시 실시된 것이다. 이는 세조조정권이 봉명사신을 자주 보내고, 봉명사신을 통한 외방지배를 꾀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성종 8년에는 과궐(窠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도사·평사를 경관으로 겸차하지 않고 실직차관하고 있다.³⁸⁾ 이는 비록 세조·성종조의 편작남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관료제 운영의 인적기반이 확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관찰사는 『경국대전』에서 외관직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경관겸차문제가 부분적으로 논의되다가 정2품 이상의 감사에게만 경관겸차하여 녹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³⁹⁾

이와같이 조선초기에는 관찰사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경관겸차와 겸

34) 『世宗實錄』 卷47, 世宗 12年 2月 庚寅條, (3-216라).

35) 『文宗實錄』 卷2, 文宗 卽位年 7月 己未條, (6-258라).

36) 『端宗實錄』 卷11, 端宗 2年 7月 己卯條, (6-702가).

37) 『世祖實錄』 卷8, 世祖 3年 7月 丙寅條, (7-208가).

38) 『成宗實錄』 卷82, 成宗 8年 7月 千午條, (9-473라).

39) 『成宗實錄』 卷184, 成宗 16年 10月 甲辰條, (11-66라), 같은 책 卷239, 成宗 21年 4月 辛亥條, (11-590라), 같은 책 卷266, 成宗 23年 6月 丁巳條, (12-194나).

목법의 치폐가 반복되면서 관찰사의 사신[경관]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어 『경국대전』에서는 외관직에 편입되고 있다.

2. 관찰사제의 운영구조와 변천

조선초기에는 관찰사제가 확립되면서 관찰사는 중앙의 행정관서와 지방 수령 사이에서 연계적 역할을 담당한 매우 중요한 행정장관이자 군사지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원래 고려전기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는 중앙과 주현(州縣)의 직첩체계(直牒體系)였다. 국가가 직접 주현에 직결되었고, 그 중에서도 외관 즉 수령이 있는 주현만이 직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이르면 수령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수령파악방식은 점차 그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십개의 주현을 포괄하는 도(道)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설정하여 도에 파견하는 외관으로 하여금 수령을 장악케 하고, 중앙정부는 도의 장관을 장악하는 지방통치방식을 택하게 되었다.⁴⁰⁾ 그러나 명실상부한 도제의 확립은 여말의 관찰사제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⁴¹⁾

여말에 등장하는 관찰사에게는 종전의 안찰사나 안렴사보다 훨씬 큰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었다. 먼저 창왕 즉위년에 종전의 안렴사를 파하고 도관찰출척사를 보내고 있는데, 이 도관찰출척사는 양부대신(兩府大臣)으로 파견되고 있고,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이 지급되고 있었다. 교서와 부월을 지급한 것은 관찰사에게 한 방면의 전제권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

40) 高麗時代 外官制의 構造에 대해서는 邊太燮, <高麗時代 地方制度의 構造>, 『國史館論叢』 1, 1989 참조.

41) 麗末鮮初 觀察使제가 確立되는 과도기에 界首官은 한때 중간에서 부분적인 배개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계수관에 대해서는 李存熙, <鮮初 地方統治體制의 整備와 界首官>, 『東國史學』 15 · 16합, 1981 참조.

다.

이 교서와 부월의 지급은 한때 관찰사제가 안렴사제로 바뀌었던 시기에는 교서[王旨]만 지급되기도 하였으나,⁴²⁾ 대체로 태종 6년까지는 교서와 부월이 함께 지급되고 있었다.⁴³⁾ 그런데 태종은 왕지(王旨)와 부월을 외방 사람이 예사로 보고 공경하거나 두려워함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태종 6년부터 평상시에는 왕지와 부월의 지급을 정지하고, 긴급한 변경 사변이 있는 경우에만 주어 보내도록 하였다.⁴⁴⁾

태종 6년에 교서와 부월 지급이 정지된 후, 부월 지급은 다시 복구되지 못했지만, 교서의 지급은 세종 12년에 이르면 다시 행해지기 시작한다. 세종은 관찰사에게 교서지급을 부활하는 것은 태조가 실시하던 좋은 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세종은 원래 관찰사뿐만이 아니라 수령에게까지도 모두 교서를 내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⁴⁵⁾ 이는 수령을 제수할 때 직접 인견(引見)하고 있던 세종으로서는 그만큼 수령을 중시한데서 나온 착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령에게 교서를 지급하는 일은 수령의 수가 너무 많아 번폐스러울 것이라는 허조의 의견에 따라 행해지지 않았다.⁴⁶⁾

세종은 관찰사에게 내리는 교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교서가 칭찬하는 말이 실정(實情)에 지나쳐 매우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교서란 임금이 신하를 권유하는 뜻을 가진 것이니, 이제 교서를 쓰는데 실정에 지나친 칭찬을 전부 버리고, 다만 백성을 다스리며 직책을 받드는 내용만을 적어서, 자기의 명분을 돌아보고 의의를 생각하

42) 太祖는 원년 9월에 여려도에 按廉使를 나누어 보내면서 教書를 내리고 있으나, 斧鉞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43) 教書와 斧鉞을 함께 지급한 사례로 태조 7년 정월 前司水監 朴有孫을 보내 西北面 都巡間察理使 崔永沚에게 교서와 부월을 내려준 예와, 태조 7년 8월 忠淸道 都觀察使 河峴과 京畿左道 觀察使 李廷備에게 교서와 부월을 친히 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44) 『太宗實錄』 卷11, 太宗 6年 2月 千戊條, (1-348가).

45)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12月 千午條, (3-278나).

46) 위와 같음.

여 공경히 직책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⁴⁷⁾ 예문제학(藝文提學) 윤희(尹淮)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밟들여 각도의 감사에게 내리는 교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 윤희가 지은 교서는 이후 감사에게 내리는 교서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교서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이르노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요,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 데에 있으니,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급선무다. 생각하건대, 나는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임금의 자리를 계승하여,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공경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보호할 것을 생각하여, 날마다 대신과 함께 문무(文武)의 인재를 뽑아서 군대와 백성의 책임을 맡기기 위하여, 직접 그들을 불러 보고 경계하고 타일러서, 정치와 송사(訟事)가 잘 처리되어 백성과 만물이 모두 편안하며, 군대는 용감하고 무기가 정예하여, 국경이 안정되어 우리 조종(祖宗)의 어렵고도 위대한 업(業)을 받들기를 바라웠었다. 그러나 넓은 영토의 수령과 방진(方鎮)의 많은 관원들에게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 어리석은 무리들이 요행으로 출세하여 우리 백성을 해치며 나라의 운명을 병들게 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마땅히 상벌(賞罰)을 밝히어 권장하고 징계를 보여야 되겠다. 누가 이 직위에 있어야 하겠는가. 경(卿)을 명하여 관찰사로 삼아 지방의 풍속을 살피는 책임을 맡기며, 출척(黜陟)의 권한을 전담하게 하는 바이니, 경은 앞으로 내가 백성을 보호하는 뜻을 본 받아 공정한 마음으로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드리내며, 좋은 사람을 포창하고 나쁜 사람을 깎아내려, 경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여금 내가 직접 가서 보살피는 것과 같게 하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받아들이고, 국가의 덕을 베풀며 백성의 사정에 정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게 하라. 선량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고무되며, 나쁜 놈들은 두려워함을 알게 하라. 모든 백성은 생활에 기쁨을 느끼며 건설에 힘쓰는 마음이 생기고, 군대는 웃 사람을 친근히 하며 어른을 섭기는 의리를 알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에는 근심과 탄식하는 소리가 영원히 없어지고, 국가의 원동력을 배양하여 함께 좋은 정치를 이루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경을 임명하는 목표다. 수령이나 장수로서 만일 욕심을 부리고 백성을 해치며 법을 무시하는 자, 또는

47) 위와 같음.

잔약하여 역량이 없는 자 및 통솔함에 있어 방법을 어긋나게 하는 자가 있거든, 2품 이상은 보고하여 처단할 것을 청하고, 3품 이하는 직접 처리[區處]할 것을 허락한다. 아아, 제도를 만들어 인정(仁政)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나는 반드시 외로우며 곤궁한 사람[鰥寡]부터 먼저 구제하려 하노라.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 떠나는 시간부터 경은 맑은 행정에 마음을 가질지어다. 가서 그대의 직책을 공경히 받들어 내가 명하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⁴⁸⁾

이 교서의 내용에 의하면 관찰사에게는 한 방면(方面)의 절대권한이 위임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관내 외관에 대한 출척권(黜陟權)과 직단권(直斷權)은 관찰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다.

교서를 새로 작성토록 한 세종은 교서를 전달하는 의식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먼저 관찰사가 하직한 뒤에 대언(代言)이 교서를 받들어 사신[관찰사]에게 주면, 사신은 끓어 앉아서 받아 수종인에게 주고 나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돌아와서 교서를 받들고 나오게 하였다. 또한 외방의 각 고을에서 교서를 영접하는 예는 모두 『경제육전』 원전의 격례(格例)대로 하도록 하였다.⁴⁹⁾ 그런데 관찰사가 교서를 지니고 도내 각 고을을 순력(巡歷)하게 되면 이 교서를 영접(迎接)하는 의식이 변집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세종 13년에는 각도의 각 고을에서 새 감사가 교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맞이할 적에 결채(結綵)·결붕(結棚)·나례(灑禮)·군위(軍威) 등의 의식을 일체 쓰지 못하도록 하여 간소화하고 있다.⁵⁰⁾

관찰사제가 확립되면서 조선초기에는 수령의 직계권(直啓權)은 박탈되고 관찰사에게만 직계권이 부여되었다. 수령의 직계권과 관련하여 세종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된다.

48)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閏12月 乙巳條, (3-282가).

49)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閏12月 壬子條, (3-283다).

50) 『世宗實錄』 卷52, 世宗 13年 5月 戊子條, (3-319나).

예전 태종조에는 수령들이 혹 계달(啓達)할 일이 있으면 바로 와서 아뢰었고, 내가 즉위한 처음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요사이는 외방에서 아뢰는 일이 모두 다 이문(移文)하여 계달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황해도에서 도사(都事)를 보냈으니 이는 무슨 전례이냐...⁵¹⁾

위의 내용에 의하면 세종초까지만 해도 외방의 수령이 직계(直啓)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의 직계권은 관찰사제가 확립되고 관계를 기준으로 한 관제운영(官制運營)이 이루어지면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관찰사의 직계권과 관련하여 『경국대전』의 다음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二品衙門 直啓 (中外諸將 承政院 掌隸院 司諫院 宗簿寺 亦得直啓 各司 有
緊事 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 (相考事外 皆啓)
其餘衙門 並報屬曹⁵²⁾

위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2품 아문은 (국왕에게) 직접 아뢰고[直啓] (다른 아문에) 직접 행문이첩 하되[直行移], 그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소속된 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와 승정원·장예원·사간원·종부사는 2품 아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계할 수 있었으며, (2품아문이 아닌) 각사에서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제조가 직계 할 수 있었다. 계문할 때의 문서는 대사는 계본을 사용하고 소사는 계목으로 하되 외방에서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계목이 없이 계본만 사용하였다. 또한 2품 아문은 다른 관사에 행문이첩하는데 행문이첩된 것은 상고사가 아니면 모두 국왕에게 계(啓)해야만 했다. 2품 아문과 위에서 제시된 아문 외에 나머지 아문은 직계를 하거나 직접 행이하지 못하고 모두 소속된 조(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외관직 가운데 감사와 병사는 2품 아문이고 수사는 3품 아문이

51) 『世宗實錄』 卷87, 世宗 21年 11月 己未條, (4-253가).

52) 『經國大典』 卷3, 禮典 用文字式.

었다.⁵³⁾ 따라서 관찰사와 병사는 직접 계(啓)하고 행이(行移)할 수 있었다. 수사도 3품 아문이지만 제장(諸將)에 해당하므로 직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관 가운데 수령은 종2품에 해당하는 경주부윤과 전주부윤을 제외하면 직계하거나 직접 행문이 침할 수 없었다. 결국 관찰사를 제외한 외관은 관찰사를 통한 전계(轉啓)만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긴급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관찰사를 비롯한 각도의 사신이 공사(公事)를 계품(啓稟)하는 법은 태종 4년 정월에 의정부의 수판(受判)으로 만들어졌다.

각도의 사신(使臣)이 공사(公事)를 계품(啓稟)함에는 조정의 제도에 의하여 계본(啓本) 한 건과 본부(本府 : 議政府)의 정장(呈狀) 한 건을 써서, 일이 기밀에 관계되는 것이면 실봉(實封)하고, 그 나머지는 노봉(露封)하여 본부에 올리어 계문(啓聞)하여 시행하게 하라.⁵⁴⁾

위의 수판에 의하면 기밀에 관계되면 실봉하여 올리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봉하여 올리므로 계본이라 하더라도 의정부에서 먼저 보고 이 계본에 의거하여 국왕에게 계하도록 되어 있다.⁵⁵⁾ 이 경우 의정부는 관찰사보다 상위기구이므로 계본과 함께 정장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종 4년의 공사계품법(公事啓稟法)은 중앙의 국정을 의정부가 주도하던 시기의 규정이었다.⁵⁶⁾ 육조가 국정을 주도하던 시기에는 관찰사의 행문이 침(行文移牒)은 주로 해당 조(曹)에 행해졌다. 이 경우에는 관찰사는 육조와 같은 2품이었으므로 평관(平關)이 원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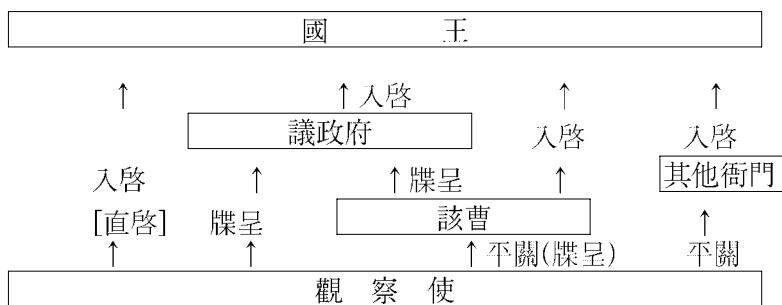
53) 『成宗實錄』 卷13, 成宗 2年 12月 丙子條, (8-616라).

54)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正月 內午條, (1-287다).

55) 守令七事啓本 같은 褒貶單子는 機密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國初부터 實封으로 올리고 있다.(『世宗實錄』 卷73, 世宗 18年 閏6月 戊辰條, 4-1라)

56) 朝鮮初期 시기에 따른 國政主導機關과 中央行政體系에 관해서는 韓忠熙, <朝鮮前期(太祖-宣祖 24년)의 權力構造研究 : 議政府·六曹·承政院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0, 1991 참조.

단 병조의 경우에는 관찰사의 병사직(兵使職) 겸직여부에 따라 평관(平關)과 첨정(牒呈)이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 즉 태종 6년 의정부에서 올린 외임 2품 이상의 이문식(移文式)에 의하면, 각도 도관찰사와 도순문사가 만약 병마도절제사를 겸하면 병조에 이문할 때 민사(民事)에 관계된 것은 평관(平關)으로 하고 군사(軍事)에 관계된 것은 첨정(牒呈)으로 하며, 도관찰사와 도순문사가 군직(軍職)을 갖지 아니하면 군사와 민사를 놓하지 말고 모두 평관(平關)으로 한다고 하였다.⁵⁷⁾ 이상의 이문식(移文式)을 단순화 시켜 도식화하면 다음의 〈도(圖)〉와 같다.



관찰사의 이문식(移文式)이 의정부에 첨정(牒呈)을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무(軍務)와 관련하여 병조(兵曹)에 첨정을 올린다 하더라도 관찰사가 중앙관서의 하위행정기관은 아니었다. 원래 개국초에는 관찰사가 행정상의 실책이나 개인적인 과오를 범하면 육조의 힐책(詰責)을 받았다. 그런데 세종은 이렇게 하면 관찰사가 독자적인 행정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하여 육조에서 함부로 감사를 힐책하지 못하도록 명하여 감사의 권위를 높힘으로써 관찰사는 상급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국왕의 사신으로서 수령의 규찰과 출척의 전권을 위임받아 이를 실천하는 위치로 굳어져 갔다.⁵⁸⁾

또한 초기에는 지방의 경우에도 행정과 군사(軍事)가 분리되어 있었으

57)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3月 丁酉條, (1-351가).

58) 『世宗實錄』卷33 世宗 8年 7月 己酉條, (3-37다).

나, 국방상의 요지를 제외하고는 차츰 행정과 군사가 지방관을 중심으로 뮤여가게 되고, 관찰사를 매개로 중앙과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세조는 ‘감사가 수령을 책하고 내가 감사를 책한다⁵⁹⁾고 하여 관찰사는 국왕과 직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조선초기 관찰사의 외관통제와 규찰은 주로 고과(考課)를 통해 실현되었다. 관찰사는 중앙의 대사헌과 같이 지방의 풍헌관(風憲官)으로서 수령을 고과·포폄(褒貶)하였다. 관찰사는 소관지역을 순력하여 수령의 성적을 공정하게 고과하고 등제계문(等第啓聞)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 중의 하나였다.

태조 즉위년에 행해진 고과법은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⁶⁰⁾ 선(善)에 해당하는 것은 공(公)·렴(廉)·근(勤)·근(謹)이고 최(最)는 전야벽(田野闢)·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학교홍(學校興)·사송간(詞訟簡)이며, 상대적으로 식(食)·포(暴)·태(怠)·소(少)이면 악(惡)에 해당하고, 전야황(田野荒)·호구손(戶口損)·부역번(賦役煩)·학교폐(學校廢)·사송체(詞訟滯)이면 전(殿)에 해당하였다. 선과 악, 최와 전은 기준치가 동일한 것으로 잘 이행되면 선과 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과 전이 되었다. 선과 악은 덕행(德行)을 나타낸 것이고 최와 전은 수령오사(守令五事)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적(實績)을 반영한 것이다.⁶¹⁾ 그런데 덕행등제(德行等第)를 수령의 포폄에 반영하는 것은 실효가 없었으므로, 태종 6년 12월부터는 수령의 칠사실적(七事實績)을 중심으로 고과 및 출척하도록 하였다.⁶²⁾ 관찰사가 수령 칠사에 대하여 행한 고과내용은 밀봉(密封)하여 국왕에게 직접 올렸고, 왕은 친히 열람한 후 승지로 하여금 함봉(緘封)하여 이조(吏曹)에 송부(送付)도록 하였다. 이조에서는 접수와 동시에 이를 모조리 베낀[傳寫] 후,

59) 『世祖實錄』卷2 世祖 元年 9月 丙申條, (7-89나).

60) 『三峯集』卷10, 經濟文鑑 下 監司條.

61) 李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 일지사, 1990, 170-171쪽.

62) 『太宗實錄』卷12, 太宗 6年 12月 乙巳條, (1-380라).

사헌부로 이문(移文)하여 탄핵의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⁶³⁾

수령에 대한 관찰사의 고과는 결과적으로 포폄에 반영되었다. 『경국대전』 「이전」 포폄조(褒貶條)에 의하면 외관은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에 등제계문(等第啓聞)하되, 수령은 관찰사가 병마절도사와 함께 의논[同議]하여 고과하였다. 고과의 결과가 10고(考)에 10상(上)은 1계(階)를 상으로 더하고, 2중(中)은 무록관(無祿官)에 서용하고, 3중(中)은 파직하였으며, 당상관 수령은 1중(中)이라도 파직되었다.⁶⁴⁾

조선초기의 관찰사는 수령뿐 아니라 소관 도내의 모든 외관에 대해서도 규찰의 대상으로 삼아 수령의 예에 의해 고과·포폄하였다. 관찰사의 포폄대상이 된 외관으로는 구전관(口傳官)은 해당되지 않고 정식 제수된 외관이라야 했다. 이에 해당되는 외관으로는 『경국대전』 및 실록에 의하면 찰방(察訪)·역승(驛丞)·도승(渡丞)·교수(敎授)·훈도(訓導)·검률(檢律)·심약(審藥)·염철장관(鹽鐵場官) 등이다.⁶⁵⁾

관찰사는 관내(管內) 외관에 대한 고과권 외에도 한때 수령에 대한 준인사권(準人事權)을 갖고 있었다. 태종 3년 6월에는 종래 시행되고 있던 각 도 감사의 관내수령권차법(管內守令權差法)을 폐지하고 있는데,⁶⁶⁾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찰사에게 수령의 인사권이 주어졌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시대 관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국왕의 고유권 한이었기 때문에 관찰사의 수령권차법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바로 폐지되었다.

관찰사와 수령의 행정체계는 사법권(司法權) 행사에도 반영되었다. 수령은 고려시대부터 태형(笞刑) 이하는 율(律)에 의하여 직단(直斷)할 수 있되, 장형(杖刑) 이상은 관찰사에게 보고한 후, 명을 받고서야 벌을 줄 수 있었는데, 이 제도는 조선에서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삼복법(三復法)

63) 『世宗實錄』 卷73, 世宗 18年 閏6月 戊辰條, (4-1라).

64) 『經國大典』 卷1, 更典 褒貶條.

65) 이들이 관찰사의 포폄대상이 되는 과정은 제2장 참조.

66) 『太宗實錄』 卷5, 太宗 3年 6月 己酉條, (1-265라).

의 경우에도 관찰사가 먼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읍의 수령과 함께 추문케 하고, 그 다음에 차사원 2원을 정하여 고해케 한 후, 마지막 단계로 관찰사가 친문(親問)하여 계달(啓達)하는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⁶⁷⁾

관찰사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겸하거나 혹은 그들을 지휘 감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관찰사가 행정·군사의 양권을 장악하였으므로 간혹 관찰사와 군사 전단의 도절제사(都節制使, 혹은 兵使·水使)간에 서로 어떤 지위나 군정상의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관찰사는 결국 한 도의 행정책임자인 동시에 군사책임자로서 막강한 힘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수령 또한 진관(鎮官)의 군사권을 행사하나 관찰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었다.

포폄에 있어서 관찰사와 병마절도사(혹은 都節制使)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간혹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포폄은 본래 관찰사의 주된 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관찰사의 의견이 반영되게 마련이었다. 세종조에 평안도와 함길도의 도관찰사 및 도절제사가 포폄의 문제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여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으나, 결국 국왕이 관여하여 포폄의 주무가 도관찰사임을 확인시키고 해결을 본 바도 있다.⁶⁸⁾ 관찰사가 연해(沿海) 수령과 첨사(僉使)·만호(萬戶) 등을 포폄할 때에는 병사·수사와 상의하였고, 일반수령의 포폄은 관찰사의 수령관인 도사(都事)와 의논하였다.⁶⁹⁾

관찰사는 관하(管下) 부윤(府尹)과 도의 군정전담자인 병사·수사와는 관계상 같은 2품이기 때문에 행정체계와 업무수행상에서 갈등과 차질이 간혹 있기도 했다. 본래 한 도[一道]의 민정과 군정을 감사와 병사에게 분담시켜 양자로 하여금 분권상제(分權相制)케 한 것이나 실제 군사지휘

67) 『經國大典』 卷5, 刑典 推斷條.

68) 『世宗實錄』 卷104, 世宗 26年 6月 戊子條, (4-563나).

69) 『經國大典』 卷1, 吏典 褒貶條, 『成宗實錄』 卷18, 成宗 3年 5月 己酉條, (8-657나).

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감사가 군무까지 총괄하는 데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다.

종2품직인 관찰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천거에 의해서 국왕이 임명하였다. 관찰사의 천거권은 『경국대전』에서는 의정부 및 6조당상과 사헌부·사간원 관원만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대두된 국방의식의 고조와 비변사의 권한강화에 따라 한동안 관찰사의 천망권을 비변사에서 행사하였다. 인조대부터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관찰사는 이조에서 관장하게 하고 평안·함경 양도의 관찰사는 조선말기까지 비변사가 천망권을 행사하였다. 관찰사의 자질로는 공렴정직(公廉正直)과 암련(譖鍊)이 요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문신이 선임되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관(首領官) 중에서 최소 1명이라도 문신으로 차임한다는 문무교차법이 정해졌다.

관찰사의 임기는 여말부터 1년 임기였는데, 세종조 겹목법이 실시될 때에는 30개월로 늘기도 했으나, 경국대전에서는 360일로 규정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관찰사의 임기에 대하여 논란이 거듭되다가 현종 10년 2월 관중추부사 송시열의 건의로 2년으로 항식화되고, 그것이 영조때 『속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관찰사의 기능 가운데 외현적(外憲的) 기능은 관찰사 고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초기 관찰사제가 확립되면서 도내의 모든 외관은 관찰사의 포폄대상이 되었다. 관찰사는 외관, 특히 수령의 현부(賢否)와 능부(能否)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도내를 순력(巡歷)해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군현통치형태가 순력에서 유영(留營)으로 변하면서, 수시순력을 춘추 2회로 정식화되었으며, 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그 목적도 감진(監賑)과 농형간심(農形看審)이 주된 임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관찰사의 순력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민폐의 혁제, 외현적 기능보다 방백적 기능이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방백적(方伯的) 기능으로는 권농, 진휼, 수세와 재정, 교화와 시취, 기

타 잡다한 행정사무(敎文의 반포, 신임수령 到任의 계문, 外官給暇, 有故
守令代差狀請, 孝烈施褒, 밀주의 제조와 판매금지, 도살방지, 伐松금지,
祠院창설방지, 진상품의 看品監封 등)와 같은 행정적 기능 외에도 유(流)
이하의 죄를 직단하는 사법적 기능과 도내의 군사지휘권(병·수사 겸직)
과 군정사무를 관장하는 군사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관찰사는 도내에서의 권한이 막중하고 업무가 과중하였으므로, 조정에
서는 관찰사의 속관으로 외관을 파견하였다. 조선초기부터 종5품의 도사
(都事, 세조 12년 까지는 4품이 파견되는 경우 經歷)가 수령관(首領官)으
로 파견되었으며[수령관은 흔히 亞監司라고 불리움], 종9품의 검률과 심
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후기에는 관찰사가 도내 큰 고을의 수령
을 겸[兼牧]하면서 겸목읍의 수령을 감하고 관찰사의 겸목업무를 보좌
[대행]하기 위한 판관이 설치되었으며, 군정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중군
(中軍, 종6품)이 배치되었다.⁷⁰⁾

8도에 파견되던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갑오개혁기에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되면서 일시적으로 부(府)에 관찰사가 파견되다가, 다시 13도로 개편
되면서 조선이 망하는 1910년에 이르기까지 13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
다.

70) 또한 감영에는 영리라고 불리우는 육방의 아전이 있었으며, 육방비장이 있
었으나 이들이 외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IV. 충청도관찰사의 재임실태와 주요업적

1. 충청도의 연혁과 충청도관찰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서 관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말인 1388년(창왕 즉위년)의 일이다.⁷¹⁾ 정식명칭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였으며, 이전 안렴사의 전통을 이은 것이었다. 그러나 안렴사의 품계가 낮았고 임기도 6개월에 불과했던 것과는 달리, 도관찰출척사는 품계가 높은 양부(兩府) 출신으로 1년 임기였으며, 국왕으로부터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을 하사 받는 막강한 지위였다. 이러한 관찰사로 처음 충청지역에 부임한 인물은 성석린(成石磷)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도명(道名)이 충청도가 아니고 양광도였으므로, 성석린의 관직명도 양광도도관찰출척사(楊廣道都觀察黜陟使)였다. 그는 양광도관찰사로 재임 중에 주·군에 의창의 설치를 건의하여 조정에서 이를 채택, 모든 도에서 행하도록 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후 여말에 양광도에 부임했던 관찰사로는 서균형(徐鈞衡), 유구(柳拘, 1390), 안경량(安景良, 1391), 강은(姜隱, 1391) 등을 확인할 수 있다.⁷²⁾

그러나 이 관찰사는 태조가 즉위하기 직전인 공양왕 4년(1392) 4월에 혁파되어 안렴사(按廉使)로 복구되었다.⁷³⁾ 태조는 즉위한 후에도 외방(外

71) 『高麗史節要』 卷33, 新昌 卽位年 8月條.

72) 이상은 『고려사』의 산견된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에서 확인한 것이다.

73) 『高麗史節要』 卷35, 恭讓王 4年 4月條.

方, 오늘날의 地方)에 안렴사를 두 차례 파견하고 있는데,⁷⁴⁾ 충청도의 경우에도 태조 원년 9월 11일에 조박이 양광도안렴사로 파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는 두 번째 파견한 안렴사의 임기가 끝나는 2년 9월부터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를 보내고 있는데, 충청도에는 한상질이 양광도관찰출척사로 파견되었다.⁷⁵⁾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관찰사제를 혁파하고, 한때 안렴사를 파견하였는데, 충청도에는 태종 원년 1월 24일에 이은(李垠)이 안렴사로 파견되었다.⁷⁶⁾ 그러나 이는 곧바로 관찰사제로 복구됨으로써, 이후 충청도에도 조선말 까지 관찰사가 파견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충청도에 파견된 관찰사(감사)의 명칭은 도명의 변동에 따라 변하였다. 충청도의 도명은 태조 4년(혹은 3년)에 양광도가 충청도로 바뀐 것으로, 이는 충주와 청주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충주나 청주에서 강상사건이나 역적관련사건이 발생하면, 도명에서 ‘忠’자나 ‘淸’자를 삭제하고, 공주와 홍주의 머리글자인 ‘公’자나 ‘洪’자를 포함한 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충청도의 명칭으로 충공도(忠公道), 충홍도(忠洪道), 청공도(淸公道), 청홍도(淸洪道), 공충도(公忠道), 공청도(公淸道), 공홍도(公洪道), 홍충도(洪忠道), 홍청도(洪淸道)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도명의 개호와 읍격의 강등은 재지세력을 견제하고 지방민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지방통치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10년을 치별기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 기한은 조정에서 시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신들의 논의에 의해 조정되기도 하였다. 충청도의 경우에도 충청도 이외의 도명 사용은 일시적인 것으로 약 10여년이 지나면 다시 충청도라는 명칭을 복구하였다. 〈표 1〉은 조

74) 即位 후 2개월이 지난 9월에 한 차례, 다시 이들의 6개월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3월에 또 한 차례 파견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안렴사가 春秋로 2회 파견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太祖實錄』卷2, 太祖 元年 9月 己丑條, 같은 책 卷3, 太祖 2年 3月 戊辰條.]

75)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9月 乙卯條.

76) 『太宗實錄』卷1, 太宗 元年 正月 甲申條.

〈표 1〉 조선시대 충청도 명칭의 변천

시기	변경전	변경후	관련근거 및 변경사유
1394년 (태조 3)	楊廣道	忠淸道	설태조 3/6/23 도명 개칭
1395년 (태조 4)	楊廣道	忠淸道	설태조 4/6/13 도명 개칭
1505년 (연산군 11)		忠公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설연산군일기 11/8/21 충공도관찰사 인사
1506년 (중종 1)	忠公道	忠淸道	설중종 1/9/5 도명 개칭 및 군현이속 (아산·평택·직산·진천 : 경기→충청도)
1540년 (중종 35)	(충청도)	淸公道	설중종 35/8/1 도명변경 (충주강등→예성군 : 강상사건)
1542년 (중종 37)	公淸道	忠淸道	설중종 37/9/4 공청도에서 충청도로 고호 회복
1550년 (명종 5)	(충청도)	淸公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613년 (광해군 5)		公淸道	○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公洪道	설광해 5/5/20 공홍도 兵使(표현)
1628년 (인조 6)		公洪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628년 (인조 6)	忠淸道	公淸道	설인조 6/2/13, 도명변경기사
1644년 (인조 22)	忠淸道	公淸道	설인조 22/4/4, 도명변경기사 (충주 역적출신지라 강호)
1646년 (인조 24)	公淸道	洪忠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洪淸道	설인조 24/5/1 공주목강등→공산현(역적출신지)
1651년 (효종 2)	忠洪道		설효종 2/7/23 충홍도 기사
1656년 (효종 7)		公洪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661년 (현종 2)	忠洪道	忠公道	설현종 2/7/13 충공도기사
1662년 (현종 3)	忠公道	忠淸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670년 (현종 11)		忠洪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680년 (숙종 6)		公淸道	설숙종 6/8/7 공청도 진천 폭우와 재해기사
		公洪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681년 (숙종 7)	公淸道	公洪道	설숙종 7/7/27 공청도를 공홍도로 개칭 (청주강등→현, 박상한 복주)
1689년 (숙종 15)	公洪道	忠洪道	설숙종 15/1/2, 충주 승호

1729년 (영조 5)		公淸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731년 (영조 7)		忠淸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동지지)
1733년 (영조 9)		公洪道	설영조 9/4/22 공홍도 충원현 기사
1735년 (영조 11)	忠淸道	公洪道	설영조 11/5/1 충청도를 공홍도로 (충주, 청주 반역으로 강등)
1746년 (영조 22)	洪忠道		설영조 22/7/9 홍충도 기사
1747년 (영조 23)	公忠道	忠淸道	설영조 23/1/12 충주 승호(10년 강등기한)
1777년 (정조 1)		洪忠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농지지) 설정조 1/9/8 홍충도 기사
1778년 (정조 2)	公忠道	洪忠道	설정조 2/7/30 도명 개호 기사(공주→공산현 : 대역 죄인 심혁 탄생고을), 정조9년까지 홍충도
1785년 (정조 9)	洪忠道	忠淸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농지지)
1804년 (순조 4)	忠淸道	公忠道	설순조 04/10/27 도명 개호 기사 (청주목→서원현:죄인 한해옥 거주지)
1813년 (순조 13)	公忠道	忠淸道	설순조 13/01/02 도명 개호 기사 (서원현→청주목 : 읍호강등한지 10년)
1817년 (순조 17)	忠淸道	公淸道	설순조 17/4/28 도명 개호 기사 (충주목→충원현:강상죄인)
1825년 (순조 25)		公忠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농지지)
1826년 (순조 26)	公淸道	忠淸道	설순조 26/1/2 도명 개호 기사 (충원현→충주목 : 복구)
1826년 (순조 26)	忠淸道	公忠道	설순조 26/10/27 도명 개호 기사 (청주목→서원현:죄인 정상채)
1834년 (순조 34)	(공충도)	忠淸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농지지)
1862년 (철종 13)	(충청도)	公忠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대농지지) 설철종 13/8/7 공충도 기사
1871년 (고종 8)	公忠道	忠淸道	설고종 8/1/3 도명 개호 기사 (서원현→청주목:고을 강등 10년만에 복구)
1895년 (고종 32)	忠淸道	公州府 忠州府 洪州府	설고종 32/5/26 지방제도 개정기사
1896년 (고종 33)	公州府 忠州府 洪州府	忠淸南道 忠淸北道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비고(문헌비고) 설고종 33/8/4 지방제도 관제개정

선시대 충청도 도명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충청도에 파견된 관찰사로 충청도관찰사라는 명칭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나, 당대의 실록이나 문집, 고문서[교지 등], 금석문 등에서 는 종종 당시의 도 명칭에 따라 사용된 충공도관찰사, 충홍도관찰사, 청 공도관찰사, 청홍도관찰사, 공충도관찰사, 공청도관찰사, 공홍도관찰사, 홍충도관찰사, 홍청도관찰사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행정명칭은 아니었지만, 호서감사·호서관찰사의 표현도 자주 사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충청도의 감영이 금강을 끼고 있는 공주에 있었 으므로, 충청감영을 ‘금영(錦營)’이라고 불렀듯이 충청도관찰사를 ‘금백(錦伯)’이라고 일컬기도 하였다.

충청도는 1895년(고종 32)에 8도제가 23부제로 바뀌는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한때 공주부, 충주부, 홍주부로 나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각각 공주·충주·홍주에 부관찰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1996년(고종 33)에는 다시 23부제가 13도제로 바뀌면서 충청도지역도 종전의 3부가 충청남·북도로 바뀌었으며, 이후에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충청남·북도에 각각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충청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충청도내의 모든 고을을 관할하였다. 조선 시대 충청도 지역은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54고을로 구성되어 있었다.⁷⁷⁾ 조선시대에는 이들 각 고을에 목민관을 비롯한 외관이 파견되고 있었다. 충청감영과 충청도의 각 고을에 파견되던 동반적 외관을 『경국대전』·『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대전회 통』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77) 이 가운데 공주·홍주·임천·태안·한산·서천·면천·천안·서산·온 양·홍산·덕산·직산·정산·청양·은진·연산·니산·대홍·부여·석성· 비인·남포·결성·보령·해미·당진·신창·예산·목천·전의·연기·아산 등 33고을은 오늘날의 충청남도에 속하고(오늘날의 충남을 구성하는 고을 가운데 금산·진산의 2고을은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에 속하였다), 충주·청주·단 양·청풍·괴산·옥천·문의·제천·회인·연풍·음성·청안·진천·영춘· 보은·영동·황간·청산 등 18고을은 충청북도에 해당하며, 회덕과 진잠은 대전광역시에 해당하고, 평택은 경기도에 속한다.

〈표 2〉 조선시대 충청도의 고을별 외관파견 규정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대전회통	비고
監營	관찰사, 도사, 심약, 검률	관찰사, 도사, 심약, 검률	관찰사(文二品), 도사(文 六品), 심약, 검률, 화사	관찰사 · 도사 · 심약 · 검률	
忠州	목사, 판관, 교수	목사, 판관, 교수	충원현감(蔭四品)	목사	충북
淸州	목사, 판관, 교수	목사, 판관, 교수	목사(或文或蔭正三品)	목사	충북
公州	목사, 판관, 교수	목사, 판관, 교수	판관(蔭五品)	(목사) · 판관	공주시
洪州	목사, 판관, 교수	목사, 판관, 교수	목사(文正三品)	목사	홍성군
林川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四品)	군수	부여군
丹陽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四品)	군수	충북
淸風	군수, 훈도	군수, 훈도	부사(文或蔭三品)	도호부사	충북
泰安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文武交遞從四品)	군수	태안군
韓山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從四品)	군수	서천군
舒川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文武交遞四品)	군수	서천군
泗川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從四品)	군수	당진군
天安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文蔭皆四品)	군수	천안시
瑞山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文武交遞從四品)	군수	서산시
槐山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四品)	군수	충북
沃川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從四品)	군수	충북
溫陽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正四品)-보유편	군수	아산시
文義	현령, 훈도	현령, 훈도	현령(蔭六品)	현령	충북
鴻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蔭六品)	현감	부여군
堤川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六品或蔭六品)	현감	충북
德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蔭武六品)	군수	예산군
平澤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경기
稷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南俱六品)	현감	천안시
懷仁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충북
定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보유편	현감	청양군
青陽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或文六品)	현감	청양군
延豐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或文六品)	현감	충북
陰城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충북

淸安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보유편	현감	충북
恩津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논산시
懷德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대전
鎮岑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대전
連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논산시
尼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노성현감	논산시
大興	현감, 훈도	현감, 훈도	군수(文蔭武四品)	군수	예산군
扶餘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六品)	현감	부여군
石城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官從六品)	현감	부여군
庇仁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武蔭六品)	현감	서천군
藍浦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武官六品)	현감	보령시
鎮川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武蔭交遞六品)	현감	충북
結城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六品)	현감	홍성군
保寧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六品)	현감	보령시
海美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武六品)	현감	서산시
唐津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南六品)	현감	당진군
新昌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官六品)	현감	아산시
禮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官六品)	현감	예산군
木川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門蔭交遞六品)	현감	천안시
全義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蔭六品)	현감	연기군
燕岐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연기군
永春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文蔭六品)	현감	충북
報恩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군수	충북
永同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或文)	현감	충북
黃潤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충북
青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충북
牙山	현감, 훈도	현감, 훈도	현감(蔭六品)	현감	아산시
錦山 (전라도)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從五品)-보유편	군수	금산군
珍山 (전라도)	군수, 훈도	군수, 훈도	군수(蔭從四品)-보유편	군수	금산군

『경국대전』과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전기에는 충주·청주·공주·홍주의 4고을에 목사·판관·교수가 파견되고 있었고, 임천·

단양·청풍·태안·한산·서천·면천·천안·서산·괴산·옥천·온양 등 12고을에는 군수와 훈도가 파견되었으며, 문의에는 현령과 훈도가 파견되고, 그 외 37고을에는 현감과 훈도가 파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외관의 파견은 조선후기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니, 우선 교수·훈도와 같은 향교의 교관직이 더 이상 파견되지 않고 있다. 사실 향교의 교관직은 조선전기부터 적임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고, 보완책으로 한때 제독관제도가 실시된 적도 있었다. 조선후기에 는 관학교육기구인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더욱 쇠퇴하고, 서원·서당·정사 등 사학기관이 발달하자, 마침내 향교의 교관을 감원하기에 이른다. 향교의 교관 및 제독관 제도가 조선후기 연체까지 지속되었는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1744년(영조 20)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교수·훈도가 모두 감원되어 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충주·청주·공주·홍주 등 목사가 파견된 고을에 함께 파견되던 판관도 관찰사가 목사직을 겸임하던 공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혁파하고 있다.

한편, 『여지도서』에는 충주목이 충원현으로 강등되어 현감이 파견되고 있고, 청풍군이 부로, 대홍현이 군으로 승격되어 있다. 조선전기에 현감이 파견되던 고을인 대홍현이 군으로 승격된 것은 1681년(숙종 7)의 일로, 승격사유는 현종의 태실이 대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전기에 군수가 파견되던 청풍군이 부사파견고을로 승격된 것은 현종조의 일인데, 승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군과 부로 승격된 대홍과 청풍은 조선말까지 승격된 고을의 위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충주목의 강등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읍호 결정이 인구의 다소와 토지의 다과에 입각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고을에서 강상죄를 범한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강등되고 있었는데, 충주목도 강상사건이 발생하여 일시 강등된 것이었다. 즉 1738년에 충주에 사는 장덕(長德)이 자아비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형을 집행하고 그가 살던 고을을

10년간 충원현으로 강등하고 충청도라는 도명도 공홍도라고 일컫게 하였다. 따라서 고종조에 편찬된 『대전회통』에는 다시 충주가 목사파견 고을로 되어 있다.

『대전회통』에는 덕산과 보은이 현감파견고을에서 군수파견고을로 승격되어 있다. 덕산의 승격사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순조의 태가 덕산의 가야산 아래 명월봉 태봉소에 봉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보은의 승격은 순조의 태실이 보은에 있었기 때문에 승격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지도서』에는 충청도의 목민관이 관찰사 1원(공주목사 겸임), 목사 2원, 도호부사 1원, 군수 12원, 현령 1원, 현감 37원, 판관 1원이며, 『대전회통』에는 관찰사 1원(공주목사 겸임), 목사 3원, 도호부사 1원, 군수 14원, 현령 1원, 현감 34원, 판관 1원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시대 충청도에 파견된 외관 수

	관찰사 (종2품)	수령							판관 (종3품)	비고
		부윤 (종2품)	대도 호부사 (정3품)	목사 (정3품)	도호 부사 (종3품)	군수 (종4품)	현령 (종5품)	현감 (종6品位)		
『경국 대전』	1			4		12	1	37	54	4
『동국여 지승람』	1			4		12	1	37	54	4
『여지 도서』	1			2 (1*)	1	12	1	37	53	1
『대전 회통』	1			3 (1*)	1	14	1	34	53	1

2. 충청도 도선생안의 검토와 복원

충청도에는 조선시대 500여년간 관찰사가 부임하여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충청도관찰사로는 어떠한 인물들이 다녀갔을까?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역대 충청도관찰사의 명단인 도선생안이다.

도선생안(道先生案)은 역대 관찰사의 명단이다. 원래 선생안(先生案)이란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과 관아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성명·관직명·생년·본적 등을 적어 놓은 것으로, 작성시기를 기준해 볼 때,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지방 관아 수령의 명단록을 읍선생안(邑先生案)이라 하고, 관찰사의 명단록을 도선생안(道先生案)이라 일컬었다.

현전하는 충청도 도선생안으로는 『금영공안』, 『공주감영읍지』(1790)의 선생안, 『공산지』의 영문선생안, 『(충청도)도선생안』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금영공안(錦營公案)』 :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이용순의 서문(1602)과 윤의립의 발문(1633), 윤이제의 발문(1681), 경최의 발문(1679) 등이 있다. 1414년에 부임했던 김여지부터 1811년에 부임한 원재명에 이르기까지 309명의 충청도관찰사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② 『공주감영읍지(公州監營邑誌)』(1790)의 선생안 : 『공주감영읍지』는 1790년에 공주감영에 도임(到任)한 관찰사 정존중(鄭存中, 1721-1798)의 주도하에 편찬된 공주감영의 개별읍지로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번째가 선생안이다. 선생안에는 김여지부터 1790년에 부임한 정존중에 이르기까지 292명이 수록되어 있다.
- ③ 『공산지(公山誌)』의 영문선생안 : 공산지는 1858년(철종 9)에 공주의 사족인 임정희 이익향 오흠 노기웅 등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8인의 유생들이 참여하여 편찬한 사찬읍지이다. 전체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산지의 제4권은 영문선생안·도사선생안·본부선생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문선생안은 김여지부터 1857년에 부임한 김옹근에 이르기까지 342명이 수록되어 있다. 성명과 부임연도만 간지(干支)로 기록되어 있다.

④ (충청도)『도선생안(道先生案)』: 공주향교에 보관되어 있다. 1922년에 편찬되었으며, 문묘직원 서병호가 서문을 작성하였다. 관찰사 김여지부터 1908년에 부임한 관찰사 최정덕에 이르기까지의 관찰사 305명의 명단과 1910년 이후에 부임한 장관 3명과 지사 2명이 기록되어 있고, 다시 지사 4명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성명과 부임연도만 간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도선생안을 검토해 보면, 조선후기의 경우에는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나, 임란 이전인 조선전기의 경우에는 빠진 인물이 많다. 그러나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의 산견된 충청도관찰사 관련 기록을 일일이 찾아 정리하면, 누락된 대부분의 충청도관찰사 명단을 보완할 수 있다. 우선 『고려사』에서 고려말기에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로는 5명[成石璘, 徐鈞衡, 柳珣, 安景良, 姜隱]이 확인되며, 조선전기의 경우 기존의 도선생안에는 조선건국부터 중종조까지(1392~1545)의 충청도관찰사가 모두 25명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도 재임시기의 선후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나, 실록을 통해 보완하면 180여명의 충청도관찰사 제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선생안(道先生案)을 토대로 하고 실록을 통해 보완하면, 〈표 4〉와 같이 600여명에 달하는 조선시대의 충청도관찰사 명단을 복원·정리할 수 있다.⁷⁸⁾

78) 이 표의 관련근거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 : 조선왕조실록, □ : 금영공안, ▲ : 공주감영읍지, ◎ : 공산지, ● : (충청도)도선생안.

〈표 4〉 충청도 도선생안 (복원)

	성명	채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招	罷	道	
×	崔有慶	1388	○					집태종 13/6/24 楊廣道按廉使(卒記)
1	成石璘	1388	○					『고려사』 137, 열전 50, 창왕 즉위년(1388) 8월 : 政堂文學으로 楊廣道都觀察黜陟使除授, *1389/8(在任) 집세종 5/1/12 楊廣道都觀察使(卒記)
2	徐鈞衡							『고려사』 46, 세가 46, 공양왕 3년(1391) 5월 : 前 楊廣道都觀察使(卒記)
3	柳均	1390						『고려사』 45, 세가 45, 공양왕 2년(1390) 2월 : 楊廣道都觀察使(除授), *1390/9(在任)
4	安景良	1391						『고려사』 46, 세가 45, 공양왕 3년(1391) 2월 : 楊廣道都觀察使(除授), *1391/9(在任)
5	姜隱	1391						『고려사』 46, 세가 46, 공양왕 3년(1391) 11월 : 楊廣道都觀察使(除授)
×	趙璞	1392	○					집태조 1/9/11 楊廣道按廉使(除授)
6	韓尙質	1393	○					집태조 2/9/13 楊廣道觀察黜陟使(除授)
7	閔開	미상	○					집태조 5/12/03 忠淸道觀察使(卒記)
8	張至和	1398	○					집태조 7/7/8 忠淸道都觀察黜陟使(除授)
9	河峴	1398	○					집태조 7/7/19 忠淸道都觀察黜陟使(除授)
10	韓尙敬	미상	○					집세종 5/3/7 忠淸道都觀察使(卒記-태조조에 在任)
11	李至	1399	○					집정종 1/1/7 忠淸道監司(在任)
×	李垠	1401	○					집태종 1/1/24 忠淸道按廉使(除授)
12	咸傳林	1402	○					집태종 2/1/20 忠淸道都觀察黜陟使(除授)
×	尹彰	1402	○					집태종 2/7/7 忠淸道按廉使(在任)
13	金若采	1404	○					집태종 4/3/10 忠淸道都觀察使(除授)
14	成石囚	1405	○					집태종 5/7/8 忠淸道都觀察使(除授)
15	金自粹	1406	○					집태종 6/윤7/13 忠淸道都觀察使(除授)
16	柳廷顯	1407	○					집태종 7/12/8 忠淸道都觀察使(除授)
17	安魯生	1409	○					집태종 9/4/16 忠淸道都觀察使(除授)
18	閔汝翼	1409	○					집태종 9/5/30 忠淸道都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설	설	설	설	설	
19	吳陞	1409	○					설세종 26/윤7/5, 忠淸道觀察使(卒記)
20	韓雍	1410	○					설태종 10/7/8 忠淸道都觀察使(在任)
21	李濬	1411	○					설태종 11/12/7 忠淸道都觀察使(除授)
22	李安愚	1412	○					설태종 12/12/4 忠淸道都觀察使(除授)
23	許遲	1413	○					설태종 13/10/6 忠淸道都觀察使(在任)
24	金汝知	1414	○	①	①	①	①	설태종 14/윤9/15 忠淸道都觀察使(在任) 금觀察使, 永樂甲午(1414)
25	鄭易	1414	○					설태종 14/10/13 忠淸道都觀察使(除授)
26	安騰	1415	○					설태종 15/1/26 忠淸道都觀察使(除授)
27	李之剛	1415	○					설태종 15/2/22 忠淸道都觀察使(在任)
28	禹希烈	1415	○					설태종 15/3/7 忠淸道都觀察使(除授)
29	黃子厚	1415	○					설태종 15/7/13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0	徐選	1417	○					설태종 17/9/7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1	孟思誠	1417	○					설태종 17/12/3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2	李孟昀	1418	○					설태종 18/6/5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3	鄭津	1419	○					설세종 1/4/17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4	姜淮仲	1419	○					설세종 1/12/7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5	朴光衍	1421	○					설세종 3/10/14 忠淸道都觀察使(在任)
36	權軫	1421	○					설세종 3/10/15 忠淸道都觀察使(在任)
37	柳種善	1422	○					설세종 4/2/16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8	黃子厚	1422	○					설세종 4/12/13 忠淸道都觀察使(除授)
39	柳穎	1423	○					설세종 5/06/24 忠淸道觀察使(除授)
40	金益精	1424	○					설세종 6/4/7 忠淸道都觀察使(除授)
41	崔士康	1425	○					설세종 7/4/19 忠淸道監司(除授)
42	柳季聞	1426	○					설세종 8/4/13 忠淸道觀察使(除授) *柳寬으로改名
43	崔洵	미상	○					설세종 10/5/2, 忠淸道監司同知摠制(卒記)
44	高若海	1429	○					설세종 11/8/7 忠淸監司(在任→轉任)
45	李叔芝	1431	○					설세종 13/7/25 忠淸監司(除授)
46	趙從生	1433	○					설세종 15/3/27 忠淸監司(在任)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47	李孝仁	1433	○					집세종 15/6/27 忠淸道觀察使(除授)
48	南智	1434	○					집세종 16/7/13 忠淸道監司(辭朝) 집세종 16/10/30 忠淸道都觀察使(除授)
49	鄭麟趾	1435	○					집세종 17/6/29 忠淸道都觀察使(除授)
50	鄭苯	1436	○					집세종 18/11/2 忠淸道監司(在任)
51	柳守剛	1438	○					집세종 20/6/29, 忠淸道觀察使(除授)
52	尹炯	1439	○					집세종 21/6/12, 忠淸道觀察使(除授)
53	任從善	1440	○					집세종 22/6/9, 忠淸道觀察使(除授)
54	李孟常	1440	○					집세종 22/8/9, 忠淸道觀察使(在任)
55	李益朴	1442	○	⑦	⑦	⑦	⑦	집세종 24/7/3, 忠淸道觀察使(除授) 豆觀察使
56	金銚	1443	○					집세종 25/8/22, 忠淸道觀察使(除授)
57	成奉祖	1445	○					집세종 27/07/01, 忠淸道觀察使(除授)
58	楊厚	1446	○					집세종 28/8/5, 忠淸道都觀察使(除授)
59	李正寧	1447	○					집세종 29/7/8, 忠淸道都觀察使(除授)
60	權克和	1448	○					집세종 30/7/1 忠淸道都觀察使兼判淸州牧使 (除授)
61	趙遂良	1452	○					집단종 0/10/1, 忠淸道觀察使(除授)
62	安完慶	1453	○					집단종 1/2/8, 忠淸道觀察使(除授)
63	閔騫	1453	○					집단종 1/10/11, 忠淸道觀察使(除授)
64	朴彭年	1455	○					집단종 3/4/4, 忠淸道觀察使(在任)
65	鄭陟	1455	○					집세조 1/8/19, 忠淸道都觀察使(除授)
66	李重	1456	○					집세조 2/7/29 忠淸道觀察使(在任)
67	韓昌	1457	○					집세조 3/07/05, 憂知中樞院事兼忠淸道觀察使(除授)
68	盧叔全	1457	○					집세조 3/7/11, 忠淸道觀察使(除授)
69	黃孝源	1458	○					집세조 4/6/28, 藝文提學兼忠淸道都觀察使(除授)
70	安崇孝	1459	○					집세조 5/11/8, 同知中樞院事兼忠淸道都觀察使(除授)
71	任孝仁	1461	○					집세조 7/1/20, 忠淸道都觀察使(除授)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법	령	국	
72	崔士老	1462	○					집세조 8/12/7, 忠淸道觀察使兼知刑曹事(除授)
73	崔漢卿	1462	○					집세조 8/12/8, 忠淸道觀察使(肅拜)
74	辛永孫	1463,	○					집세조 9/12/1, 愉知中樞院事忠淸道觀察使(除授)
75	權 磬	1463	○					집세조 9/12/13, 忠淸道觀察使(除授) *미부임
76	辛永孫	1463	○					집세조 9/12/17, 忠淸道觀察使(除授)
77	金震知	1464	○					집세조 10/11/04, 忠淸道觀察使(除授)
78	李皎然	1465	○					집세조 11/08/28, 忠淸道觀察使(除授)
79	李承召	1466	○					집세조 12/7/10, 忠淸道觀察使(在任)
80	宋文琳	1466	○					집세조 12/07/25, 忠淸道觀察使(除授) *인물평
81	金之慶	1467	○					집세조 13/11/08, 守忠淸道觀察使(除授)
82	安哲孫	1468	○					집세조 14/02/20, 忠淸道觀察使(除授)
83	金良璥	1469	○					집예종 1/02/10, 守忠淸道觀察使(除授)
84	金 瑩(玉筆)	1470	○					집성종 1/03/05,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除授)
85	金 瑾	1470	○					집성종 1/06/03,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 미부임
86	宣 炯	1470	○					집성종 01/06/05, 忠淸道觀察使(除授)
87	金永濡	1471	○	⑯	⑯	⑯	⑯	집성종 2/05/22,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辛卯(1531), 官至知樞
88	韓繼純	1472	○					집성종 3/04/19, 資憲大夫淸平君兼忠淸道觀察使(除授)
89	愼承善	1473	○					집성종 4/05/25, 資憲大夫居昌君兼忠淸道觀察使(除授)
90	李德良	1473	○					집성종 4/11/05, 嘉靖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91	金 紐	1474	○					집성종 5/10/06, 兼忠淸道觀察使(除授)
92	成允文	1474	○					집성종 5/10/22 兼忠淸道觀察使(除授)
93	李全粹	1475	○					집성종 6/11/10, 嘉善大夫兼忠淸道觀察使(除授)
94	梁順石	1476	○					집성종 7/12/21,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설	군	증	임	국	
95	李 陸	1477	○	(3)	(3)	(3)	(3)	설성종 8/07/24, 通政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官至吏判
96	李世佐	1478	○					설성종 9/08/20,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除授)
97	洪貴達	1479	○					설성종 10/09/24, 通政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98	朴安性	1480	○					설성종 11/01/15,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除授)
99	李慎孝	1481	○	(2)	(2)	(2)	(2)	설성종 12/01/25, 通政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100	申 浚	1482	○					설성종 13/02/21, 嘉靖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01	河叔溥	1483	○					설성종 14/5/21, 忠淸道觀察使(在任)
102	李 拱	1484	○					설성종 15/04/20,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03	金自貞	1484	○					설성종 15/05/15,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04	姜子平	1485	○					설성종 16/04/11, 通政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05	尹 垢	1485	○					설성종 16/05/06,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除授)
106	蔡 壽	1486	○					설성종 17/05/20,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07	金礪石	1487	○					설성종 18/03/12,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除授)
108	金礪石	1487	○					설성종 18/09/28,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09	李淑琦	1488	○					설성종 19/02/16, 資憲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10	李德崇	1488	○	(5)	(5)	(5)	(5)	설성종 19/2/28, 通政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官止監司
111	崔應賢	1488	○					설성종 19/10/28, 忠淸道觀察使(辭朝)
112	李 則	1489	○					설성종 20/06/14, 嘉靖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설	임	증	임	국	
113	洪興	1490	○					설성종 21/06/16, 嘉善大夫忠淸道觀察事(除授)
114	李季男	1491	○					설성종 22/07/05,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15	李誼	1491	○					설성종 22/12/06,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16	尹坦	1492	○					설성종 23/12/19,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117	曹偉	1493, 1494	○	④	④	④	④	설성종 24/12/24,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除授) 임觀察使, 甲寅(1494), 官至吏叅
118	李叔誠	1495	○					설연산 01/03/06, 忠淸道觀察使(除授)
119	鄭眉壽	1496	○	⑥	⑥	⑥	⑥	설연산 2/윤3/21, 忠淸道觀察使(除授), 陞觀察使
120	李諱	1497	○					설연산 03/04/20, 忠淸道觀察使(除授)
121	李蓀	1497	○					설연산 03/04/24, 忠淸道觀察使(除授)
122	楊稀枝	1498	○					설연산 04/07/25, 忠淸道觀察使(除授)
123	洪自阿	1499	○					설연산 05/09/13, 忠淸道觀察使(辭朝), *인물평
124	閔師騫	1500	○					설연산 06/09/28, 충淸道관찰사(除授)
125	權柱	1501	○					설연산 07/윤7/20, 忠淸道觀察使(除授)
126	李自健	1502	○					설연산 08/08/10, 忠淸道觀察使(除授)
127	安璨	1504	○	⑧	⑧	⑧	⑧	설연산 10/4/18, 忠淸道觀察使(在任) 임觀察使, 甲子(1504), 官至判書
128	金浩	1506	○					설중종 01/09/06, 忠淸道觀察使(除授)
129	孫潤	1507	○	⑨	⑨	⑨	⑨	설중종 2/6/2, 忠淸道觀察使(在任) 임觀察使, 正德二年丁卯(1507), 官至叅贊
130	崔灝	1507	○					설중종 02/10/21, 忠淸道觀察使(除授)
131	安塘	1507, 1508	○	⑩	⑩	⑩	⑩	설중종 02/11/04, 忠淸道觀察使(除授) 임觀察使, 正德戊辰(1508), 官至左相
132	曹繼商	1508	○					설중종 3/12/6, 忠淸道觀察使(除授)
133	成世純	1509	○					설중종 04/12/28, 忠淸道觀察使(除授)
134	柳世琛	1511	○					설중종 06/01/21, 忠淸道觀察使(除授)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군	군	군	
135	韓亨允	1511	○					집중종 06/03/21, 忠淸道觀察使(除授)
136	金 瑞	1512	○					집중종 07/04/21, 忠淸道觀察使(除授)
137	趙 舜	1513	○					집중종 8/2/18, 忠淸道觀察使(在任)
138	崔淑生	1513	○	⑪	⑪	⑪	⑪	집중종 08/04/24,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正德癸酉(1513), 官至贊成
139	李希孟	1514	○					집중종 09/05/15, 忠淸道觀察使(除授)
140	金克福	1515	○					집중종 10/05/27, 忠淸道觀察使(除授)
141	權敏手	1516	○					집중종 11/07/16, 忠淸道觀察使(除授)
142	金謹思	1517	○					집중종 12/8/4, 忠淸道觀察使(在任)
143	李世應	1518	○					집중종 13/01/05, 忠淸道觀察使(除授)
144	李成童	1518	○					집중종 13/06/28, 忠淸道觀察使(除授)
145	柳 雲	1518	○	⑫	⑫	⑫	⑫	집중종 13/07/04,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戊寅(1518), 官至大憲
146	鄭順朋	1519	○					집중종 14/08/02, 忠淸道觀察使(除授)
147	柳 雲	1519	○					집중종 14/08/24, 忠淸道觀察使(除授)
148	崔重洪	1519	○					집중종 14/09/20, 忠淸道觀察使(除授)
149	成 雲	1519	○					집중종 14/09/24, 忠淸道觀察使(除授)
150	申公濟	1519	○					집중종 14/09/26, 忠淸道觀察使(除授) 집중종 14/11/05, 忠淸道觀察使兼淸州牧使(除授)
151	孫仲璥	1520	○					집중종 15/10/13, 忠淸道觀察使(除授)
152	趙玉峴	1521	○					집중종 16/11/24, 忠淸道觀察使(除授)
153	尹希仁	1523	○					집중종 18/6/26, 忠淸道觀察使(在任)
154	金 磁	1523	○					집중종 18/12/19, 忠淸道觀察使(除授)
155	金伯英	1523		⑬	⑬	⑬	⑬	監觀察使, 癸未(1523)
156	尹仁鏡	1525	○					집중종 20/01/17, 忠淸道觀察使(除授)
157	李 茷	1526	○					집중종 21/01/27, 忠淸道觀察使(除授)
158	俞汝霖	1526	○					집중종 21/09/29, 忠淸道觀察使(除授)
159	尹殷弼	1528, 1527	○	⑭	⑭	⑭	⑭	집중종 22/10/29,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戊子(1528), 官至吏叅
160	金 琨	1528	○					집중종 23/10/18, 忠淸道觀察使(除授)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15	16	17	18	19	
161	李思鈞	1529	○					▣중종 24/11/26, 忠淸道觀察使(除授)
162	潘碩平	1530	○	⑯	⑯	⑯	⑯	▣중종 25/01/16,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嘉靖庚寅(1530), 官至判書
163	朴光榮	1531	○					▣중종 26/02/05, 忠淸道觀察使(除授)
164	崔重洪	1531	○					▣중종 26/07/06, 忠淸道觀察使(除授)
165	李龜齡	1532	○	⑰	⑰	⑰	⑰	▣중종 27/02/04, 忠淸道觀察使(特命除授) 監觀察使, 壬辰(1532), 官至判書
166	蘇世讓	1533	○					▣중종 28/03/12, 忠淸道觀察使(除授)
167	金楊震	1533	○					▣중종 28/07/25, 忠淸道觀察使(除授)
168	丁玉亨	1533	○					▣중종 28/12/22, 忠淸道觀察使(除授)
169	李壽童	1535	○	⑲	⑲	⑲	⑲	▣중종 29/12/22,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乙未(1535), 官至參判
170	尹安仁	1536	○	⑲	⑲	⑲	⑲	▣중종 30/08/03,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嘉靖內申(1536), 官至吏叅
171	吳 準	1537	○					▣중종 31/09/03, 忠淸道觀察使(除授)
172	南世健		○					▣중종 31/09/19, 忠淸道觀察使(除授)
173	金光轍	1538	○					▣중종 32/12/16, 忠淸道觀察使(단핵기사)
174	韓胤昌	1538	○	⑳	⑳	⑳	⑳	▣중종 33/02/21,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嘉靖戊戌, 官至參判
175	尹 漑	1538	○					▣중종 33/06/24, 忠淸道觀察使(除授)
176	蔡世傑	1539	○					▣중종 34/02/09, 忠淸道觀察使(除授)
177	許 磁	1540	○	㉑	㉑	㉑	㉑	▣중종 34/윤7/28,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嘉靖庚子(1540), 官至贊成
178	權應昌	1541		㉒	㉒	㉒	㉒	▣觀察使, 嘉靖辛丑(1541), 官至吏叅
179	鄭惟善	1542	○					▣중종 36/05/29, 忠淸道觀察使(除授)
180	宋 琰	1543	○					▣중종 37/윤5/1, 忠淸道觀察使(除授)
181	金益壽	1544	○					▣중종 38/05/27, 忠淸道觀察使(除授)
182	鄭萬鍾	1544	○	㉔	㉔	㉔	㉔	▣중종 38/12/22, 忠淸道觀察使(在任) 監觀察使, 甲辰(1544), 官至叅判
183	洪敍疇	1544	○	㉕	㉕	㉕	㉕	▣중종 39/06/28, 忠淸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嘉靖甲辰(1544), 官止監司
184	宋 琰	1545		㉖	㉖	㉖	㉖	▣觀察使, 乙巳(1545), 官至判尹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증	임	국	
185	金益壽	1545	○					집명종 00/08/02, 忠淸道觀察使(除授)
186	元 混	1545	○					집명종 00/08/16, 忠淸道觀察使(除授)
187	金光轍	1546		㉖	㉖	㉖	㉖	집觀察使, 内午(1546), 官至叅判
188	金益壽	1547	○	㉗	㉗	㉗	㉗	집명종 01/09/09, 忠淸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丁未(1547), 官至叅判
189	羅世纘	(1549)	○					집명종 3/3/21, 忠淸道觀察使(在任)
190	李 澤	1548, 1549	○	㉘	㉘	㉘	㉘	집명종 03/10/14, 忠淸道觀察使(除授) 집명종 04/05/21,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戊申(1548), 官至大憲
191	金光軫	1549	○					집명종 04/11/20, 清洪道觀察使(除授)
192	李夢弼	1549, 1550	○	㉙	㉙	㉙	㉙	집명종 5/8/9,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己酉(1549), 官至叅判
193	慶 淦	1550, 1551	○	㉚	㉚	㉚	㉚	집명종 6/9/12,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庚戌(1550), 官至行副學
194	元繼儉	1551		○	○	○	○	집觀察使, 辛亥(1551), 官至行史判
195	蔡世英	1552	○					집명종 7/7/16, 清洪道觀察使(除授)
196	李夢亮	1552	○	○	○	○	○	집명종 8/2/11,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壬子(1552), 官至叅贊 謂定獻公
197	安 璞	1553	○	○	○	○	○	집명종 9/3/2,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癸丑(1553), 官至兵判
198	金光軫	1554		○	○	○	○	집觀察使, 甲寅(1554), 官至叅判
199	朴永俊	1555	○					집명종 10/3/3, 清洪道觀察使(除授)
200	閔 箕	1555	○	○	○	○	○	집명종 10/4/8,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乙卯(1555), 官至右相
201	柳智善	1556		○	○	○	○	집觀察使, 丙辰(1556), 官至叅判
202	金 鐨	1557	○	○	○	○	○	집명종 12/2/10,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丁巳(1557), 官至戶判
203	李 澤	1558	○	○	○	○	○	집명종 13/2/27,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戊午(1558), 官至叅判
204	沈守慶	1559	○	○	○	○	○	집명종 14/2/6, 清洪道觀察使(除授) 집觀察使, 己未(1559), 官至右相
205	姜 遷	1560		○	○	○	○	집觀察使, 庚申(1560), 官至判書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설명	국	증명	증명	증명	
206	申汝悰	1560	○ ○ ○ ○ ○	○	설명종 15/7/22,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庚申(1560), 官至叅判			
207	閔 篤	1561	○ ○ ○ ○ ○	○	설명종 16/7/11,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辛酉(1561)再行			
208	李英賢	1562	○ ○ ○ ○ ○	○	설명종 17/10/20,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壬戌(1562), 官至叅判			
209	李 鐸	1562	○ ○ ○ ○ ○	○	설명종 17/8/1,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壬戌(1562), 官至領相			
210	朴忠元	1563	○ ○ ○ ○ ○	○	설명종 18/1/4,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癸亥(1563), 官至吏叅			
211	李純亨	1564	○		설명종 19/2/1, 清洪道觀察使(除授), 19/2/9 (遞職)			
212	柳 潛	1564	○ ○ ○ ○ ○	○	설명종 19/2/11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甲子(1564), 官至判書			
213	睦 燕	1565	○ ○ ○ ○ ○	○	설명종 20/2/8 清洪道觀察使(除授) 監觀察使, 乙丑(1565), 官至吏叅			
214	安方慶	1565	○ ○ ○ ○ ○	○	설명종 20/7/29 清洪道觀察使(除授) 監守觀察使, 乙丑(1565), 官止監司			
215	黃 瑞	1566	○ ○ ○ ○ ○	○	설명종 21/3/28 清洪道觀察使(除授) 監守觀察使, 1566, 官止監司			
216	姜士弼	1566	○ ○ ○ ○ ○	○	설명종 21/8/11 清洪道觀察使(除授) 監守觀察使, 1566, 官止監司			
217	盧 賴	1567	○ ○ ○ ○ ○	○	설명종 22/4/2 清洪道觀察使(除授) 監守觀察使, 1567, 官至吏判			
218	盧守慎		○		설선수 1/12/1, 忠淸道觀察使(除授)			
219	朴好元	1568		○ ○ ○ ○ ○	○	監守觀察使, 1568, 官至判書		
220	兪 浩	1569		○ ○ ○ ○ ○	○	監守觀察使, 1569, 官至左相		
221	朴素立	1570		○ ○ ○ ○ ○	○	監守觀察使, 1570, 官至史判		
222	尹 鉉	1571		○ ○ ○ ○ ○	○	監觀察使, 1571, 官至戶判		
223	柳 瑙	1572		○ ○ ○ ○ ○	○	監守觀察使, 1572, 官止領相		
224	尹 復	1573	○		설선조 6/9/19, 忠淸觀察使(除授)			
225	李 湛	1573		○ ○ ○ ○ ○	○	監守觀察使, 1573, 官止副學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법	령	국	
226	李忠綽	1573	○	○	○	○	○	집선조 6/6/25, 忠淸監司(罷職) 監守觀察使, 1573, 官止監司
227	崔應龍	1573	○	○	○	○	○	집선조 6/6/25 忠淸監司(除授) 監守觀察使, 1573, 除北兵使去, 官至叅判
228	李 邳	1573	○					집선조 6/8/26 忠淸監司(除授) 집선조 6/9/19(遞職)
229	金命元	1573	○					집선조 6/10/11 忠淸監司(除授)
230	尹 鉉	1573	○					집선조 6/10/12, 忠淸監司(在任)
231	高景虛	1574		○	○	○	○	監守觀察使, 1574, 官止監司
232	崔應龍	1574	○	○	○	○	○	집선조 6/10/28 忠淸監司(除授), 監觀察使, 1574, 再任
233	具思孟	1575	○	○	○	○	○	집선조 8/3/20 忠淸監司(除授) 監守觀察使, 1575, 官至贊成
234	具鳳齡	1576		○	○	○	○	監守觀察使, 1576, 官至吏叅
235	申 湛	1577	○	○	○	×	×	집선조 11/3/17, 忠淸監司(在任) 監守觀察使, 1577, 官至叅判
236	鄭彥智	1578	○	○	○	○	○	집선조 11/4/8, 忠淸監司(除授) 監觀察使, 1578, 官至吏叅
237	柳希霖	1579		○	○	○	○	監守觀察使, 1579, 官至叅判
238	權克禮	1580	○	○	○	○	○	집선조 14/4/3, 忠淸監司(遞職) 監觀察使, 1580, 官至吏判
239	金悌甲	1581	○	○	○	○	○	집선조 14/4/4, 忠淸監司(除授) 監守觀察使, 1581, 官止監司
240	金宇宏	1581		○	○	○	○	監守觀察使, 1581, 官止副學
241	李 增	1582		○	○	○	○	監守觀察使, 1582, 官至禮曹判書 諱懿簡
242	黃廷彧	1583	○	○	○	×	×	집선수 17/2/1, 忠淸監司(遞職) 監守觀察使, 1583, 官至判書
243	金億齡	1584	○	○	○	○	○	집선조 17/2/18, 忠淸監司(除授) 監守觀察使, 1584, 官至知中
244	安宗道 (1584)	1585		○	○	○	○	집선조 18/04/19, 忠淸道觀察使(在任) 監守觀察使, 1584, 官止監司
245	韓 準	1585		○	○	○	○	監守觀察使, 1585, 官至叅贊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246	李 認	1586	○	○	○	○	○	집선조 20/2/27, 忠淸道監司(遞職) 監守觀察使, 1586, 官止副學
247	權 微	1587	○	○	○	○	○	집선조 20/2/27, 忠淸道監司(除授) 監守觀察使, 1587, 官至兵判
248	李憲國	1588	○	○	○	○	○	집선조 21/6/29, 忠淸監司(在任) 監觀察使, 1588, 官至左相
249	李海壽		○	○	○	○	○	집선조 21/7/5, 忠淸監司(除授) 監 선수 20/2/1,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守觀察使, 1589, 官止副學
250	李 輅	1590	○	○	○	○	○	집선조 22/6/22, 忠淸監司(在任) 監觀察使, 1590, 官至判敎
251	奇 苑	1590		○	○	○	○	監守觀察使, 1590, 官止監司
252	李誠中	1591	○	○	○	○	○	집선조 24/1/29, 忠淸監司(除授) 監觀察使, 1591, 官至判書
253	尹先覺 (國馨)	1591	○	○	○	○	○	집선수 24/5/1, 忠淸監司(除授), 집선조 25/05/03, 忠淸道觀察使(在任) 監兼巡察使, 改名國馨, 1591. 9. 부임, 임진 년 봄 왜변에 嘉善兼巡察使로 승격. 官至 判書
254	許 項	1592	○	○	○	○	○	집선조 25/09/09,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592. 12. 공주목사에서 당상으 로 승격되어 감사로 이배합으로 朝辭를 생략하고 부임, 官至左相
255	尹承吉		○					집선조 26/10/22, 忠淸道觀察使(除授), 26/10/26(改差)
256	尹仁涵		○					집선조 26/10/26, 忠淸道觀察使(除授)
257	尹承勳	1593	○	○	○	○	○	집선조 26/10/29, 忠淸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593. 11. 통정으로 와서 역직 송유진을 捕啓하여 嘉善으로 승격하고 仍 任, 官至領相
258	朴弘老	1595	○	○	○	○	○	집선조 28/10/14,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595, 通政으로 來
259	趙仁得		○					집선조 29/1/20, 忠淸監司(除授)
260	李廷蘓	1596	○	○	○	○	○	집선조 29/1/20 忠淸監司(薦舉) 監兼巡察使, 1596. 3. 嘉善으로 來, 官至知樞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臣	國	忠	清	道	
261	張雲翼	1596	○					臣선조 29/01/27 忠淸道觀察使(除授)
262	柳根	1596	○	○	○	○	○	臣兼巡察使, 1596. 8. 資憲으로 来, 官至贊成
263	金時獻	1597	○	○	○	○	○	臣선조 30/3/15 忠淸監司(在任) 臣兼巡察使, 1597. 3. 通政來, 徑遞, 官至吏叅
264	鄭允祐	1597	○	○	○	○	丁	臣선조 30/07/14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1597. 8. 2. 通政來, 年老豆 徑遞, 官止監司
265	金信元	1597	○	○	○	○	○	臣선조 30/09/29 忠淸道觀察使(辭朝) 臣兼巡察使, 1597. 10. 5. 嘉善來, 官至吏判
266	尹敬立	1598	○	○	○	○	○	臣선조 32/3/16 忠淸監司(罷職) 臣兼巡察使, 督運使에서 1598. 11. 6. 監司로 移拜되어 朝辭를 생략하고 부임. 小通事를 함부로 참한[擅斬] 것으로 論遞, 通政, 官 止監司
267	金功	1599	○	○	○	○	○	臣선조 32/3/18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1599. 3. 27. 嘉義豆 와서 辭去, 官至吏叅
268	權愬	1600	○	○	○	○	○	臣선조 32/12/26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1600. 1. 13. 嘉善으로 와서 監 營 等項을 私立한 일로 暗行이 啓遞, 兼巡 察使, 官至知樞
269	張晚	1600	○	○	○	○	○	臣선조 33/03/27 忠淸監司(在任) 臣兼巡察使, 1600. 4. 3. 嘉善으로 来, 亡命한 趙景祿 捕啓豆 嘉義豆 陞階, 1601. 5. 5. 同知豆 除授되어 去, 官至贊成
270	李用淳	1601	○	○	○	○	○	臣선조 34/05/05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1601. 嘉善으로 와서 1602. 捕賊 의 공으로 資憲으로 승진, 官至知樞
271	禹伏龍		○					臣선조 35/7/23 忠淸監司(除授)
272	成泳		○					臣선조 35/8/2 忠淸監司(除授)
273	柳根	1602	○	○	○	○	○	臣선조 35/09/12 忠淸道觀察使(辭朝) 臣兼都巡察使, 1602. 正憲으로 再來하여 1604. 辭去, 兼牧, 設衙舍, 入處山城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법	국	
274	李弘老	1604	○	○	○	○	○	집선조 37/02/20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604. 嘉善으로 와서, 1605. 論遞, 城地가 窄迫하여 도로 舊營으로 내려옴, 官至坼伯
275	尹噲	1605	○	○	○	○	○	집선조 38/11/30 忠淸道監司(除授) 監兼都巡察使, 1605. 資憲으로 와서 1607. 병으로 辭遞, 1606년 留營을 罷함, 官至判書
276	沈悅	1607	○	○	○	○	○	집선조 40/08/18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607. 嘉善으로 와서 同年 겨울에 親病으로 辞遞, 官至領相
277	崔沂	1607	○	○	○	○	○	집선조 40/11/19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607. 通政으로 와서 1608. 병으로 辞遞, 官止監司
278	申湜	1608	○	○	○	○	○	집광해 0/07/12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608. 嘉義로 와서 1609. 鐮滿으로 去, 官至行大憲
279	俞人禎	1609	○	○	○	○	○	집광해 1/8/13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1609. 通政으로 와서 1610. 병으로 辞遞, 各邑의 營屬을 放還함, 官至叅判
280	鄭曄	1610	○	○	○	○	○	집광해 2/윤3/10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1610. 通政으로 와서, 1611. 병으로 辞遞, 官至叅贊
281	洪慶臣	1611	○	○	○	○	○	집광해 3/5/4,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1611. 通政으로 와서 辞遞, 官至副學
282	朴彝敍	1611	○	○	○	○	○	집광해 4/6/5,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1611. 通政으로 来, 1612. 鐮滿去, 官至吏叅
283	李慶全	1612	○	○	○	○	○	집광해 4/6/5 忠洪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612. 嘉善으로 와서 同年 윤11월 아들 厚가 病이 重함을 듣고 급히 면저 올라와 벼려 臺諫이 論遞, 官至判書
284	李廷臣	1612	○	○	○	○	○	집광해 4/12/5 忠洪監司(除授), 집광해 5/8/29 公洪監司(在任), 집광해 6/4/10 公洪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1612. 嘉善으로 와서 逆獄으로 인하여 仍任, 1614. 7. 병으로 辞遞, 官至坼伯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증	임	국	
285	尹孝全	1614	○	○	○	○	○	집광해 6/6/20 公洪道觀察使(除授) ○ 吏兼都巡察使, 1614. 資憲으로 와서 1615. 親病으로 辭遞, 官至大憲
286	黃敬中	1615	○	○	○	○	○	집광해 7/4/19 公洪監司(除授) ○ 吏兼巡察使, 1615. 嘉善으로 와서 1616. 병으로 辞遞, 官至監司
287	李安訥		○					집광해 8/1/14 公洪監司(除授) 8/1/17(遞差)
288	慶 邊	1616	○	○	○	○	○	집광해 8/7/12 公洪監司(在任) ○ 吏兼巡察使, 1616. 2. 通政으로 와서 1617. 5. 箇滿去, 官至叅判
289	李春元	1617	○	○	○	○	○	집광해 9/3/26 公洪監司(除授) ○ 吏兼巡察使, 1617. 5. 嘉善으로 와서 1618. 6. 箇滿去, 官止行監司
290	呂祐吉	1618	○	○	○	○	○	집광해 10/6/8 公洪監司(除授) ○ 吏兼巡察使, 1618. 6. 嘉善으로 와서 동년 12. 親病으로 辞歸, 官止監司
291	(李성)	1619	○	墨削		○	○	집광해 10/12/25 公洪道監司(除授) ○ 吏兼巡察使, 墨削, 1619. 1. 嘉善으로 来, 同年 11. 備忘記로 파직, 尹純仁의 일을 즉시 狀啓하지 않았기 때문, (仁祖)反正誅
292	朴鼎賢	1619		○	○	○	○	○ 吏兼巡察使, 1619. 11. 嘉善으로 와서, 1621. 윤 2. 箇滿去, 官至判書
293	呂祐吉	1620	○					집광해 12/2/1 公洪監司(在任)
294	(李悵)	1621	○	墨削		○	○	집광해 13/2/23 公洪監司(除授) ○ 吏兼都巡察使, 1621. 윤 2. 崇政으로 와서, 1622. 4. 箇滿去, (仁祖)反正誅
295	安應亨	1622	○	○	○	○	○	집광해 14/3/12 公洪監司(除授) ○ 吏兼巡察使, 1622. 4. 嘉善으로 와서, 11월 親病으로 辞歸, 官至叅判
296	朴慶新	1622	○	○	○	○	○	집광해 14/10/20 公洪道觀察使(除授) ○ 吏兼巡察使, 1622. 11. 嘉善으로 来, 1623. 3. 罷歸, 官止監司
297	李德洞	1623	○	○	○	○	○	집인조 1/3/18 忠淸監司(除授) ○ 吏兼都巡察使, 1623. 4. 正憲으로 来, 6월 辭遞, 官至贊成
398	申 鑑	1623		○	○	○	○	○ 吏兼巡察使, 1623. 6. 嘉善으로 来, 1624. 1. 親病으로 辞歸, 官至叅判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399	李命俊	1624	○	○	○	○	○	집인조 2/2/11 忠淸觀察使(在任) 監兼巡察使, 1624. 1. 通政으로 来, 大駕 南 幸(인조의 공주 몽진)時 嘉善으로 승격, 동년 9월에 辭歸, 官至叅判,
300	尹履之	1624	○	○	○	○	○	집인조 2/8/3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1624. 9. 通政으로 来, 1925. 9. 箇滿去, 官至判敎
301	鄭廣敬	1625	○	○	○	○	○	집인조 3/9/4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1625. 10. 嘉善으로 来, 1626. 9. 辭歸, 官至史叅
302	金起宗		○					집인조 4/윤6/11 忠淸監司(除授)
303	權盼	1626	○	○	○	○	○	집인조 4/8/27 忠淸監司(辭朝) 監兼都巡察使, 1626. 9. 資憲으로 来, 1627. 畧 胡變時 軍糧을 不謹運入으로 資憲으로 강등, 1627. 10. 辭歸, 官至判書
304	李敬興	1627	○	○	○	○	○	집인조 5/9/12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通政으로 1627. 10. 来, 1628. 11. 箇滿去, 領議政, 贈謚文貞公
305	鄭文翼	1628	○	○	○	○	○	집인조 6/10/16 忠淸道觀察使(特命除授) 監兼巡察使, 嘉義, 1628. 11. 来, 1629. 3. 親 病辭歸, 官止監司, 崇禎
306	南以雄	1629	○	○	○	○	○	집인조 7/11/29 公淸監司(在任) 監兼巡察使, 嘉善, 1629. 3. 来, 1630. 3. 箇滿 去, 官至左相
307	鄭孝成	1630	○	○	○	○	○	집인조 8/2/9 公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嘉善, 1630. 3. 来, 1631. 4. 箇滿 去, 官止監司
308	俞伯曾	1631		○	○	○	○	監兼巡察使, 通政, 1631. 4. 来, 동년 11. 辭 遞, 이달 30日政에 吏曹 參議로 제수되어 上去, 官至史叅
309	尹知敬	1631	○	○	○	○	○	집인조 9/윤11/2 公淸監司(辭朝) 監兼巡察使, 通政, 1631. 윤11. 来, 1633. 1. 箇滿去, 官止監司
310	尹毅立	1633		○	○	○	○	監兼巡察使, 嘉善, 1633. 1. 来, 箇滿, 1634. 1. 20日政에 兵曹叅判으로 제수되어 上去, 官 至判書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臣	國	召	誥	國	
311	李安訥	1634	○	○	○	○	○	臣인조 12/1/18 公清監司(除授) 臣兼都巡察使, 正憲, 1634. 2. 來, 箇滿後量田 完畢間仍任 以貢物五結布不納守令決杖公事 趁不舉行 推考 1635. 4. 12. 刑曹啓罷, 官至判書
312	朴明樞	1635	○	○	○	○	○	臣인조 13/7/13 忠清監司(在任) 臣兼巡察使, 通政, 1635. 5. 來, 1636. 7. 箇滿後 禮曹叅判에陞授되어 上去, 官止叅判
313	鄭世規	1636	○	○	○	○	○	臣인조 14/6/14 公清監司(除授) 臣兼巡察使, 前郡守豆 特配되어 1636. 7. 來, 1637. 6. 辭遞, 是月 21日政에 戸曹叅議로 제수되어 7월에 上去, 官止監司
314	鄭太和	1637	○	○	○	○	○	臣인조 15/6/28 忠清監司(除授) 臣兼巡察使, 舍人으로 特配되어 1637. 7. 來, 1638. 6. 親病으로 辭遞, 7월 13日政에 同 副承旨로 제수되어 上去, 官至領相
315	吳端		○					臣인조 16/6/22 忠清監司(除授), 16/6/23(罷職)
316	金堉	1638	○	○	○	○	○	臣인조 16/6/25 忠清監司(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638. 7. 來, 1639. 8. 箇滿去, 官至領相
317	李厚源	1639	○	○	○	○	○	臣인조 17/7/18 忠清監司(除授) 臣兼巡察使, 通訓, 1639. 8. 來, 箇滿後 仍任, 1641. 3. 27日政에 判決事에 제수되어 4월 에 上去, 官至右相
318	鄭良弼	1641	○	○	○	○	○	臣인조 20/2/11 忠清監司(在任), 臣인조 20/9/29(罷職) 臣兼巡察使, 嘉善, 順天府使에서 移拜, 1641. 4. 來, 箇滿後仍任, 金井察訪 成汝淳에 관 한 褒啓가 거짓임이 들통나 1642. 11. 현 부의 啓로 罷職, 官至叅判
319	李時昉		○					臣인조 20/11/26 忠清監司(除授)
320	鄭致和	1642	○	○	○	○	○	臣인조 21/6/21 忠清監司(在任) 臣兼巡察使, 通政, 1642. 12. 來, 1643. 10. 병 으로 備局에서 啓하여 罷, 官至左相
321	金尙	1643	○	○	○	○	○	臣인조 21/11/9 忠清監司(辭朝) 臣兼巡察使, 通政, 兵曹叅議에서 1643. 12. 來, 1644. 11. 箇滿을로 刑曹叅議에 제수되 어 12월 去, 官至監司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법	임	국	
322	李灝(?)	1644	○	○	○	○	○	집인조 22/11/25 公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嘉義, 1644. 12. 來, 1645. 11. 道內 軍兵 조련과 관련하여 憲府의 啓로 罷職, 官至兼判書
323	林 담	1645	○	○	○	○	○	집인조 24/3/28 公清監司(在任) 監兼巡察使, 通政, 1645. 12. 前慶尙監司豆米, 1646. 4. 역적 安益信 柳濯 등을 討平, 7월 공산성내로 移營, 8월 평안감사로 이배하고 가선으로 승격, 9월에 또 討逆으로 論賞하여 嘉義로 승격하여 去, 官至吏判
324	南 銑	1646	○	○	○	○	○	집인조 24/8/14 洪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嘉善, 1646. 9. 來, 1647. 9. 箇滿, 同知에 除授되어 11월 去, 官至吏判
325	趙啓遠	1647	○	○	○	○	○	집인조 25/9/28 洪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47. 11. 來, 全州府尹에서 移拜, 1648. 8. 辭遞, 副護軍으로 去, 官至判書
326	金 素	1648	○	○	○	○	○	집인조 26/7/11 洪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晉州牧使 移拜, 1648. 9. 來, 1649. 1. 府 啓罷, 官止監司
327	尹得說	1649	○	○	○	○	○	집인조 27/1/15 洪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49. 2. 來, 1650. 2. 箇滿이나 勅使呈 仍任, 儉知에 除授되어 7月去, 官止監司
328	金慶餘	1650	○	○	○	○	○	집효종 1/5/19 洪清監司(除授), 立종 1/6/20 監兼巡察使, 通政, 1650. 7. 來, 同年 12. 病으로 辞遞, 官止監司
329	金汝鉉	1651	○	○	○	○	○	監兼巡察使, 嘉義, 1651. 1. 11. 來, 同年 10. 京人同事呈 宣惠廳 關文 때문에 遞差, 官至叅判
330	金弘郁	1651	○	○	○	○	○	집효종 2/10/3 洪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51. 10. 20. 承旨로 來, 1652. 8. 病으로 辞遞, 官止監司
331	趙 珺	1652	○	○	○	○	○	집효종 3/7/26 洪清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52. 9. 2. 來, 1653. 5. 貞慎翁主禮葬時 役軍을 宣惠廳에 품하지 않고 烟軍으로 擻用한 일로 선혜청의 啓辭에 의해 拿推, 官至行判書 집효종 4/4/10 洪清道→忠淸道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법	임	국	
332	姜栢年	1653	○	○	○	○	○	劉奐종 4/5/3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53. 5. 9. 到界, 瓜滿後 仍任, 1654. 9. 都事與營將公事場坐次等事 呈 啓稟見罷, 官至判樞
333	李後山	1654	○	○	○	○	○	劉奐종 5/8/28 忠洪監司(除授), 6/6/23 忠淸 監司(在任, 治罪) 監兼巡察使, 通政, 1654. 10. 2. 到界, 1655. 6. 各官守令中焰產設局與否查覈事로 인하여 院啓 拿推, 官至留守
334	權 壽	1655	○	○	○	○	○	劉奐종 6/6/24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55. 7. 6. 到界, 1656. 8. 瓜滿, 工曹叅議에 除授되어 上去, 官至叅 判
335	俞 창		○					劉奐종 7/12/22 忠淸監司(除授)
336	徐必遠	1656	○	○	○	○	○	劉奐종 7/7/18 忠淸監司(除授), 7/8/25(辭朝) 監兼巡察使, 以吏曹正郎 末擬受點 陞通政 1656. 9. 2. 到界, 1657. 8. 瓜遞, 官至兵判
337	姜 瑞		○					劉奐종 8/7/7 忠淸監司(除授)
338	李慶億	1657	○	○	○	○	○	劉奐종 8/8/4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舍人으로서 通政에 승진하여, 1657. 9. 14일 到界, 1658. 10. 瓜遞, 官至 左相
339	李泰淵	1658	○	○	○	○	○	劉奐종 9/12/5 忠洪監司(在任), 10/4/9 忠淸 監司(罷職) 監兼巡察使, 通政, 1658. 9. 26日政에 水原任 所豆부티 移拜, 11월 10일 到界, 1659. 4. 道內定配放未放修啓時違例啓聞事特罷, 官 至西伯
340	李 訖	1659		○	○		×	監兼巡察使, 通政, 1659. 4. 9日政 下批 / 5. 2. 到界, 동년 8월 因進上罷去, 官止監司
341	吳挺垣	1659	○	○	○	○	○	劉奐종 0/8/6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659. 9. 9. 到, 1660. 9. 瓜 滿, 賑救事呈 仍任, 동년 12월 辭職遞去, 官止監司
342	李 曼	1660	○	○	○	○	○	劉奐종 2/9/7 忠公監司(罷職) 監兼巡察使, 嘉善, 1660. 12. 28. 到界, 1661. 9. 因備局啓辭以大興地卜山事先罷後推, 官 至都憲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343	金徽	1661	○	○	○	×	×	閏현종 2/9/9 忠公監司(除授) 邑兼巡察使, 嘉善, 1661. 9. 27. 到界, 동년 12. 玉堂의 箚子로 인해 罷遞, 官至吏判
344	吳挺緯	1662	○	○	○	○	○	閏현종 2/12/13 忠公監司(除授), 3/1/9 湖西 監司(辭朝) 邑兼巡察使, 通政, 兵曹叅議豆 除授, 1662. 1. 15. 到界, 1663. 2. 瓜遞, 僉知中樞府事豆 去, 官至戶判
345	李弘淵	1663	○	○	○	○	○	閏현종 3/12/26 忠清監司(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承旨豆 除授, 1663. 2. 22. 到界, 1664. 2. 辭遞, 刑曹叅議豆 上去, 官 至叅贊
346	李翊漢	1664	○	○	○	○	○	閏현종 5/2/21 忠清監司(除授) 邑兼巡察使, 嘉善, 判決事豆 除授, 1664. 4. 1. 到界, 1664. 12. 以舒川僧賊捕捉時擅送右營 將事 囚備局 啓辭 拿去, 官至叅判
347	金始振	1664	○	○	○	○	○	閏현종 6/1/8 忠清監司(在任) 邑兼巡察使, 通政, 前承旨豆 除授, 1664. 12. 19. 到界, 1665. 6. 特陞嘉善, 同年 8월 以 病重 因大臣榻前所啓 罷遞
348	任義伯	1665	○	○	○	○	○	閏현종 6/9/6 忠清監司(辭朝) 邑兼巡察使, 嘉善, 慶尙監司瓜滿으로 除授, 1665. 9. 11. 到界, 1666. 3. 溫泉行幸으로 嘉義로 特陞, 同年 10. 瓜滿하여 同知中樞 府事로 遞歸, 官至叅判
349	李尙眞		○					閏현종 7/9/9 忠清監司(除授)
350	李元禎		○					閏현종 7/10/8 忠清監司(除授)
351	李敏迪	1666	○	○	○	○	○	閏현종 7/11/18 忠清監司(除授) 邑兼巡察使, 應敎로서 通政으로 승진하여 1666. 12. 23.(부임), 1667. 11. 22. 瓜滿, 大 臣이 啓하여 仍任, 1668. 1. 清州人南紀明 父母墳掘冢事로 被推, 奪告身 三等照律 人 啓罷遞, 官至都憲
352	閔維重	1668	○	○	○	○	○	閏현종 9/5/13 忠清監司(在任) 邑兼巡察使, 1668. 1. 22. 通政 前大司諫에서 제수, 2. 16. 到界, 1669. 2. 准瓜期移拜大 司成兼本道均田使, 4월 平安監司移拜, 官 至領敦寧 贈領議政 謂文貞公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령	국	
353	李翻	1669	○	○	○	○	○	閣현종 10/2/5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廣州府尹으로 除授, 1669. 3. 27. 到界, 동년 7. 1日政에서 兼公山府使豆 改下批, 1700. 2. 敕後到配罪人置於放秩判付內先罷後推 3月 遞去, 官至右相,
354	李弘淵	1670	○	○	○	○	○	閣현종 11/12/1 忠淸監司(在任) 副兼巡察使, 通政, 1670. 윤2. 25日政에 舒川郡守로서 再任을 下批, 1670년 3. 20. 到界, 1671. 9. 병으로 辭遞, 10. 20. 交承上去
355	南二星	1671	○	○	○	○	○	閣현종 12/9/16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副護軍으로 1671. 10. 21. 到界, 1673. 12. 瓜滿, 禮曹叅議로 去, 官至判書
356	孟胄瑞	1675	○	○	○	○	○	閣현개 14/10/28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兵曹叅議에서 除授, 1673. 12. 7. 到界, 1675. 윤5. 6. 被論遞歸, 官至右尹
357	趙威明	1675	○	○	○	○	○	閣속종 1/윤5/13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1675. 윤5. 13日政에 승지에서 除授, 6. 17. 到界, 1676. 7. 尊崇都監玉冊書寫事豆 軍職에 遞付됨, 8. 26. 호조참의로 去, 官至叅判
358	李溟翼	1676	○	○	○	○	○	閣속종 2/7/28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1676. 7. 28日政에 좌승지에서 제수, 1677. 4. (司憲)府의 啓豆 罷歸, 乙巳都事罷兼牧
359	李德周	1677	○	○	○	○	○	閣속종 3/4/10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1677. 4. 10日政에 호군에서 제수, 5. 14. 到界, 1678. 6. 瓜滿, 教知中樞府事로 去, 官止監司
360	慶取	1678	○	○	○	○	○	閣속종 4/5/17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678. 5. 17日政에 刑曹叅判에서 除授, 1679. 6. 瓜滿, 同知中樞府事로 去, 官止叅判
361	吳始大	1679	○	○	○	○	○	閣속종 5/5/15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679. 5. 15. 廣州府尹에서 除授, 1680. 4. (司憲)府 啓豆 遞罷, 官至叅判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군	군	국	
362	尹以濟	1680	○	○	○	○	○	집숙종 7/1/12 公清監司(在任) / 군숙종실록 6. 4. 丁卯(8)에는 尹義濟가 忠淸道觀察使 에 제수됨 군兼巡察使, 嘉善, 1680. 4. 14. 到, 1681. 5. 右尹에 除授, 官至叅贊
363	魚震翼		○					집숙종 7/1/19 公淸道觀察使(除授)
364	李師命		○					집숙종 7/2/11 公淸道觀察使(除授)
365	朴世堂		○					집숙종 7/2/14 公淸道觀察使(除授)
366	尹趾善		○					집숙종 7/3/6 公淸道觀察使(除授)
367	尹敬敎	1681	○	○	○	○	○	집숙종 7/4/9 公淸道觀察使(除授) 군兼巡察使, 通政, 1681. 4. 承旨에서 除授, 同年 5. 9. 到界, 1682. 5. 瓜滿, 13日政에 大司諫으로 移配, 官止副學,
368	尹嘉績	1682	○	○	○	○	○	집숙종 8/5/13 公洪道觀察使(除授) 군兼巡察使, 通政, 1682. 5. 13日政 承旨에서 除授, 6. 19 到界, 1683. 7. 瓜滿, 禮曹叅議 로 移配, 官至監司
369	尹以道	1683	○	○	○	○	○	집숙종 9/6/24 公洪道觀察使(除授) 군兼巡察使, 通政, 1683. 6. 24. 禮曹叅議에서 除授, 7. 7. 到界 1684. 1. 病으로 辭遞, 官 至判書
370	蘇斗山		○					집숙종 10/1/21 公洪道觀察使(除授)
371	李端錫	1684	○	○	○	○	○	집숙종 10/2/18 公洪道觀察使(除授) 군兼巡察使, 嘉善, 1684. 3. 19. 到, 1685. 3. 瓜滿後 麥秋까지 仍任, 6月 辭歸, 官至參 判
372	權是經	1685	○	○	○	○	○	집숙종 11/5/25 公洪道觀察使(除授) 군兼巡察使, 通政, 1685. 7. 4. 到, 1686. 7. 瓜 滿 遷歸, 官至判敦
373	宋奎濂	1686	○	○	○	○	○	집숙종 12/5/21 公洪道觀察使(除授) 군兼巡察使, 通政, 1686. 5. 21日政 安邊府使 에서 除授, 8. 4. 到界, 1687. 8. 瓜滿, 大司 諫에 除拜, 9月 吏曹叅議로 移拜上去, 官 至判書
374	任弘望		○					집숙종 13/7/23 公洪道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375	李彥綱	1687	○	○	○	○	○	집숙종 13/9/9 忠清道觀察使(除授) 14/5/11 公洪觀察使(在任) 同兼巡察使, 嘉善, 右尹에서 1687. 9. 27. 到, 1688. 7. 天安綱常罪人 柳斗星獄事 조사를 여러번 회피하자, 大臣의 계로 拿推, 官至 判書
376	李墩		○					집숙종 14/7/4 公洪道觀察使(除授)
377	尹以道	1688	○	○	○	○	○	집숙종 14/7/8 公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688. 7. 24. 再任, 1689. 閏3. 陳疏遞歸, 官至○○
378	姜世龜	1689	○	○	○	○	○	집숙종 15/3/25 忠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戸曹叅議로 1689. 윤3. 15. 來, 同年 7. 大臣이 아뢰어 遞, 禮曹叅議로 除授되어 上去, 官至參判
379	李議微		○					집숙종 15/7/3 忠洪道觀察使(除授)
380	李晉晚	1689	○	○	○	○	○	집숙종 15/7/19 忠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承旨에서 除授, 1689. 8. 21 到, 1690. 6. 親病辭遞, 9월 大司諫에 除授되어 上去, 官至參判
381	李麟微	1690	○	○	○	○	○	집숙종 16/9/1 忠清道觀察使(除授). 16/9/7 (辭朝) 同兼巡察使, 通政, 兵曹叅知에서 除授, 1690. 9. 11. 到, 1691. 6. 瓜遞, 官至判書
382	沈撥	1691	○	○	○	○	○	집숙종 17/윤7/9 忠清道觀察使(辭朝) 同兼巡察使, 通政, 1691. 6. 24 日政에 右承旨 에서 除授, 윤7. 11. 到界, 1692. 7. 瓜遞, 僉知中樞府事로 去, 官止監司
383	朴紳	1692	○	○	○	○	○	집숙종 18/6/22 忠清道觀察使(除授), 18/7/26(辭朝) 同兼巡察使, 通政, 1692. 8. 1. 到, 1693. 6. 李 泳查事呈 大臣이 啓하여 遞罷, 官止監司
384	姜銑		○					집숙종 19/6/5 忠清道觀察使(除授)
385	洪萬朝	1693	○	○	○	○	○	집숙종 19/6/10 忠清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693. 7. 22. 到, 同年 12. 14日政에 江華留守呈 移拜, 嘉善으로 陞 階, 1694. 1. 上去, 官至判敦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臣	國	臣	國	臣	
386	金 澜	1694	○	○	○	○	○	臣숙종 19/12/17 忠淸道觀察使(除授). 10/1/15(辭朝) 臣兼巡察使, 通政, 1694. 1. 18. 到, 同年 5. 宋奉朝賀告廟參疏事呈 江界에 遠竄, 官止 監司
387	金 構		○					臣숙종 20/4/23 忠淸道觀察使(除授)
388	李弘迪	1694	○	○	○	×	×	臣숙종 20/4/28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694. 5. 11. 判決事에 서來, 8. 6. 冬至副使呈 遞去
389	黃 欽	1694	○	○	○	○	○	臣숙종 20/7/4 忠淸道觀察使(除授), 20/8/6 (辭朝) 臣兼巡察使, 通政, 1694. 7. 5日政에 右承旨 에서 除授, 8. 9. 到界, 1695. 7. 瓜遞, 爰知 中樞府事呈 上京, 官至吏判
390	李 墉 (塾?)	1695	○	○	○	○	○	臣숙종 21/6/20 忠淸道觀察使(除授), 21/7/28(辭朝) 臣兼巡察使, 通政, 1695. 6. 都日政에 禮曹參 議에서 除授, 8. 3. 到, 1696. 3. 10. 擇擇單 子를 期限내에 보내지 못해 上의 特命으 로 龍職, 官至吏判
391	李善溥		○					臣숙종 22/3/11 忠淸道觀察使(除授)
392	徐文裕		○					臣숙종 22/3/15 忠淸道觀察使(除授)
393	洪受疇	1696	○	○	○	○	○	臣숙종 22/3/27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696. 3. 27日政에 左副承 旨에서 除授 5. 6. 到任, 12월 (수령)貶目 浮謗呈 備局에서 啓하여 罷, 1697. 1. 別歲 抄에 軍街에 서용되어 去, 官至折伯
394	趙亨期		○					臣숙종 22/12/21 忠淸道觀察使(除授)
395	閔鎮厚	1697	○	○	○	○	○	臣숙종 23/1/6 忠淸道觀察使(除授). 23/2/13 (辭朝), 臣숙종 23/윤3/5(遞職) 臣兼巡察使, 通政, 禮曹參議에서 除授, 1697. 2. 16. 到, 府夫人的 病이 重하여 朝廷에서 遞職을 命하였으나, 交龜하지 않다가 同年 윤3월 7일 순찰하여 忠州에 이르러 바로 上京, 官至判敦寧, 贈謚○○公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396	申厚命	1697	○	○	○	○	○	집숙종 23/윤3/5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嘉善, 1697. 윤3. 5. 刑曹參判에 서 除授, 同月 13日 到, 同年 10月 屠牛弛 禁事로 大臣이 啓하여 拿推, 減等削職하여 上去, 官至參判
397	金世翊		○					집숙종 23/9/28 忠淸道觀察使(除授)
498	李益壽		○					집숙종 23/10/13 忠淸道觀察使(除授)
499	朴明義		○					집숙종 23/10/17 忠淸道觀察使(除授)
400	任弘望	1697	○	○	○	○	○	집숙종 23/10/28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嘉善 1697. 10. 28. 右尹에서 除 授, 11. 10. 到, 1698. 瓜遞, 官至知樞
401	金盛迪	1698	○	○	○	○	○	집숙종 24/9/2 忠淸觀察使(除授), 5/3/9(卒) 監兼巡察使, 通政, 1698. 9. 2. 工曹參議에 서 除授, 10. 2. 到, 1699. 2. 5. 大司諫에 移拜 된 후 身病이 갑자기 重해져 3. 9. 卒逝
402	崔商翼	1699	○	○	○		×	집숙종 25/3/16 忠淸道觀察使(辭朝) 監兼巡察使, 通政, 1699. 2. 25. 工曹參議에 서 除授, 3. 19. 到, 同年 윤7. 6. 病으로 辭遞, 官止監司
403	黃欽	1699	○	○	○	○	○	집숙종 25/윤7/3 忠淸道觀察使(辭朝) 監兼巡察使, 通政, 1699. 6. 28日政에 除授, 閏7. 6. 到, 同年 10. 25. 父在喪, 再任
404	宋相琦	1699	○	○	○	○	○	집숙종 25/10/29 忠淸道觀察使(除授), 25/11/13(辭朝) 監兼巡察使, 通政, 1699. 10. 29. 左副承旨에 서 除授, 11. 15. 到, 1700. 7. 親病으로 辭 遞, 9月 大司諫으로 上去, 官至行吏判
405	李萬元		○					집숙종 26/7/13 忠淸道觀察使(除授)
406	李宏	1700	○	○	○	○	○	집숙종 26/9/27 忠淸道觀察使(辭朝) 監兼巡察使, 通政 1700. 9. 11. 楊州牧使에 서 除授, 10. 30. 到界, 12. 18. 宿疾豆 卒逝
407	南正重		○					집숙종 26/12/10 忠淸道觀察使(除授)
408	趙泰東		○					집숙종 26/12/20 忠淸道觀察使(除授)
409	趙泰裔		○					집숙종 27/1/10 忠淸道觀察使(除授), 27/1/24(辭職, 遷改)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410	李震休	1701	○	○	○	○	○	집숙종 27/1/25 忠淸觀察使(除授), 27/2/7(辭朝) 同兼巡察使, 嘉善, 1701. 2. 13. 到, 1702. 1. 瓜滿後 豪諫의 啓로 遷罷, 官至參判
411	趙泰壽	1702	○	墨削		○	○	집숙종 28/1/10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02. 2. 7. 到, 1703. 1. 瓜遞, 判決事豆 上去, 乙亥(1755)에 用大逆律追施孥籍
412	金演	1703	○	○	○	○	○	집숙종 28/11/25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嘉善, 左承旨에서 除授, 1703. 1. 15. 到, 同年 豊月 瓜遞, 刑曹參判 除授, 1704. 2. 15. 上去, 官至戶判
413	李善溥		○					집숙종 29/11/6 忠淸道監司(除授)
414	洪哲		○					집숙종 29/11/21 忠淸道觀察使(除授)
415	李德成	1704	○	○	○	○	○	집숙종 30/1/4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04. 1. 4日政 除授, 2. 15. 到, 5. 9. 卒逝
416	李濟	1704	○	○	○	○	○	집숙종 30/5/11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04. 5. 11日政에 兵曹參知에서 除授, 6. 15. 到, 藍浦李商賛受刑致死事로 그의 子 仁栽가 두 번 擊錚하여 10月에 上으로부터 特罷하라는 명이 있은 後 大臣이 陳達하여 還收하고 罷職하여 軍銜에 부침, 1705. 2. 上去, 官至西伯
417	李廷謙		○					집숙종 30/10/22 忠淸道觀察使(除授)
418	李旼(야 ?)	1704	○	○	○	○	○	집숙종 30/11/20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04. 11. 20. 東萊府使에서 除授, 1705. 2. 13. 朝辭를 생략하고 黃潤에 到界, 16日 錦江에 이르러 交龜, 8月病으로 辞遞, 9月 工曹參議豆 上去, 官至參判
419	朴泰恒	1705	○	○	○	○	○	집숙종 31/7/29 忠淸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05. 7. 29日政 除授, 10. 10. 到界, 1706. 7. 冬至副使豆 移拜, 9月上去, 官至戶判
420	李世弼		○					집숙종 32/7/12 忠淸道觀察使(除授)
421	李彥經	1706	○	○	○	○	○	집숙종 32/7/24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06. 7. 24. 除授, 9. 4. 到, 同年 11月 前任承旨時의 일로 罷職, 1707. 2. 上去, 官至大諫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422	尹成駿		○					집숙종 32/11/9 忠淸道觀察使(除授)
423	許 墾	1707	○	○	○	○	○	집숙종 33/1/3 忠淸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707. 1. 3 日政 除授, 2. 27. 到界, 12月 瓜遞, 敦知中樞府事에 下批, 1708. 2. 前任水原時事豆 罷職, 3月 上去, 官至監司
424	宋相琦		○					집숙종 33/12/25 忠淸道觀察使(除授)
425	李善溥	1708	○	○	○	○	○	집숙종 34/2/7 忠淸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708. 2. 7 日政에 左承旨에서 除授, 3. 4. 到, 12月 病으로 辭遞, 禮曹參議呈上去, 官至參判
426	孟萬澤	1708	○	○	○	○	○	집숙종 34/11/12 忠淸道觀察使(除授), 34/12/21(辭朝) 邑兼巡察使, 通政, 1708. 11. 12. 司直에서 除授, 12. 25. 到, 1709. 5. 12. 病 때문에 疏를 올려 遷, 6. 12. 大司諫으로 去, 官至監司
427	韓配夏	1709	○	○	○	○	○	집숙종 35/5/12 忠淸道觀察使(除授), 35/6/12(辭朝) 邑兼巡察使, 通政, 1709. 5. 11 日政에 右副承旨에서 除授, 6. 16. 到界, 1710. 4. 瓜遞後臺諫의 評을 만나 6. 8. 拿去 당함, 官至判書
428	洪重夏	1710	○	○	○	○	○	집숙종 36/4/28 忠淸道觀察使(除授), 36/6/8(辭朝) 邑兼巡察使, 通政, 1710. 4. 28 日政에 工曹參議에서 除授, 6. 11. 到, 1711. 5. 瓜遞, 官止監司
429	尹行校		○					집숙종 37/3/20 忠淸道觀察使(除授), 37/4/16(사직소, 遷職)
430	趙道彬	1711	○	○	○	○	○	집숙종 37/4/19 忠淸道觀察使(除授), 37/5/19(辭朝) 邑兼巡察使, 通政, 1711. 4. 19 日政에 同副承旨에서 除授, 5. 22. 到, 1712. 3. 瓜遞, 官至右相
431	韓配周	1712	○	○	○	○	○	집숙종 38/2/14 忠淸道觀察使(除授), 38/3/9(辭朝) 38/11/13(신병평계 상소) 邑兼巡察使, 通政, 1712. 2. 14 日政 除授, 3. 11. 到, 同年 11. 30. 卒逝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432	宋正明	1712	○	○	○	○	○	집숙종 38/12/3 忠淸道觀察使(除授), 38/12/22(辭朝) 同兼巡察使, 通政, 1712. 12. 3日政에 禮曹參議에서 除授, 同月 25. 到, 1713. 10. 瓜遞이나 因年으로 인해 大臣이 麥秋까지 仍任하기를 進達하여 1714. 5. 遞, 7月 禮曹參議로 除授되어 去, 官至留守
433	李晚堅		○					집숙종 39/8/7 忠淸道觀察使(除授)
434	沈壽賢	1714	○	○	○	○	○	집숙종 40/5/13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14. 5. 13日政에 襄陽府使에서 除授, 7. 16. 到, 1715. 6. 瓜遞하여僉知中樞府事로 去, 官至領相
435	李世勉	1715	○	○	○	○	○	집숙종 41/6/8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15. 6. 8日政에 安州牧使에서 除授, 8. 21. 到, 1716. 1. 病이 重하여 大臣이 遞職을 陳達하자 同年 7月 大司諫에 除授되어 9月 上去, 官至參判
436	金興慶		○					집숙종 42/1/28 忠淸觀察使(除授)
437	尹行敎		○					집숙종 42/윤3/4 忠淸觀察使(除授)
438	洪致中		○					집숙종 42/5/6 忠淸觀察使(除授)
439	李世最		○					집숙종 42/6/5 忠淸觀察使(除授)
440	權성(? 緒)	1716	○	○	○	○	○	집숙종 42/7/14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嘉善, 1716. 7. 14日政에 除授, 9. 9. 到, 病으로 陳疏하였으나 不允, 1717. 2. 大臣이 아되어 遞去, 官至判書
441	尹獻柱	1717	○	○	○	○	○	집숙종 43/2/8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嘉善, 1717. 2. 8日政에 同義禁에서 除授, 溫幸으로 인하여 同月 14. 溫宮으로 直到, 1718. 3. 瓜遞, 漢城府右尹에 除授되어 去, 官至判書
442	韓祉	1718	○	○	○	○	○	집숙종 44/2/26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18. 2. 26日政에 戸曹參議에서 除授, 4. 1. 到, 同年 8. 辭職上疏로 인하여 特敎削罷, 官止監司
443	金興慶	1718	○	○	○	○	○	집숙종 44/8/20 忠淸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嘉義, 1718. 8. 20日政에 刑曹叅判에서 除授, 9. 24. 到, 1719. 1. 大司諫으로 移拜되어 4月 上去, 官至領相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법	임	국	
444	李 崩		○					집숙종 45/1/11 忠淸道觀察使(除授)
445	權旼(엄 ?)	1719	○	○	○	○	○	집숙종 45/1/26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19. 1. 26日政에 除授, 4. 6. 到, 右道均田使를 兼, 淮瓜하여 1720. 8. 平安監司에 移拜되어 9月 上去, 官至判書
446	趙榮福	1720	○	○	○	○	○	집경종 0/7/5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0. 7. 5日政에 前承旨 에서 除授, 9. 1. 到, 1721. 3. 病으로 辭遞 後 工曹參議에 除授되어 6月 去, 官至留守
447	洪禹傳		○					집경종 1/3/18 忠淸監司(除授)
448	南道揆		○					집경종 1/4/4 忠淸監司(除授)
449	尹陽來	1721	○	○	○	○	○	집경종 1/4/28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1721. 4. 29日政에 刑曹參議에서 除授, 6. 11. 練主書寫官에서 嘉善으로 陞 階되어 26日 到, 윤2. 20. 清州倉穀奪掠罪 人等梟示不爲舉行事豆 拿問, 官至行兵判
450	李世瑾	1721	○	○	○	○	○	집경종 1/윤6/27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1. 윤6. 27日政에 前承 旨에서 除授, 7. 22. 到, 1722. 6. 24. 遷歸, 官至參判
451	徐命均		○					집경종 1/11/5 忠淸監司(除授)
452	李宜晚	1722	○	○	○	○	○	집경종 2/5/11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2. 5. 11日政에 刑曹叅 議에서 除授, 6. 27. 到, 1723. 5. 瓜遞, 官 至判尹
453	尹惠敎	1723	○	○	○	○	○	집경종 3/5/7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3. 5. 7日政에 前叅議 에서 除授, 6. 2. 到, 11. 27. 黃尙質偽 批 晚啓事豆 臺罷, 12月 還敎, 12月 17日政에 戶曹叅議豆 除授, 20日政에 大司諫으로 除 授, 1724. 1. 17. 上去, 官至吏判
454	權益寬	1723	○	墨削		○	○	집경종 3/12/6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3. 12. 6日政에 副應敎 에서 除授, 1724. 1. 20. 到界, 同年 9월 病 으로 陳達하여 遷職을 허락받은 後 10月 11日政에 禮曹參議에 제수, 同月 14日政에 大司諫에 제수, 同月 19日 上去, 乙亥 (1725) 用大逆律하여 追施孥籍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臣	國	召	誥	國	
455	宋寅明	1724	○	○	○	○	○	臣영조 0/9/2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1724. 9. 2 日政에 尚州牧使에서 除授, 10. 28. 到, 1725. 2. 親病으로 疏하여 遣職, 3. 27. 副護軍으로 遷歸, 官至左相
456	洪好人	1725	○	○	○	○	○	臣영조 1/2/13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1725. 2. 13. 前左承旨에서 除授, 3. 29. 到界, 9月 臺疏로 인해 大臣이 筵秦하여 遣職을 허락, 16日 兵曹叅議에 除授되어 同月 27日 上去, 官至判尹
457	申昉		○					臣영조 1/9/4 忠淸監司(除授)-미부임
458	洪龍祚	1725	○	○	○	○	○	臣영조 1/9/11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725. 9. 11 日政에 兵曹叅知에서 除授, 同月 30日 瓜遞大臣省掃以不爲出待事 1726. 10. 1. 陳割하여 罷職, 13日 敎用, 11月 12日 以曹參議 除授 12月 3日 交龜
459	金礪	1726	○	○	○	○	○	臣영조 2/9/2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726. 9. 3 日政에 水原府使에서 除授, 12. 3. 到, 1727. 4. 情勢特命으로 許遞, 同年 9. 20. 上去, 官止監司
460	李重協		○					臣영조 3/4/18 忠淸監司(除授)
461	趙正萬		○					臣영조 3/6/10 忠淸監司(除授)
462	權詹	1727	○	墨削	○	○		臣영조 3/8/5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727. 8. 5 日政에 除授, 9. 20. 到, 病으로 陳疏하여 還送, 1728. 3. 18. 大臣이 陳達하여 遣職, 謀逆으로 杖斃
463	徐命淵	1728	○	○	○	○	○	臣영조 4/2/18 忠淸道觀察使(除授), 4/3/15(辭朝) 臣兼巡察使, 通政, 1728. 2. 18 日政에 右承旨에서 除授, 3. 18. 到, 起兵討賊事에 中路에서 數日 머물르자, 이를 筵臣이 陳白하여 이를 逃路作行했다고 하여 同月 27日 就拿
464	權朴(?)	1728	○	○	○	○	○	臣영조 4/3/22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都巡察使, 正憲, 1728. 3. 23 日政에 按撫使에서 제午, 同月 30日 韓山으로부터 朝辭를 생략하고 到, 同年 9月 病患으로 인해 大臣이 陳達하여 遣職, 10. 16. 交龜, 再任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령	국	
465	金始炯 (炯)	1728	○	○	○	○	○	閏영조 4/9/19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8. 9. 19 日政에 前承旨 에서 除授, 10. 14. 到, 瓜遞, 1729. 10. 9. 工曹叅議에 除授, 11. 20. 交龜, 官至行兵 判
466	閔應洙		○					閏영조 5/8/19 忠淸監司(除授)
467	李廷濟		○					閏영조 5/9/4 忠淸監司(除授-강등), 5/9/15 (罷職)
468	李聖龍	1729	○	○	○	○	○	閏영조 5/9/20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29. 9. 20 日政에 前承旨 에서 除授, 11. 21. 到, 1730. 12. 10. 瓜滿 交龜, 官至判書
469	申昉	1730	○	○	○	○	○	閏영조 6/10/13 忠淸道觀察使(除授), 7/8/26 (免職) 副兼巡察使, 通政, 1730. 10. 13 日政에 除授, 12. 10. 到, 1731. 7. 嘉善으로 陞階, 8月 遞職, 9. 24. 漢城府右尹으로 上去, 官至吏 叅
470	李春재		○					閏영조 7/8/26 忠淸監司(除授)
471	李衡佐	1731	○	○	○	○	○	閏영조 7/9/12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1731. 9. 除授, 壬子(1732) 春賑 을 거치면서 瓜滿後 特敎豆 仍任하고, 丕 癸丑(1733) 春賑에 再瓜를 報告했으나 遷 歸, 壬子即 五代祖定獻公按此藩之年感而識 之, 官至右尹
472	鄭彥燮	1733	○	○	○	○	○	閏영조 9/6/11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33. 6. 16 日政에 除授, 7. 14. 辭朝, 同月 19 日 到, 同年 11月 臺啓를 당하고, 丕 大臣이 陳達하여 遷罷, 1734. 2. 斂用하여 軍職에 부침, 3月 交龜, 官至 參判
473	李壽沆	1734	○	○	○	○	○	閏영조 10/1/4 忠淸監司(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734. 1. 4 日政에 慶州府 尹에서 除授, 3. 21. 辭朝, 同月 24 日 到界, 12月 瓜年을 報告했으나 1735. 1. 13. 日政 에 仍任을 下批, 3月 遷葬을 陳疏하여 遷 職을 허가받은 後, 各邑 舊還上分數未捧으 로 인해 5月 就拿, 官至都憲
474	黃最		○					閏영조 11/1/6 忠淸道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475	柳 優	1735	○	○	○	○	○	집영조 11/4/1 忠清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35. 4. 1日政에 水原府 使에서 除授, 19日 辭朝, 同月 25日 到界, 10月 遭人言 大臣의 陳達豆 인해 許遞되어 어 1736. 1. 15. 交龜, 官至判書
476	宋秀衡		○					집영조 11/10/27 公洪道觀察使(除授)
477	李宗白	1735	○	○	○	○	○	집영조 11/12/7 公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35. 12. 10日政에 同副 承旨에서 除授, 1736. 1. 11. 辞朝, 15日 到 界, 1737. 2. 遷遞, 3月 12日政에 大司諫 除授, 5月 24日 交龜, 官至吏判
478	李周鎮	1737	○	○	○	○	○	집영조 13/2/13 公洪道監司(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37. 2. 13日政에 寧邊府 使에서 除授, 5月 19日 辞朝, 24日 到界, 閏9月 疾秦遞職, 10月 3日政에 大司諫 除 授, 11月 1日 交龜, 官至吏判
479	李普赫	1737	○	○	○	○	○	집영조 13/8/29 公洪監司(除授), 13/10/27 (辭朝) 同兼巡察使, 嘉善, 1737. 閏9. 29日政에 除授, 10月 27日 辞朝, 11月 1日 到界, 1738年 7 月 業務을 疾하고 遷職을 乞하여 大臣이 陳達하여 罷職, 同年 8月 14日 交龜, 官至 判敦寧 謂忠貞,
480	尹敬龍	1738	○	○	○	○	○	집영조 14/7/12 公洪監司(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38. 7. 12日政에 除授, 8 月 10日 辞朝, 14日 到界, 1739. 8. 11. 清 安逆囚徑先上送事로 罷職, 同月 14日 交龜 就拿
481	金聖運	1739	○	○	○	×	○	집영조 15/8/11 公洪監司(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39. 8. 11. 未赴任洪州牧 使에서 除授, 同月 12日 辞朝, 14日 到界, 天安에서 交龜하고 바로 西原에 이르러 按獄, 1740. 5. 公州民狀上聞事로 遷職, 官 至大諫
482	趙榮國	1740	○	○	○	○	○	집영조 16/5/26 公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40. 5. 26日政에 茂朱府 使에서 除授, 朝辭를 생략하고 閏6月 13日 連山에 到界, 15日 公州交龜, 1741. 5. 病 으로 辞遞, 7月 26日 上去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증	임	국	
483	金尙翼	1741	○	○	○	○	○	집영조 17/7/2 公洪監司(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41. 7. 2日政에 除授, 同月 25日 辞朝, 29日 到界, 1742. 4. 病으로 陳疏하자 大臣이 陳達하여 許遞, 5月 大司諫에 除授, 7月 22日 交龜
484	李宗城	1741	○	○	○	○	○	집영조 18/4/19 公洪監司(除授) 同兼巡察使, 嘉善, 1741. 4. 20日政에 除授, 7月 19日 辞朝, 22日 到界, 1742. 7. 司憲府大司憲에 除授, 9月 8日 交龜, 官至領相
485	李德重	1743	○	○	○	○	○	집영조 19/7/6 公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43. 7, 6日政에 除授, 9月 4日 辞朝, 8日 到界, 1745. 5. 瓜遞, 官至副學
486	趙載浩	1745	○	○	○	○	○	집영조 21/5/15 公洪道觀察使(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45. 5. 17日政에 除授, 6月 13日 辞朝, 17日 到界, 同年 9月 8日 吏曹參判에 特除, 同月 15日 仍任事 下敎, 1746. 3. 17. 備局有司堂上差下, 閏3月 20日政에 大司成 除授, 4月 11日 交龜, 官至右相
487	洪鳳漢	1746	○	○	○	○	○	집영조 22/3/25 公洪監司(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46. 3. 25日政에 楊州牧使에서 除授, 同年 4月 8日 辞朝, 11日 到界, 同年 9月 17日政에 敦寧都正 除授, 同年 11月 26日 交龜, 官至領相
488	徐宗伋	1746	○	○	○	○	○	집영조 22/9/24 公洪監司(除授) 同兼都巡察使, 資憲, 1746. 9. 24日政에 除授, 同年 11月 22日 辞朝, 26日 到界, 1748. 2. 29日政에 吏曹判書에 移拜, 同年 4月 29日 交龜, 官至奉朝賀
489	李昌誼	1747	○	○	○	○	○	집영조 23/3/7 忠淸監司(除授) 同兼巡察使, 通政, 1747. 3. 7日政에 除授, 同年 4月 26日 辞朝, 29日 到界, 1749. 8. 13. 親患으로 辭遞, 同月 19日政에 大司諫에 除授, 9月 27日 交龜, 官至左相 謐翼獻
490	李日躋	1748	○	○	○	○	○	집영조 24/8/16 忠淸監司(除授) 同兼巡察使, 嘉善, 1748. 8. 16日政에 除授, 同年 9月 24日 辞朝, 27日 到界, 1750. 7. 17. 辭遞, 同年 8月 20日 交龜, 官至參判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증	임	국	
491	洪啓禧	1749	○	墨削	○	○		집영조 25/7/18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749. 7. 18日政에 除授, 8月 16日 辞朝, 20日 到界, 1750. 5. 29 因大臣割還差籌司掌上 7. 15. 交龜
492	李益輔	1750	○	○	○	○	○	집영조 26/5/29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50. 5. 29日政에 除授, 7. 11. 辞朝, 15日 到界, 1751. 閏5. 5. 大臣이 許遞를 進達하였으나, 6. 16. 特敎로 仍任, 11月 24日 許遞, 1752. 1. 27. 交龜, 官至判書
493	徐命臣		○					집영조 27/윤5/2 忠淸道觀察使(除授)
494	金時繁	1751	○	○	○	○	○	집영조 27/12/2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51. 12. 3日政에 除授, 1752. 1. 24. 辞朝, 同月 27日 到界, 1754. 2. 25. 瓜遞, 3. 17日政에 大司諫에 除拜, 4 月 7日 交龜, 官止副學
495	趙明鼎	1754	○	○	○	○	○	집영조 30/2/25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54. 2. 25日政에 除授, 4 月 3日 辞朝, 同月 7日 到界, 1755年 12月 報瓜後 1756. 2. 3. 朝令前還上停捧事로 拿 命이 있어서 同月 16日 交龜, 官至判書
496	趙噲	1756	○	○	○	○	○	집영조 32/2/4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56. 2. 4日政에 左承旨 에서 除授, 同月 12日 辞朝, 16日 到界, 同 年 10月 20日 放末放狀達中犯酒事到配罪 人置諸稟秩特罷, 官至判書
497	金陽澤	1756	○	墨削	○	○		집영조 32/10/26 忠淸監司(辭朝) 副兼巡察使, 通政, 1756. 10. 20日政에 禮曹 參議에서 特除, 11月 17日 辞朝, 同月 22 日 到界, 1757. 1. 16. 災結比摠外公頃條擅 給事로 拿命이 있어서 3月 1日 交龜, 官至 領相
498	金尙喆	1757	○	墨削	○	○		집영조 33/1/16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57. 1. 16日政에 除授, 2 月 26日 辞朝, 3月 1日 到界, 1759年 2月 瓜遞이나 査陳事로 特敎 仍任, 同年 11月 8日 上으로부터 許遞하여 大司諫으로 移 拜, 1760. 1. 26. 交龜, 官至領相
499	李秀得		○					집영조 35/2/3 忠淸監司(除授)
500	李思觀		○					집영조 35/11/8 忠淸監司(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501	具允明	1760	○	○	○	○	○	집영조 36/1/6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嘉義, 1760. 1. 6日政에 除授, 同月 22日 辭朝, 26日 到界, 1761. 10. 7. 禮曹叅判으로 移拜, 11月 20日 交龜
502	尹東暹	1761	○	○	○	○	○	집영조 37/10/7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嘉善, 1761. 10. 7日政에 都承旨에서 除授, 11月 17日 辭朝, 20日 到界, 衙祿公須位落漏實摠添入收租事豆 1762. 5. 8. 惠堂에서 陳達하고 豪諫에서 論啓하여 遷罷, 6月 2日 大臣이 陳達하여 仍任, 7月 2日 豪啓로 遷罷, 同月 24日 交龜
503	閔百興		○					閔영조 38/5/8 忠淸監司(除授), 38/6/2(遞職)
504	李思觀	1762	○	○	○	○	○	閔영조 38/7/3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762. 7. 3日政에 楊州牧使에서 除授, 同月 8日 謝恩, 18日 辭朝, 24日 到界, 1763. 12. 20. 辭遞, 1764. 1. 4日政에 兵曹叅判으로 陞拜, 同月 22日 交龜, 官至右相
505	尹東昇	1763	○	○	○	○	○	閔영조 39/12/20 忠淸監司(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763. 12. 20日政에 廣州府尹에서 除授, 同月 26日 謝恩, 1764. 1. 18. 辭朝, 22. 到界, 1765. 5. 豪諫의 上疏로 削職, 同月 28日 交龜, 官至參判
506	具允鉉	1765	○	○	○	○	○	閔영조 41/5/5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嘉善, 1765. 5. 5日政에 下批, 同月 12日 謝恩, 25日 辭朝, 28日 到界, 同年 12月 10日政에 大司諫에 移拜, 1766. 1. 27. 交龜
507	李重祐(祐)	1765	○	○	○	○	○	閔영조 41/12/16 忠淸道觀察使(除授) 監兼巡察使, 通政, 1765. 12. 16日政에 下批, 1766. 1. 25. 辭朝, 27. 到界, 1767. 11. 爐遞, 12月 22日 交龜, 官至判書
508	李惟秀	1767	○	○	○	○	○	閔영조 43/11/14/ 忠淸監司(除授), 43/12/19(辭朝) 監兼巡察使, 嘉義, 1767. 12. 14日政에 下批, 12月 19日 辭朝, 22日 到界, 1768. 10. 11. 分等狀啓稽滯事豆 上으로부터 特罷, 11月 8日 交龜, 官至判書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臣	國	臣	國	臣	
509	洪樂純	1768	○	墨削	○	○		臣영조 44/10/10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768. 10. 10. 吏曹叅議에 서 特除, 11月 4日 辭朝, 8日 到界, 1770. 4. 23. 堤川新昌民山訟擊錚事로 罷職
510	元義孫	1770		○	○	○	○	臣兼巡察使, 通政, 1770. 4. 24. 特除, 卽日辭 朝, 5月 1日 到界, 同年 11月 26日 因傳教 發送禁軍到成勸以無馬牌草料不給驛馬事自 上施以察訪拿處道臣不敍之典
511	權 善	1770	○	○	○	○	○	臣영조 47/6/4 忠淸監司(在任) 臣兼巡察使, 嘉善, 1770. 11. 27日政에 下批, 12月 19日 辭朝, 24日 到界, 1771. 7. 16. 淸安民山訟擊錚事로 不敍之典을 特施, 8月 12日 交龜
512	閔百奮	1771	○	○	○	○	○	臣영조 47/7/12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前承旨에서 除授, 1771. 8. 12. 到界, 1772. 5. 15. 特遞하여 軍銜에 부 침, 30日 交龜
513	宋載經	1772	○	○	○	○	○	臣영조 48/9/7 忠淸監司(罷職) 臣兼巡察使, 通政, 1772. 5. 15日政에 下批, 同月 26日 辭朝, 30日 到界, 9月 7日 各邑 守令還上加分事豆 遞職, 17日 交龜
514	尹東哲	1772	○	○	○	○	○	臣영조 48/12/14 忠淸監司(在任) 臣兼巡察使, 嘉善, 1772. 9. 7日政에 淸州牧 使에 特除, 朝辭를 생략하고 同月 17日 到 任, 1773. 4. 10. 各邑推恩老人初抄見漏追 啓數多事豆 不敍之典을 施行
515	安兼濟	1773	○	○	○	○	○	臣영조 49/4/10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773. 4. 10日政에 下批, 5 月 2日 辭朝, 7日 到界, 1775. 1. 9. 平澤縣 黃口簽丁으로 不飭道臣不敍之命이 있었음.
516	金致恭	1775		○	○	○	○	臣兼巡察使, 通政, 1775. 1. 9日政에 下批, 同 月 24日 辭朝, 28日 到界, 6月 23日 洪州 民山訟擊鼓事로 尤別히 不敍之典을 시행 함. 7月 15日 交龜
517	閔百奮	1775	○	○	○	○	○	臣영조 51/6/23 忠淸監司(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都承旨에서 特別히 除授 됨, 1775. 7. 13. 到界, 1776. 5. 11. 上疏하 여 辭遞, 6月 6日 交龜, 再任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설	국	증	임	국	
518	徐有臣	1776	○	○	○	○	○	설정조 0/5/11 忠淸道觀察使(除授) 國兼巡察使, 通政 南陽府使에서 1776. 5. 11 日政에 옮겨 除授, 6月 4日 辭朝, 6日 到界, 10月 8日 尤其邑還穀代捧狀請事로 特敎罷職
519	徐有隣	1776	○	○	○	○	○	설정조 0/10/9 忠淸道觀察使(除授), 1/12/10 洪忠道觀察使(在任) ※ 설정조 1/8/28 忠淸道→公忠道 ※ 설정조 2/7/30 公忠道→洪忠道 國兼巡察使, 嘉義, 1776. 10. 9日政에 下批, 同月 24日 辭朝, 28日 到界, 1777. 6. 16. 陳章하여 22일 遷職, 8月 28日 交龜
520	李命楨	1778	○	○	○	○	○	설정조 2/6/23 公忠道觀察使(除授), 2/8/24 洪忠道觀察使(辭朝), 3/3/27 忠淸道觀察使 (在任) 國兼巡察使, 嘉善, 1778. 6. 23. 日政에 義州 府尹에서 移拜, 8月 24日 辭朝, 28日 到界, 1779. 6. 27. 陳章하여 遷職, 8. 17. 交龜
521	李明中		○					설정조 3/6/28 洪忠道觀察使(除授)
522	李秉鼎	1779	○	○	○	○	○	설정조 3/7/20 忠淸道觀察使(除授), 3/10/13 洪忠道觀察使(在任) 4/3/3 洪忠道觀察使 (罷職) 國兼巡察使, 嘉善, 1779. 7. 20日政에 禮曹參 判에서 除授, 8月 15日 辭朝, 17日 到界, 1780. 3. 3. 再疏하여 國榮을 墓削하기를 논하니 罷職不敎를 特敎함.
523	姜潤		○					설정조 4/3/4 洪忠道觀察使(除授), 4/3/27(遞 差)
524	沈頤之	1780	○	○	○	○	○	설정조 4/3/27 洪忠道觀察使(除授) 國兼巡察使, 嘉善, 1780. 3. 27日政에 慶州府 尹에서 移拜, 朝辭를 생략하고 4月 15日 到任, 9月 27日 忠州陞戶私賤冒人事를 都 監이 草記하여 罷職, 10月 9日 交龜
525	洪秉纘	1780	○	○	○	○	○	설정조 4/9/29 洪忠道觀察使(除授) 國兼巡察使, 通政, 1780. 9. 29日政에 廣州府 尹에서 移拜, 10月 1日 辭朝, 9日 到界, 1781年 3月 30日 金悌行割占漁箭事 査啓 曲護事로 削版拿問之命이 있어서 4月 3日 交龜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臣	國	召	印	國	
526	李崇祐 (粘-실 록)	1781	○	○	○	○	○	臣정조 5/3/30 洪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781. 3. 30日政에 下批, 同日 辭朝, 6月 3日 到任, 7月 26日 忠州牧 使가 國忌日에 挾妓張樂하였으나 살피서 아뢰지 않았다는 대간의 탄핵이 있고, 大 臣이 篡秦하여 遞職을 허, 6月 3日 交龜
527	洪秀輔	1782	○	○	○	○	○	臣정조 6/5/26 洪忠道觀察使(除授), 6/7/20 忠淸監司(治罪) 臣兼巡察使, 嘉善, 1782. 5. 27日政에 下批, 29日 辭朝, 6月 3日 到任, 7月 20日 大逆 不道罪人 汎徵上疏上送狀啓不以密啓事呈 臺啓拿罷하여 22日 交龜
528	趙준(?)	1782	○	○	○	○	○	臣정조 6/7/20 洪忠道觀察使(除授) 臣兼都巡察使, 正憲, 1782. 7. 20日政에 下批, 同日 辭朝, 22日 到任, 8月 17日 大臣이 筵秦하여 許遞, 25日 交龜
529	金文淳	1782	○	○	○	○	○	臣정조 6/8/18 洪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782. 8. 18日政에 下批, 22日 辭朝, 25日 到任, 1783. 11. 16. 陳章 하여 遞職, 同月 交龜
530	申大升	1783	○	○	○	○	○	臣정조 7/11/17 洪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783. 11. 17日政에 下批, 22日 辭朝, 27日 到界, 1784. 7. 24. 陳章 하여 遞職, 8月 13日 交龜
531	沈豐之	1784	○	○	○	○	○	臣정조 8/7/24 洪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784. 7. 24日政에 下批, 8 月 10日 辭朝, 同月 13日 到界, 1785. 3. 28. 推覈事呈 罷職, 4月 22日 交龜
532	李得臣	1785	○	○	○	○	○	臣정조 9/3/28 洪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785. 3. 28日政에 下批, 4 月 18日 辭朝, 22日 到界, 1786. 2. 12. 母 在喪
533	金光默	1786	○	○	○	○	○	臣정조 10/2/13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786. 2. 13日政에 下批, 14日 辭朝, 17日 到界, 1787. 5. 8日政에 慶尙監司呈 移拜, 6月 6日 交龜
534	尹尚東	1787	○	○	○	○	○	臣정조 11/5/7 忠淸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787. 5. 8日政에 下批, 6 月 3日 辭朝, 5日 到界, 9月 26日 分等狀 啓田稅木代錢陳請事呈 罷職, 10月 10日 交龜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군	군	국	
535	洪 榮	1787	○	○	○	○	○	집정조 11/9/28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87. 9. 28日政에 下批, 10月 6日 辭朝, 10日 到界, 1789. 1. 17日 政에 慶尙監司豆 移拜, 2月 6日 交龜
536	權 磨	1789	○	○	○	○	○	집정조 13/1/17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789. 1. 17日政에 下批, 2 月 2日 辭朝, 4日 到界, 1790. 2. 1. 結城縣 監秘報崔德敎告前縣監李榮運等事密啓矣以 曾經朝官追捕罷職, 同月 18日 交龜
537	鄭存中	1790	○	○	○	○	○	집정조 14/2/1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790. 2. 1日政에 下批, 15 日 辭朝, 18日 到界, 同年 7月 嘉義, 12月 資憲知中樞府事豆 特陞, 1791. 1. 25. 交龜
538	李願祥		○					집정조 14/12/24 忠淸道觀察使(除授)
539	朴宗岳	1790	○	○		○	○	집정조 14/12/25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資憲, 1790. 12. 28日政에 下批, 1791. 1. 22. 辭朝, 25日 到界, 1792. 1. 21 日政에 議政府右議政에 拜
540	朴天衡	1792	○	○		○	○	집정조 16/1/21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通政, 1792. 1. 21日政에 下批, 當日 辭朝, 24日 到界, 同年 4月 28日 嶺南 漕船致敗事豆 罷職
541	金履翼		○					집정조 16/4/28 忠淸道觀察使(除授)
542	徐榮輔		○					집정조 16/5/2 忠淸道觀察使(除授, 遷職)
543	李亨元	1792	○	○		○	○	집정조 16/5/2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792. 5. 3日政에 下批, 12 日 辭朝, 18日 到界, 1795. 閏2. 陳章하여 遞, 6月 7日 交龜
544	曹允大		○					집정조 19/2/25 忠淸道觀察使(除授)
545	柳 無	1795	○	○		○	○	집정조 19/5/24 忠淸道觀察使(除授) 副兼巡察使, 嘉善, 1795. 5. 24日政에 下批, 6 月 2日 辭朝, 6日 到界, 12月 庶仁藍浦兩 邑整理穀不善分俵捧上而不爲摘發論啓事量 繡啓로 인해 不敍之命이 있음
×	金聖運					○	○	집영조 15/8/11 公洪監司(除授) 집영조 16/5/23 忠淸監司(削奪)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법	임	국	
546	李鼎運	1795	○	○		○	○	집정조 19/12/20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嘉善, 1795. 12. 20日政에 下批, 24日 辭朝, 28日 到界, 1796. 3. 6. 金吾前 任事豆 罷職, 直配康津
547	林濟遠	1796	○	○		○	○	집정조 20/3/6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嘉善, 1796. 3. 6日政에 下批, 當 日 辭朝, 9日 到界, 1797. 5. 3. 身病으로 大臣이 筵秦하여 遣, 17日 交龜
548	徐美修	1797	○	○		○	○	집정조 21/5/3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797. 5. 3日政에 下批, 12 日 辭朝, 14日 平澤到界, 閏6月 17日 遭內 賤
549	韓用和	1797	○	○		○	○	집정조 21/6/19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797. 閏6. 18日政에 下批, 19日 辭朝, 24日 到界, 1798. 7. 2. 陳章하여 5日 遞職, 10日 天安交龜
550	李泰永	1798	○	○		○	○	집정조 22/7/4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嘉善, 1798. 7. 4日政에 下批, 6 日 辭朝, 9日 穰山到界, 1799. 11. 18日政 에 平安監司로 移拜
551	金履永	1799	○	○		○	○	집정조 23/11/17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799. 11. 17日政에 下批, 22日 辭朝, 26日 穰山到界, 1800. 8. 4日政 에 慶尚監司로 移拜, 13日 公州交龜
552	尹光顏	1800	○	○		○	○	집순조 0/8/4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800. 8. 4日政에 下批, 9 日 辭朝, 12日 穰山到界, 1802. 1. 26. 陳章 하여 2月 10日 遣
553	曹錫中	1802	○	○		○	○	집순조 2/2/10 忠清道觀察使(除授) 邑兼巡察使, 通政, 1802. 2. 10日政에 春川府 使에서 移拜, 3月 1日 辭朝, 4日 穰山到界, 1803. 7. 10. 陳章하여 13日 遣
554	金啓洛		○					집순조 3/7/13 忠清道觀察使(除授), 3/8/7(遞 差)
555	閔耆顯	1803	○	○		○	○	집순조 3/8/7 忠清道觀察使(除授) ※ 집순조 4/10/27 忠清道→公忠道 邑兼巡察使, 通政, 1803. 8. 7. 下批, 同月 22 日 到界, 1805. 3. 6. 上疏呈 辭遞하여 大 司諫에 除授, 同月 27日 交龜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臣	國	召	國	臣	
556	朴峩壽	1805	○	○	○	○	○	臣순조 5/3/6 公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805. 3. 6日政에 下批, 25 日 辭朝, 27日 到界, 1806. 4. 8. 陳章하여 12日 蒙遞, 20日 陞資, 27日政에 刑曹參判 에 拜, 5月 6日 交龜
557	趙德潤	1806	○	○	○	○	○	臣순조 6/4/13 公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806. 4. 12日政에 下批, 5 月 2日 辭朝, 同月 6日 到界, 1807. 11. 12. 孝烈查啓時禮曹元關判付中誤書字不爲往復 擅改事呈 政院에서 啓하여 罷
558	鄭晚錫	1807	○	○	○	○	○	臣순조 7/11/21 公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嘉善, 1807. 11. 21. 下批, 25日 辭朝, 29日 到界, 1808年 4月 16日政에 嶺 伯으로 拜, 5月 4日 公州客館交龜
559	金著根	1808	○	○	○	○	○	臣순조 9/4/16 公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808. 4. 16日政에 下批, 5 月 4日 交龜, 1810. 2. 9. 再疎하여 蒙遞
560	徐有聞	1811	○	○	○	○	○	臣순조 11/2/12 公忠道觀察使(除授) 臣兼巡察使, 通政, 1811. 2. 12日政에 下批, 22日 辭朝, 25日 到界, 閏3月 7日 遭外艱
561	元在明	1811	○	○	○	○	○	臣순조 11/윤3/8 公忠道觀察使(除授) ※ 臨순조 13/1/2 公忠道→忠清道 臣兼巡察使, 通政, 1811. 閏3. 8日政에 下批, 當日 辭朝, 15日 到界, 1813. 2. 9. 大臣이 筵奉하여 賑恤을 마치기까지 仍任其事 하 여, 5月 25日 蒙遞, 7月 16日 公州客舍交龜
562	趙貞喆	1813	○		○	○	○	臣순조 13/5/27 忠清道觀察使(除授)
563	洪奭周	1815	○		○	○	○	臣순조 15/7/4 忠清道觀察使(除授)
564	權常愼	1817	○		○	○	○	臣순조 17/2/13 忠清道觀察使(除授)
565	朴宗京	1819	○		○	○	○	臣순조 19/2/17 公清道觀察使(除授)
566	李錫奎	1821	○		○	○	○	臣순조 21/1/29 公清道觀察使(除授)
567	趙經鎮	1823	○		○	○	○	臣순조 23/4/3 公清道觀察使(除授)
568	金學淳	1825	○		○	○	○	臣순조 25/3/11 公清道觀察使(除授) 臣순조 26/8/14(辭職)
569	徐俊輔	1826	○		○	○	○	臣순조 26/8/14 忠清監司(除授) ※ 臨순조 26/10/27 忠清道→公忠道
570	朴晦壽	1827	○		○	○	○	臣순조 27/12/7 公忠道觀察使(除授)

	성 명	제임 시기	관련 근거					비 고 (근거)
			집	군	법	령	국	
571	朴齊聞	1829	○		○	○	집순조 29/11/19	公忠道觀察使(除授)
572	李元默 (미부 임)	○					집순조 31/4/20	公忠道觀察使(除授), 집순조 31/5/10(遞職)
573	洪義瑾	1831	○		○	○	집순조 31/5/10	公忠道觀察使(除授)
574	趙秉鉉	1833	○		○	○	집순조 33/4/12	公忠道觀察使(除授)
575	金在三	1834	○		○	○	집순조 34/10/21	公忠道觀察使(特敎除授)
576	沈宜臣	1836	○		○	○	집현종 2/1/6	忠清道觀察使(除授)
577	趙冀永	1837	○		○	○	집현종 3/11/18	忠清道觀察使(除授)
578	金英淳	1839	○		○	○	집현종 5/10/25	忠清道觀察使(除授)
579	金鼎均	1841	○		○	○	집현종 7/10/7	忠清道觀察使(除授)
580	姜時永	1843	○		○	○	집현종 9/10/8	忠清道觀察使(除授)
581	趙雲澈	1845	○		○	○	집현종 11/10/1	忠清道觀察使(除授)
582	金洙根	1847	○		○	○	집현종 13/2/17	忠清道觀察使(除授)
583	趙得林	1848	○		○	○	집현종 14/11/18	忠清道觀察使(除授)
584	洪說謨	1850	○		○	○	집철종 1/11/1	忠清道觀察使(除授)
585	李根友	1852	○		○	○	집철종 3/1/11	忠清道觀察使(除授)
586	沈宜冕	1853	○		○	○	집철종 4/1/10	忠清道觀察使(除授)
587	韓正教	1854	○		○	○	집철종 6/12/23	前 忠清監司(召見)
588	李謙在	1855	○		○	○	집철종 6/12/17	忠清監司(辭朝)
589	金應根	1857	○		○	○	집철종 8/10/1	忠清道觀察使(除授)
590	沈承澤	1859	○			○	집철종 10/11/14	忠清道觀察使(除授)
591	趙獻永	1860	○			○	집철종 12/1/2	忠清道觀察使(除授)
592	俞章煥	1861	○			○	집철종 12/11/25	忠清道觀察使(除授)
593	李秉文	1863	○			○	집철종 14/8/15	公忠道觀察使(除授)
594	申 檻	1865	○			○	집고종 1/8/23	公忠道觀察使(除授)
595	閔致庠	1868	○			○	집고종 4/1/28	公忠道觀察使(除授)
596	金炳始	1872	○			○	집고종 7/윤10/13	公忠道觀察使(除授)
597	成彝鎬	1874	○			○	집고종 10/1/22	忠清道觀察使(除授)
598	沈舜澤	1875	○			○	집고종 11/10/23	忠清道觀察使(除授)
599	趙秉式	1876	○			○	집고종 13/3/15	忠清道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군	군	국	
600	李明應	1878	○			○	집고종 15/2/4 忠淸道觀察使(除授)	
601	李承五	1881	○			○	집고종 17/11/14 忠淸道觀察使(除授)	
602	南一祐	1882	○			○	집고종 19/4/23 忠淸道觀察使(除授)	
603	朴齊寬	1884	○			○	집고종 21/1/14 忠淸道觀察使(除授)	
604	沈相薰	1885	○			○	집고종 22/3/4 忠淸監司(除授)	
605	閔泳商	1887	○			○	집고종 23/3/28 忠淸道觀察使(除授)	
606	李憲植	1889	○			○	집고종 26/4/20 忠淸道觀察使(除授)	
607	宋世憲	1890	○			○	집고종 27/3/27 忠淸道觀察使(除授)	
608	李耕植		○			○	집고종 28/9/19 忠淸道觀察使(除授)	
609	趙秉式	1892	○			○	집고종 28/10/22 忠淸道觀察使(除授)	
610	趙秉鎬	1893 /1894	○			○	집고종 30/3/19 忠淸道觀察使(除授)	
611	李尗永	1894	○			○	집고종 31/4/25 忠淸道觀察使(除授)	
612	朴齊純	1894	○			○	집고종 31/7/18 忠淸道觀察使(除授)	
613	徐晚輔		○			○	집고종 32/5/29 公州府觀察使(除授)	
614	李勝宇		○			○	집고종 32/5/29 洪州府觀察使(除授)	
615	吳益泳		○			○	집고종 32/7/19 公州府觀察使(除授)	
616	李琮遠	1895	○			○	집고종 32/9/4 公州府觀察使(除授)	
617	金商惠		○			○	집고종 33/2/28 洪州府觀察使(除授) ※ 고종 33/1/1부터 양력 사용	
618	李乾夏	1895	○			○	집고종 33/4/2 公州府觀察使(除授)	
619	尹昌燮		○			○	집고종 33/5/28 洪州府觀察使(除授)	
620	李乾夏		○			○	집고종 33/8/5 忠淸南道觀察使(除授) ※ 고종 33/8/4 23부→13도	
621	鄭周永	1897	○			○	집고종 35/4/14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2	金永憲	1898	○			○	집고종 36/7/20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3	朴容大	1900	○			○	집고종 37/7/25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4	金完秀	1901	○			○	집고종 38/2/18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5	李根澨	1901	○			○	집고종 38/10/20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6	趙定熙	1902	○			○	집고종 39/2/1 忠淸南道觀察使(除授)	

	성명	제임시기	관련 근거					비고(근거)
			집	군	군	군	국	
627	洪承憲	1902	○			○	집고종 39/7/9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8	朱錫冕		○				집고종 40/7/17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29	鄭寅昇	1903	○			○	집고종 40/8/16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30	李道宰		○				집고종 41/2/22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31	趙漢國		○				집고종 41/3/9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32	李恒儀	1904	○			○	집고종 41/3/22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33	沈健澤	1904	○			○	집고종 41/8/4 忠淸南道觀察使(除授)	
634	趙鍾弼		○				집고종 42/2/2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35	李乾夏	1905	○			○	집고종 42/2/17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36	權重顯		○				집고종 42/6/6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37	李道宰	1905	○			○	집고종 42/7/20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38	韓鎮昌		○				집고종 42/12/7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39	李道宰		○				집고종 42/12/20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40	朱錫冕		○				집고종 43/2/21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41	金臺鎮	1906	○			○	집고종 43/5/8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42	李健榮		○				집고종 44/5/13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43	梁在翼	1907	○			○	집고종 44/6/7 忠淸南道觀察使(任命)	
644	崔廷德	1908	○			○	집순종 1/6/11 忠淸南道觀察使(任命)	
	朴重陽					○	長官	

3. 충청도관찰사의 재임실태 분석

조선시대 500여년간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600여명에 달한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제수만 되고 부임하지 않았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재임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말부터 1894년까지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모두 582명이다.⁷⁹⁾ 이들을 성관별로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⁸⁰⁾

이 표를 토대로 성관별 분포를 보면, 전주이씨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파평윤씨가 24명이며, 10명이상이 제수된 성씨로는 안동김씨(19명), 안동권씨(18명), 한산이씨(15명), 여홍민씨(13명), 경주이씨(12명), 진주강씨(11명), 연안이씨(11명), 경주김씨(11명), 남양홍씨(11명), 전의이씨(11명), 양주조씨(10명), 청주한씨(10명), 청송침씨(10명) 등이다. 또한 달성서씨, 반남박씨, 밀양박씨, 문화유씨 등은 9명, 동래정씨, 의령남씨, 풍양조씨, 창녕성씨 등은 8명, 풍산홍씨, 강릉김씨, 광산김씨, 순흥안씨 등은 7명, 광주이씨, 평산신씨는 6명, 임천조씨, 기계유씨, 용인이씨, 동복오씨, 덕수이씨 등은 5명씩 충청감사에 제수되었다(〈표 6〉 참조).

79) 이는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 가운데에 실제 부임하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된 것이며, 1895년에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도의 공주부·충주부·홍주부에 각각 파견되었던 부관찰사(12명)와, 1896년 이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대한제국 말까지 파견되었던 충청남·북도관찰사(41명)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80) 선생안이나 실록에는 충청도관찰사의 본관이 적혀있지 않다. 이들의 본관은 필자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문연)의 인물항목, 문과방목, 사마방목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한 것이다.

〈표 5〉 충청도 관찰사의 성관별 인물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개
姜	晉州	姜 隱(1391), 姜淮仲(1419), 姜子平(1485), 姜 遼(1560), 姜上弼(1566), 姜栢年(1653), 姜 瑜(1657), 姜世龜(1689), 姜 銖(1693), 姜 潤(1780), 姜時永(1843)	11
慶	淸州	慶 淦(1550), 慶 遼(1616), 慶 取(1678)	3
高	濟州	高景虛(1574)	1
	開城	高若海(1429)	1
具	綾城	具思孟(1575), 具鳳齡(1576), 具允明(1760), 具允鉉(1765)	4
權	安東	權 軫(1421), 權克和(1448), 權 攀(1463), 權 柱(1501), 權敏手(1516), 權應昌(1541), 權克禮(1580), 權 徵(1587), 權 喬(1600), 權 盼(1626), 權 壽(1655), 權足經(1685), 權 成(1716), 權 박(1719), 權益寬(1723), 權 詒(1727), 權 繼(1789), 權常慎(1817)	18
	醴泉	權 嘉(1770)	1
	미상	權 박(1728)	1
金	江陵	金光轍(1538 · 1546), 金光軫(1549 · 1554), 金起宗(1626), 金始炯(1728), 金尚翼(1741), 金尚喆(1757), 金啓洛(1803)	7
	慶州	金自粹(1406), 金永滿(1471), 金 瑞(1512), 金 琛(1528), 金命元(1573), 金慶餘(1650), 金弘郁(1651), 金始振(1664), 金興慶(1716 · 1718), 金 磯(1726), 金聖運(1739)	11
	光山	金若采(1404), 金礪石(1487), 金克幅(1515), 金 磨(1523), 金 鑄(1557), 金汝鉉(1651), 金陽澤(1756)	7
	廣州	金 浩(1506)	1
	金海	金 銖(1443), 金自貞(1484), 金益壽(1544 · 1545 · 1546)	3
	保寧	金震知(1464)	1
	商山	金 演(1703)	1
	尙州	金良璥(1469), 金 尙(1643)	2
	善山	金之慶(1467), 金信元(1597)	2
安東		金益精(1424), 金 紐(1474), 金悌甲(1581), 金億齡(1584), 金時獻(1597), 金 素(1648), 金 徽(1661), 金世翊(1697), 金盛迪(1698), 金時榮(1751), 金文淳(1782), 金履翼(1792), 金履永(1799), 金學淳(1825), 金英淳(1839), 金鼎均(1841), 金洙根(1847), 金應根(1857), 金炳始(1872)	19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계
金	彦陽	金 瑞(1470)	1
	延安	金汝知(1414), 金謹思(1517)	2
	靈光	金 瑩(1470)	1
	禮安	金 功(1599)	1
	義城	金宇宏(1581)	1
	淸風	金 塉(1638), 金 構(1694), 金致恭(1775), 金光默(1786)	4
	農山	金楊震(1533)	1
	미상	金伯英(1523), 金 瀱(1693), 金蓍根(1808), 金在三(1834)	4
奇	幸州	奇 苓(1590)	1
羅	羅州	羅世纘(1548)	1
南	宜寧	南 智(1434), 南世健(1537), 南以雄(1629), 南 銑(1646), 南二星(1671), 南正重(1700), 南道揆(1721), 南一祐(1882)	8
盧	光州	盧守愼(1568)	1
	豊川	盧叔全(1457), 盧 穎(1567)	2
孟	新昌	孟思誠(1417), 孟胄瑞(1675), 孟萬澤(1708)	3
睦	泗川	睦 謙(1565)	1
閔	驥興	閔 開(선초), 閔汝翼(1409), 閔 穎(1453), 閔師憲(1500), 閔 箴(1555 · 1561), 閔維重(1668), 閔鎮厚(1697), 閔應洙(1729), 閔百興(1762), 閔百奮(1771 · 1775), 閔蓍顯(1803), 閔致岸(1868), 閔沫商(1887)	13
朴	高靈	朴永俊(1555)	1
	密陽	朴光榮(1531), 朴忠元(1563), 朴好元(1568), 朴彝敍(1611), 朴鼎賢(1619), 朴明博(1635), 朴 紳(1692), 朴明義(1624), 朴天衡(1792)	9
	潘南	朴世堂(1681), 朴泰恒(1705), 朴宗岳(1790), 朴嵩壽(1805), 朴宗京(1819), 朴晦壽(1827), 朴齊聞(1829), 朴齊寬(1884), 朴齊純(1894)	9
	順天	朴彭年(1455)	1
	竹山	朴安性(1480), 朴弘老(1595), 朴慶新(1622)	3
	咸陽	朴素立(1570)	1
	미상	朴光衍(1421)	1
	潘	光州 潘碩平(1530)	1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개
徐	達城	徐鈞衡(여말), 徐文裕(1696), 徐命均(1721), 徐命淵(1728), 徐宗伋(1746), 徐有臣(1776), 徐有隣(1776), 徐榮輔(1792), 徐有聞(1811)	9
	大邱	徐命臣(1751), 徐美修(1797), 徐俊輔(1826)	3
	扶餘	徐必遠(1656)	1
	利川	徐選(1417)	1
宣	寶城	宣炯(1470)	1
成	昌寧	成石璘(1388), 成石因(1405), 成奉祖(1445), 成允文(1474), 成世純(1509), 成雲(1519), 成泳(1602), 成彝鎬(1874)	8
蘇	晋州	蘇世讓(1533), 蘇斗山(1684)	2
孫	平海	孫澍(1507)	1
	慶州	孫仲暾(1520)	1
宋	礪山	宋文琳(1466), 宋璵(1543·1545), 宋正明(1712), 宋寅明(1724)	4
	恩津	宋奎濂(1686), 宋相琦(1699·1707), 宋載經(1772), 宋世憲(1890)	4
	鎮川	宋秀衡(1735)	1
申	高靈	申浚(1482), 申公濟(1519), 申湜(1608)	3
	平山	申汝悰(1560), 申鑑(1623), 申厚命(1697), 申昉(1725·1730), 申人升(1783), 申愬(1865)	6
	미상	申湛(1577)	1
慎	居昌	慎承善(1473)	1
辛	寧越	辛永孫(1463)	1
沈	青松	沈悅(1607), 沈撥(1691), 沈壽賢(1714), 沈頤之(1780), 沈豐之(1784), 沈宜臣(1836), 沈宜冕(1853), 沈承澤(1859), 沈舜澤(1875), 沈相薰(1885)	10
	豊山	沈守慶(1559)	1
安	廣州	安完慶(1453), 安應享(1622)	2
	順興	安景良(1391), 安崇孝(1459), 安琛(1504), 安塘(1507), 安璋(1553), 安宗道(1585), 安兼濟(1773)	7
	竹山	安魯生(1409), 安騰(1415), 安哲孫(1468), 安方慶(1565)	4
梁	南原	梁順石(1476)	1
楊	淸州	楊厚(1446)	1
	中和	楊稀枝(1498)	1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계
魚	咸從	魚震翼(1681)	1
呂	咸陽	呂祐吉(1618 · 1620)	1
吳	同福	吳 陞(1409), 吳 端(1638), 吳挺垣(1659), 吳挺緯(1662), 吳始人 (1679)	5
	延日	吳 準(1537)	1
禹	丹陽	禹希烈(1415), 禹伏龍(1602)	2
元	原州	元 混(1545), 元繼儉(1551), 元義孫(1770), 元在明(1811)	4
柳	文化	柳廷顯(1407), 柳 穎(1423), 柳季聞(1426), 柳守剛(1438), 柳 雲 (1518 · 1519), 柳智善(1556), 柳 潤(1564), 柳 瑙(1572), 柳希霖 (1579)	9
	全州	柳 煥(1795)	1
	晉陽	柳 珪(1390)	1
	晋州	柳世琛(1511), 柳 根(1596 · 1602), 柳 儼(1735)	3
	미상	柳種善(1422)	1
俞	昌原	俞 昶(1656)	1
	杞溪	俞汝霖(1526), 俞 泏(1569), 俞大禎(1609), 俞伯曾(1631), 俞章煥 (1861)	5
尹	南原	尹孝全(1614), 尹以道(1683 · 1688), 尹成駿(1706)	3
	漆原	尹嘉績(1682), 尹敬龍(1738)	2
	坡平	尹 炯(1439), 尹希仁(1523), 尹仁鏡(1525), 尹安仁(1536), 尹 漑 (1538), 尹 鉉(1571 · 1573), 尹先覺(1591), 尹仁涵(1593), 尹敬立 (1598), 尹 瞻(1605), 尹知敬(1631), 尹毅立(1633), 尹得說(1649), 尹以濟(1680), 尹趾善(1681), 尹敬教(1681), 尹行校(1711), 尹獻柱 (1717), 尹陽來(1721), 尹惠教(1723), 尹東遲(1761), 尹東昇(1763), 尹東哲(1772), 尹光頤(1800)	24
	海南	尹 復(1573)	1
	海平	尹殷弼(1527), 尹承吉(1593), 尹承勳(1593), 尹履之(1624)	4
	미상	尹 嵘(1485), 尹 坦(1492), 尹行敎(1716), 尹尙東(1787)	4
	慶州	李思鈞(1529), 李夢亮(1552), 李廷醜(1596), 李慶億(1657), 李 宏 (1700), 李世弼(1706), 李重協(1727), 李聖龍(1729), 李衡佐(1731), 李宗白(1735), 李宗城(1741), 李錫奎(1821)	12
	古阜	李希孟(1514)	1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계
李	固城	李皎然(1465), 李 陸(1477), 李 則(1489), 李 澤(1558)	4
	廣州	李之剛(1415), 李世佐(1478), 李 薜(1497), 李英賢(1562), 李元禎(1666), 李宜晚(1722)	6
	德水	李 荊(1526), 李純亨(1564), 李安訥(1616 · 1634), 李善溥(1696 · 1703 · 1708), 李周鎮(1737)	5
	碧珍	李世瑾(1721)	1
	富平	李廷濟(1729)	1
	星州	李 濩(1411), 李正寧(1447), 李 譖(1497), 李自健(1502)	4
	陽城	李孟常(1440), 李承召(1466)	2
	驪興	李震休(1701)	1
	延安	李淑琦(1488), 李叔誠(1495), 李弘老(1604), 李時昉(1641), 李 疏(1659), 李麟徵(1690), 李萬元(1700), 李益輔(1750), 李命植(1778), 李頤祥(1790), 李鼎運(1795)	11
	永川	李 遵(1573)	1
	完山	李 性(1619), 李 墉(1688 · 1695), 李 早(1704), 李厚永(1894)	4
	龍仁	李後山(1654), 李世勉(1715), 李世最(1716), 李普赫(1737), 李崇祐(1781)	5
	牛峯	李 翱(1669), 李晚堅(1713)	2
	仁川	李全粹(1475), 李成童(1518)	2
	全義	李德良(1473), 李慎孝(1481), 李德崇(1488), 李龜齡(1532), 李壽童(1535), 李 鐸(1562), 李海壽(1588), 李命俊(1624), 李尚貞(1666), 李廷謙(1704), 李根友(1852)	11
	全州	李夢弼(1549), 李忠綽(1573), 李憲國(1588), 李 勅(1590), 李誠中(1591), 李廷臣(1612), 李 呂(1621), 李敬興(1627), 李厚源(1639), 李 曼(1660), 李翊漢(1664), 李敏迪(1666), 李德周(1677), 李師命(1681), 李端錫(1684), 李彥綱(1687), 李議徵(1689), 李益壽(1697), 李德成(1704), 李 濟(1704), 李彥經(1706), 李昌誼(1747), 李日躋(1748), 李惟秀(1767), 李明中(1779), 李秉鼎(1779), 李得臣(1785), 李亨元(1792), 李秉文(1863), 李明應(1878)	30
	貞寶	李 澄(1548), 李溟翼(1676)	2
	平昌	李季男(1491)	1
	韓山	李孟昀(1418), 李叔祉(1431), 李 增(1582), 李慶全(1612), 李德潤(1623), 李泰淵(1658), 李弘淵(1663 · 1670), 李弘迪(1694), 李德重(1743), 李秀得(1759), 李思觀(1759 · 1762), 李泰永(1798), 李謙在(1855), 李承五(1881), 李耕植(1892)	15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계
李	咸安	李世應(1518), 李春元(1617), 李瀨(1644)	3
	미상	李至(1399), 李安愚(1412), 李孝仁(1433), 李益朴(1442), 李重(1456), 李拱(1484), 李誼(1491), 李湛(1573), 李認(1586), 李用淳(1601), 李著晚(1689), 李弘(1719), 李春재(1731), 李壽沆(1734), 李重祐(1765), 李元默(1831), 李憲植(1889)	17
林	羅州	林鼎(1645), 林濟遠(1796)	2
任	長興	任從善(1440)	1
	農川	任孝仁(1461), 任義伯(1665), 任弘望(1687 · 1624)	3
張	德水	張雲翼(1596)	1
	仁同	張晚(1600)	1
	미상	張至和(1398)	1
丁	羅州	丁玉亨(1533)	1
鄭	慶州	鄭惟善(1542)	1
	光州	鄭萬鍾(1544)	1
	東萊	鄭彥智(1578), 鄭廣敬(1625), 鄭世規(1636), 鄭太和(1637), 鄭良弼(1641), 鄭致和(1642), 鄭彥燮(1733), 鄭存中(1790)	8
	奉化	鄭津(1419)	1
	溫陽	鄭順朋(1519), 鄭晚錫(1807)	2
	晉州	鄭苯(1436), 鄭陟(1455), 鄭孝成(1630)	3
	草溪	鄭暉(1610), 鄭文翼(1628)	2
	河東	鄭麟趾(1435)	1
	海州	鄭易(1414), 鄭眉壽(1496)	2
	미상	鄭允祐(1597)	1
趙	楊州	趙從生(1433), 趙遂良(1452), 趙啓遠(1647), 趙泰東(1700), 趙泰嵩(1701 · 1702), 趙道彬(1711), 趙榮國(1740), 趙貞喆(1813), 趙得林(1848), 趙秉式(1876 · 1892)	10
	林川	趙亨期(1696), 趙正萬(1727), 趙明鼎(1754), 趙德潤(1806), 趙秉鎬(1893)	5
	平壤	趙仁得(1596)	1
	豐壤	趙珩(1652), 趙載浩(1745), 趙暾(1756), 趙經鎮(1823), 趙秉鉉(1833), 趙冀永(1837), 趙雲澈(1845), 趙獻永(1860)	8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계
趙	漢陽	趙威明(1675)	1
	咸安	趙 舜(1513), 趙玉峴(1521), 趙榮福(1720)	3
	미상	趙 頤(1782)	1
曹	昌寧	曹 偉(1493), 曹繼商(1508), 曹允大(1795), 曹錫中(1802)	4
蔡	仁川	蔡 壽(1486)	1
	平康	蔡世傑(1539), 蔡世英(1552)	2
崔	江陵	崔應賢(1488), 崔 澈(1507)	2
	慶州	崔漢卿(1462), 崔淑生(1513), 崔商翼(1699)	3
	全州	崔士康(1425), 崔應龍(1573 · 1574)	2
	忠州	崔 淘(선초)	1
	海州	崔 沂(1607)	1
	和順	崔重洪(1519 · 1531)	1
河	미상	崔士老(1462)	1
	晉州	河 嵋(1398), 河叔溥(1483)	2
韓	谷山	韓 雍(1410)	1
	淸州	韓尚質(1393), 韓尚敬(선초), 韓繼純(1472), 韓亨允(1511), 韓胤昌(1538), 韓 準(1585), 韩配夏(1709), 韩配周(1712), 韩 祖(1718), 韩正教(1854)	10
	미상	韓 昌(1457), 韩用和(1797)	2
咸	江陵	咸傅林(1402)	1
許	陽川	許 磁(1540), 許 頊(1592), 許 帛(1707)	3
	미상	許 遲(1413)	1
洪	南陽	洪 興(1490), 洪自阿(1499), 洪敍疇(1544), 洪慶臣(1611), 洪受疇(1696), 洪致中(1716), 洪禹傳(1721), 洪好人(1725), 洪龍祚(1725), 洪啓禧(1749), 洪 榕(1787)	11
	缶溪	洪貴達(1479)	1
	豊山	洪萬朝(1693), 洪重夏(1710), 洪鳳漢(1746), 洪樂純(1768), 洪秀輔(1782), 洪漸周(1815), 洪義璽(1831)	7
	豊川	洪說謨(1850)	1
	미상	洪 哲(1703), 洪秉績(1780)	2

성씨	본관	관찰사 성명(제수시기)	계
黃	尙州	黃孝源(1458)	1
	長水	黃廷璣(1583), 黃 暱(1735)	2
	昌原	黃敬中(1615), 黃 欽(1694 · 1699)	2
	平海	黃 瑞(1566)	1
	懷德	黃子厚(1415 · 1422)	1
계	146		582

〈표 6〉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된 인물의 성관분포

구분	성 관
10명 이상	全州李(30명), 坡平尹(24명), 安東金(19명), 安東權(18명), 韓山李(15명), 驪興閔(13명), 慶州李(12명), 晉州姜(11명), 延安李(11명), 慶州金(11명), 南陽洪(11명), 全義李(11명), 楊州趙(10명), 清州韓(10명), 青松沈(10명)
5명 ~ 9명	達城徐(9명), 潘南朴(9명), 密陽朴(9명), 文化柳(9명), 東萊鄭(8명), 宜寧南(8명), 豊壤趙(8명), 昌寧成(8명), 豊山洪(7명), 江陵金(7명), 光山金(7명), 順興安(7명), 廣州李(6명), 平山申(6명), 林川趙(5명), 杞溪俞(5명), 龍仁李(5명), 同福吳(5명), 德水李(5명)
4명	綾城具, 清風金, 磨山宋, 恩津宋, 竹山安, 原州元, 海平尹, 完山李, 固城李, 星州李, 昌寧曹
3명	淸州慶, 金海金, 新昌孟, 竹山朴, 大邱徐, 高靈申, 晉州柳, 南原尹, 咸安李, 豊川任, 晉州鄭, 成安趙, 慶州崔, 陽川許
2명	善山金, 延安金, 尙州金, 豊川盧, 晉州蘇, 廣州安, 丹陽禹, 漆原尹, 貞寶李, 牛峯李, 陽城李, 仁川李, 羅州林, 草溪鄭, 濱陽鄭, 海州鄭, 平康蔡, 江陵崔, 全州崔, 晉州河, 長水黃, 昌原黃
1명	開城高, 濟州高, 體泉權, 幸州奇, 靈光金, 保寧金, 商山金, 豊山金, 義城金, 禮安金, 彥陽金, 廣州金, 羅州羅, 南原梁, 咸陽呂, 光州盧, 泗川睦, 高靈朴, 咸陽朴, 順天朴, 光州潘, 扶餘徐, 利川徐, 寶城宣, 慶州孫, 平海孫, 鎮川宋, 寧越辛, 居昌慎, 清州楊, 中和楊, 咸從魚, 延日吳, 晉陽柳, 昌原俞, 全州柳, 海南尹, 古阜李, 碧珍李, 平昌李, 永川李, 富平李, 驪興李, 長興任, 仁同張, 德水張, 河東鄭, 慶州鄭, 光州鄭, 羅州丁, 奉化鄭, 平壤趙, 漢陽趙, 仁川蔡, 和順崔, 忠州崔, 海州崔, 豊山沈, 谷山韓, 江陵咸, 倭溪洪, 豊川洪, 懷德黃, 尙州黃, 平海黃
미상	李(17), 尹(4), 金(4), 韓(2), 洪(2), 權(1), 朴(1), 申(1), 柳(1), 張(1), 鄭(1), 趙(1), 崔(1), 許(1)

충청도도선생안 가운데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영공안』의 분석을 통해서는 조선후기 충청도관찰사의 재임실태를 살펴 수 있다. 우선 『금영공안』의 관찰사 명칭을 통해서 조선전기에 충청도관찰사직에 실시된 행수법(行守法)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⁸¹⁾ 『금영공안』에 의하면 1565년에 재임한 안방경부터 1591년에 재임한 이성중에 이르기까지 34명의 충청도관찰사 가운데 27명이 수관찰사(守觀察使)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충청도관찰사직은 종2품에 해당하였는데, 16세기 후반기에 충청도관찰사에 재임했던 인물들은 대체로 종2품보다 품계가 낮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영공안』에 의하면,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관찰사는 순찰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순찰사란 원래 조정에서 명을 받들고 지방[外方]에 자신으로 나가는 재상 가운데 2품에 해당할 경우 사용된 개념이다. 1492년에 편찬된 『대전속록』에서는 봉명재상(奉命宰相)을 정1품이면 도체찰사(都體察使), 종1품이면 체찰사(體察使), 정2품이면 도순찰사(都巡察使), 종2품이면 순찰사(巡察使), 3품이면 찰리사(察理使)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관찰사가 봉명재상인 순찰사직을 겸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충청도관찰사의 정식 명칭도 (충청도관찰사)겸(도)순찰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1591년에 충청도관찰사에 부임한 윤선각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가선대부로 승격하면서 최초의 충청도관찰사겸순찰사가 되었다. 금영공안에서는 이후의 충청도관찰사 명칭을 모두 겸(도)순찰사로 적고 있다. 겸(도)순찰사는 1811년에 부임한 원재명에 이르기

81) 행수법이란 세종조부터 실시된 것으로 관료제의 운영에서 관직의 관계와 관원의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조선시대의 관제는 官職에 해당 官階(品階)가 있으며, 관직에 부임하는 官員도 관계(품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관원이 관직을 제수 받을 때, 관원 본인이 갖고 있는 관계와 제수 받는 관직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관원의 관계가 제수 받는 관직의 관계보다 높을 경우에는 관계와 관직 사이에 ‘行’자를 적고, 관원의 관계가 제수 받는 관직의 관계보다 낮을 경우에는 관계와 관직 사이에 ‘守’자를 적음으로써 융통성 있는 관료제 운영이 가능하였다.

까지 모두 228명인데, 이 가운데 10명은 도순찰사였다. 조선후기의 관찰사들은 관찰사라는 명칭보다 겸(도)순찰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더 영예롭게 여긴 듯 하다.

『금영공안』에는 309명의 충청도관찰사 가운데 240명은 최종관직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46명은 관찰사로 그치거나 관찰사와 동등한 직위에 머물렀지만, 194명은 충청도관찰사보다 높은 직위로 승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해보면 영의정(13명), 좌의정(9명), 우의정(7명) 등 정승에까지 이른 인물이 29명이며, 찬성 6명, 참찬 6명, 판서 60명, 참판 39명 등이었다.

관찰사는 관직에 제수되면, 며칠 후 국왕에게 나아가 사조(辭朝)를 하고, 임지로 떠나게 되는데, 수령과는 달리 도의 경역(境域)이 시작되는 고을에 이르면서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를 도계(到界)라고 하는데, 충청도의 경우 직산에 전임관찰사와 신임관찰사 사이에 인수인계식이 행해지는[交龜] 교귀소(交龜所)가 있었다. 그러나 하삼도(下三道), 즉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지방관으로 근무하다가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될 경우에는 종종 사조를 생략하고 부임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므로 도계지와 교귀소가 직산이 아니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1592년 12월에 부임한 허욱(許項)은 공주목사로 재임하다가 당상으로 승격하여 감사로 이배함으로써 조사를 생략하고 부임하였으며, 동래부사로 재임하다가 1704년 11월 20일에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된 이무는 조사를 생략하고 이듬해 2월 13일에 황간에 이르렀고[도계], 16일에 금강에 이르러 교귀하고 있다. 조영국(趙榮國)은 무주부사로 재임하다가 1740년 5월 26일에 충청도관찰사로 제수되자, 조사를 생략하고 윤 6월 13일에 연산에 이르렀으며[도계], 15일에 공주에서 교귀하고 있다. 신임관찰사가 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경우의 인수인계식은 도계지에서 교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주의 객사[객관]에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관찰사의 근무형태가 겸목제였던 조선후기와는 달리,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주로 도내를 순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찰사의 근무처인 감영으로 본영(本營)과 유영(留營)이 있었다. 조선전기 충청도관찰사의 근무처인 충청감영의 본영은 충주에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지난 17세기초부터는 공주에 충청도감영이 개영되고, 1603년부터 충청도관찰사가 공주목사를 겸하였으며, 나아가 관찰사 윤돈(1605~1607 재임)이 1606년에 유영(留營)을 포함으로써 충청도관찰사는 공주에 머물렀다.

공주감영의 개영시기에 대해 종전에는 1598년, 1600년, 1602년 등의 견해가 있었다. 우선 1988년에 편찬된 『공주군지』에서는 공주감영의 개영시기를 1598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598년의 공주감영 개영기록이 조선시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600년설은 공주감영읍지에 실려있는 선화당이건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1600년 1월 13일에 부임한 권희(선조실록에 의하면, 1599년 12월 26일 충청감사로 임명됨)는 감영을 사사로이 건립[私立監營]하다가 암행어사의 계로 체직되었고, 1600년 4월 3일에 후임 장만(張晚)이 부임(선조실록에 의하면, 3월 27일 이전에 장만의 충청감사 인사가 있었음)하고 있으므로, 권희는 2개월 남짓 재임한셈이다. 따라서 1600년에는 감영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1602년에 재차 부임한 유근(선조실록에 의하면, 9월 12일에 辭朝)은 감영을 설치하는 절차를 계문하여, 1603년에 겸목하라는 비답이 내려지니, 쌍수산성을 수축하고, 비로소[始] 영사(營舍 : 감영의 청사)와 공북문·진남문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공주감영 개영시기는 1603년(선조 36)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²⁾

앞서 언급했듯이 감사 겸목과 함께 이루어진 공주감영 개영 이전에는 감영으로 본영(本營)과 유영(留營)이 있었는데, 충청도의 본영은 충주였으며, 공주에 유영(留營)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런데 감사의 겸목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감사의 본영에 해당하는 고을이라 하

82) 『선조실록』에 의하면, 후임감사 이홍로의 충청도감사 제수는 1604년 2월 20일에 이루어졌다.

더라도 해당 도(道)의 중심지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주감영 때부터는 감사의 겸목제가 실시되어, 공주목사를 겸직하는 감사가 공주에 상주하게 됨으로써, 공주는 명실상부한 호서[충청도]의 중심고을이 되었다.

4. 충청도관찰사의 주요업적과 관련유적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조선초기에 사용되었던 ‘도관찰출척사겸감창안집전수권농관학사제조형옥병마공사(都觀察黜陟使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라는 긴 직함이 말해주듯이 도내의 수령을 비롯한 외관에 대한 관찰출척이라는 고유의 업무와 함께 감창(監倉)·안집(安集)·전수(轉輸)·권농(勸農)·관학(管學)·형옥(刑獄)·병마(兵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⁸³⁾ 또한 동반 외관인 관찰사는 서반 외관인 병·수사를 겸직하였으므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충청도관찰사도 무반직인 종2품 병마절도사와 정3품 수군절도사를 겸직함에 따라 도내 군사를 지휘하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관찰사의 겸목제가 실시되면서, 관찰사가 수령의 직책을 겸직하기도 하였다.⁸⁴⁾ 겸직하는 수령직은 해당 도내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부윤이나 목사 등이었는데, 충청도관찰사는 감영이 공주에 있었으므로 공주목사를 겸하여 목민관으로서의 기능을 행하였다. 그러나

83) 조선초기 관찰사의 긴 겸직명칭은 관찰사제가 확립되어 명실상부한 외방장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자, 겸직 부분의 명칭[兼이하의 20자]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兼職의 解消’가 이루어지면서 관찰사는 겸직이 갖고 있던 기능을 ‘관찰사’라는 본직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국대전에서의 관찰사의 명칭은 더 이상 긴 직함도 아니고, 도관찰출척사도 아닌 단지 ‘관찰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84) 관찰사의 수령겸직은 조선초기에도 한때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병·수사와 수령겸직은 염밀하게 말하면 관찰사 본래의 기능은 아니었다.

조선시대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모두 582명이었으며, 공주부·충주부·홍주부 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은 각각 4명씩이고, 충청남·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던 인물들은 각각 20명, 21명이었다. 이들 630여명 가운데에는 실제 부임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나, 500여명 이상은 관찰사로 재임하였으며, 이들은 재임기간 중에 많은 치적이나 일화를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⁸⁵⁾

먼저 공주산성과 관련하여 유근, 신감, 오정위 등이 주목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근(柳根)은 충청감사로 두 번 부임했던 인물이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의 왜적은 홍주에서 막고 호남으로부터 올라오는 왜적은 공주에서 막아야 한다는 논리 하에 공주에 영을 설치할 때, 159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충청도관찰사에 재임하고 있던 유근이 이를 수행했다. 이후 유근은 1602년에 충청도관찰사로 다시 부임하면서, 공산성내에 감영을 건립하였다. 그는 ‘성품이 영민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재주가 덕보다 승(勝)한 자’라는 사관(史官)의 평처럼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감영의 설치 외에도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진 직산의 온조묘를 다시 세우기를 건의하는 등 많은 일을 한 듯하다. 1623년에 재임하던 신감(中鑑)은 공주산성을 수축하여 국난에 대비하였으며, 1662년에 오정위(吳挺緯)는 공주의 옛성을 개축하고 두 곳에 절을 세워 성을 지키게 하는 등 크게 치적을 올리고 있다. 이 시기 공산성은 전략적 요충지로 손색이 없었다. 1610년에 충청감사에 재임하였던 정엽(鄭暉)은 공산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괄의 난 때 공주파천의 안을 과감히 제기했던 것이다.

관찰사에게는 백성을 위무하고 안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 안집(安集)에 관한 업무는 흥년·화재·수재·질병 등으로 발생한

85) 이는 충청도관찰사의 업적과 일화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이민의 진제 등 백성의 안정에 저해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령을 부단히 감독·치죄하는 업무였다. 조정에서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백성이 사망하거나 유망하게 되면 노동력의 고갈로 토지가 황폐화되어 수취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유민의 안집여부와 관찰사와 수령이 진휼에 최선을 다하는지의 여부를 검찰하여 기민구휼에 공이 있는 관찰사와 수령을 포상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상벌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안승효(安崇孝, 1459)는 충청도지역에 재변이 심각하여 재덕을 겸비한 인물이 요청되자, 이에 선발되어 동지중추원사겸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어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유망민에 대한 진휼사업을 펼쳐 그 효과가 매우 컸다. 그러나, 이듬해 과로로 임지에서 순직하였다. 송정명(宋正明, 1712)은 호서(湖西)가 흉년이 들었으므로 재차 충청도관찰사를 맡기자는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의 건의에 따라 충청도관찰사의 임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재임(仍任)하였으며, 이명웅(李明應, 1878)은 1877년에 큰 가뭄이 들고 천염병이 유행하였는데, 다음해에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어 2년 반 동안 재임하면서 치적이 있어 한 차례 연임되기도 하였다. 또한 박회수(朴晦壽, 1827)는 재임 중 흉년이 들자 창고를 열고 백성을 구휼하여 어사가 포상을 상소하기도 하였고, 조돈(趙墩, 1756)은 도내 수령들에게 진사(賑事)가 방장(方張)하다고 부시(赴試)할 여가를 주지 않아 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황자후(黃子厚, 1422)는 환자미를 함부로 준 죄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으며, 조명정(趙明鼎, 1754)은 재해를 입은 토지에 대한 면세 조치를 조정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자적으로 면세하였다가 해남으로 유배당하였다.

유장환(兪章煥, 1861)은 임술민란이 일어난 뒤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민심수습과 치안유지에 힘썼으며, 조기영(趙冀永, 1837)은 지방행정의 모순을 시정하고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전력하였고, 윤동섬(尹東暹, 1761)은 전결(田結)을 잘못 보고하여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당하였

으나, 1762년 충청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이산(離散)하므로, 호서안집사(湖西安集使)가 되어 흘어진 농민들을 안집하는 데 노력하기도 하였다. 권업(權業, 1719)은 1719년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우도균전사(右道均田使)를 겸하였으며,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호서안무사가 되었는데, 일찍이 이곳의 관찰사를 지낸 그가 도내 사정을 잘 안다고 하여 다시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전수(轉輸)에 관한 업무는 도에 부과된 조세·공부의 수납을 지휘·감독하고 수령과 함께 조세공부를 비판조운하여 납부하는 업무였다. 충청도에서 세곡을 징수하여 경창으로 보내는 운송경로는 충청좌도 지역은 충주의 금천·양암 등에 세곡을 모아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였고, 충청우도 지역은 면천 범근천, 아산 공세곶, 직산 경양포 등에 세곡을 모아 주로 해로(海路)를 이용하였다. 또한 호남의 세곡은 내포(內浦)의 바닷길을 경유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도 충청도관찰사에게 있었다.

충청도관찰사의 전수와 관련한 업적으로는 다음이 주목된다. 이세옹(李世應, 1518)은 충청·경상도 세곡의 집산지인 충주에 창고가 없어 노적된 곡식 관리와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알고, 경상도관찰사 김안국과 의논하여 충주 가홍창 건물을 축조하였으며, 우희열(禹希烈, 1415)은 조운의 편의를 위하여 시도된 태안반도 운하 개통사업, 즉 축제 사업을 주관하였다. 권도(權道, 1770)는 순천의 세선(稅船)이 충청도 연안에 이르러 선원들이 민가를 약탈하자 조정에 보고하여 이들을 모두 효수에 처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박종악(朴宗岳, 1790)은 1791년에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4척이 짐을 싣고 가라앉자, 이와 관련하여 추고(推考)를 받았다.

권상신(權常愼, 1817)은 재임중 조운의 편의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이석규(李錫奎, 1821)는 재임중 단양군의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군포(軍布) 등을 돈으로 대납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고, 성이호(成彝鎬, 1873)는 세정(稅政)을 바로잡고 재해민을 구제하는 등 민정을 잘 보살폈

으며, 남일우(南一祐, 1882)는 충주·연풍·부여·청안 등지의 관청의 부실한 재정을 일제히 정비하였고, 조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충청우도에 산재한 주사읍진(舟師邑鎮)의 수토군(搜討軍)과 수영(水營)의 난후군(欄後軍)을 혁파하여 군사제도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권반(權盼, 1626)은 이원익(李元翼)이 경기도에 시행한 대동선혜(大同宣惠)의 정책을 본받아 한 도(道)의 전세(田稅)와 부역을 공평히 하려 하였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김육(金堉)이 또한 충청도관찰사 재임 중(1638)에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김육이 재상이 된 후 충청도에서의 대동법시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권반의 견해를 참고한 것이다.⁸⁶⁾ 대동법이 충청도에 확장·실시될 때의 충청도관찰사는 김홍육(金弘郁, 1651)이었다.⁸⁷⁾ 홍계희(洪啓禧, 1749)는 충청도관찰사 재임시의 시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750년 병조판서로 발탁되었다. 그가 충청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올린 시폐개혁안 가운데 균역조는 일정부분 균역법에 반영되었다.⁸⁸⁾

권농(勸農)에 관한 업무는 농형보고·우택보고·농형간심을 위한 순력, 진지의 개간·양전·제언·기우제 실행·농사기술 보급 등이었다. 권농

86) 김육(金堉, 1638)은 충청도관찰사 재임시 대동법의 시행 건의만이 아니라, 水車[무자위·물레방아]를 만들어 보급하고, 『救荒撮要』와 『벼瘟方』 등을 편찬, 간행하기도 하였다.

87) 당시 관찰사 김여옥(金汝鉉, 1651)은 대동법 실시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다가 체직 당하였다.

88) 시폐개혁안에는 과거제를 철폐하고 명나라의 관리임용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科制條, 翰薦召試의 철폐와 대간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한 官制條, 5군영을 철폐하고 훈련도감과 어영청만을 두되 正兵의 수를 늘리자는 軍制條, 良役의 모순을 시정하려 한 均役條 등 네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중 세 가지는 朝臣들에 의해 모두 거절되고 균역조만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균역조의 내용은 양역의 폐단이 양반의 不就役에 있다고 보고, 민생의 구제와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에게 軍布를 내게 하여 양역에 충당한다는 遊布論이었으나, 이는 사람의 맹렬한 비난으로 취소되고, 대신 경제력을 나타내는 田結에 부과되는 結布論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결포제도 대부분이 지주인 관료층의 반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워, 결국 토지 1결에 2斗의 結米 내지 結錢의 형태로 균역법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관으로서 관찰사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백성들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관찰사는 백성들이 농사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였다. 즉 백성들이 농사에 진력할 수 있도록 종자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도우면서 가뭄이 극심할 때에는 기우제를 주관하고, 수시로 우택과 농사의 형편을 파악하여 치계해야 하는 등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도록 철저히 수행하였다.

관학(管學)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지배·통치이념인 성리학의 이념에 의해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교의 흥폐에 의한 수령고파, 관내 교수·훈도의 감독, 교생의 일과·고강 감독, 인재 선발, 각종 향시 주관 등의 업무였다. 향교교육의 진흥은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수령의 관심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조정에서는 관찰사에게 최선을 다해 학교를 일으킬 방도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관찰사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향시 또한 관찰사의 주관하에 운영되었는데, 향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은 거주지의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도회소에 이문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홍학과 관련해서는 김익수(金益壽, 1544 · 1546)가 명종이 즉위하자 충청도관찰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후에 지방의 자체를 훈도할 방법을 진언하여 외방학교신명절목을 마련하여 전국에 권장하였다.⁸⁹⁾ 이득신(李得臣, 1785)은 재임중 상주목사가 승려를 동원하여 화양동에 있는 만동묘(萬東廟)를 수리함으로써 관할 충청감사인 그는 지방유생들로부터 책임을 추궁받기도 하였으며, 서필원(徐必遠, 1656)은 서원의 폐단을 보고하고 그 개혁을 청하고 있다. 충청도 향교의 곳곳에 걸려 있는 『제향교(題鄉校)』의 현판은, 서학(西學) 문제에서 ‘斥邪’ 보다도 ‘扶正學’을 내세우는 정조를 따르고 있던 권상신(權常愼, 1817)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의 향교 운영은 관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89) 김익수는 1546년에 다시 충청감사가 되어 여러읍의 수재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도 했다.

현재 공주향교에 걸려있는 중수기문만 보더라도 한배하(1710), 원재명(1751), 이석규(1822), 박제문(1831), 조기영(1839), 민치상(1870) 등의 관찰사 이름이 확인되며, 1850년 충청감사 조득립은 거점 유생을 위한 경비조로 1천금을 구재(鳩財)하고 있다.

형옥(刑獄)에 관한 업무는 관내에 유배된 죄인을 비롯한 수형자와 옥사의 관리, 죄인의 치사·질병·구료·학대 등 옥수에 관한 검찰, 사령에 관한 업무였다. 백성들이 원통해 하는 일은 형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조정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형옥을 처리하도록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관찰사는 순행할 때 수령들이 무고한 인명을 상하게 하거나 옥송을 지체하지 않도록 검찰하였다. 특히, 한재와 같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심을 안정시켜 나갔다.

병마(兵馬)에 관한 업무는 군사징발, 유사시 전투참가, 각종 무과의 향시 주관, 군적(軍籍) 작성·보관, 군기점검, 군대습진, 진군(鎮軍) 대정(代定), 모군(募軍), 군관(軍官) 포폄(褒貶), 번상(番上)하는 기(騎)·보병(步兵) 가포(價布)의 징수, 승호포수(陞戶砲手)의 초상(抄上) 등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시 윤승길(尹承吉, 1593)은 전란에 시달려 끊임없이 백성을 구휼하고 장정을 뽑아 기효신법으로 훈련을 시켜 명나라 지휘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선각(尹先覺, 1592)은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무기를 정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을 막아내다 패하여 파직 당하였으며, 허숙(許頃, 1593)은 서울수복을 위하여 군대를 통진·독산성 등지로 주둔시키다가 도원수 권율로부터 내포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군량을 변통치 못한다고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고, 이정암(李廷醜, 1596)은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으나, 죄수를 임의로 처벌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당하였다.

정세규(鄭世規, 1636)는 조신(朝臣)들의 추천을 받아 4품의 산질(散秩)에서 충청도관찰사로 특진되고, 그해 겨울 병자호란으로 왕이 남한산성

에서 포위되자 근왕병을 이끌고 포위된 남한산성을 향하여 진격하다가 용인·험천(險川)에서 적의 기습으로 대패하였으나, 이때의 충성심으로 패군의 죄까지 면죄받고 전라감사·개성유수를 거쳐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조선시대에 문음출신으로 육경에 오른 가장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후원(李厚源, 1639)은 민력(民力)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 사풍(土風)을 변경시켰으며, 군정(軍政)을 닦는 데 힘썼고, 임담(林潭, 1646)은 유탁(柳濯)의 모반사건을 처리하여, 그 공으로 품계가 오르고 토지를 하사 받기도 하였다. 김경여(金慶餘, 1650)도 군사력 배양에 힘을 쏟았으며, 이익한(李翊漢, 1664)은 서천 천방사(千房寺)의 승려가 일으킨 폭동을 공주영장 양일한(楊逸漢)으로 하여금 자기 소관이 아닌 한산·임천 등지에 파견하여 승려들을 체포하고 진압한 사실이 뒤에 조정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 알려져 선천(宣川)에 유배당하였다.

산성수보는 관찰사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앞서 언급한 공산성 보수 외에도 신익(申愬, 1865)은 청주 상당산성(上黨山城)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부패한 향리의 숙정과 철저한 재결(災結) 조사를 통하여 선정을 하였다. 그는 뛰어난 치적으로 좌의정 김병학(金炳學)에 의하여 임기 이후에도 연임하였으며, 그 뒤 또 관아의 재정을 비축하고 군기를 보수한 공으로 가자(加資)되었고, 1866년 체임시 남연군(南延君) 묘의 제사를 주관하고 제문을 찬진(撰進)하라는 왕명을 받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충청도의 내포지역에는 황당선(荒唐船)과 이양선(異樣船)이 자주 출몰하였으며,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존창에 의해 일찍이 천주교가 전파되었는데, 충청도관찰사 중에는 이들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있었다. 홍희근(洪義瑾, 1832)은 고대도(高代島)에 영국상선 아머스트 호(Amherst號)가 정박하자 이를 문정(問情)하여 보고하였으며, 1833년에 충청도관찰사로 재임했던 조병현(趙秉鉉, 1833)은 1839년 형조판서에 재임하면서 안동김씨를 배척하는 벽파(僻派)의 실권자로서 천주교를 탄압,

앵베르(Imbert, 范世享)주교와 샤스탕(Chastan, 鄭牙各伯)·모방(Maubant, 羅伯多祿)신부 등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을 살육하는 기해박해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박종악(朴宗岳, 1790)은 1791년 홍낙안(洪樂安)에 의하여 고발된 내포(內浦)의 천주교도 이준창을 공주감영에 가두고 공초를 담당하였다. 1868년 오페르트(Oppert, E.)의 남연군묘도굴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충청도관찰사는 민치상(閔致庠, 1866)이었다.⁹⁰⁾

맹사성(孟思誠, 1417)은 고향의 노부를 봉양하도록 충청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며, 정옥형(丁玉亨, 1533)은 김안로의 권세를 피해 충청도관찰사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고, 안방경(安方慶, 1565)은 문정왕후와의 불화로 외직으로 나와 청홍도관찰사를 지내었다. 한편,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朴彭年, 1455)은 충청도관찰사로 재임 중 세조에게 올리는 일체의 문서에 ‘臣’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충청도관찰사로 재임하다가 파직 당하는 사연도 가지가지였다. 김광진(金光軫, 1549)은 1550년 역적 이치의 노비·전답·재물을 추쇄한 문서를 즉시 수송하지 않았다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였으며, 목첨(睦詹, 1565)은 재임시 권신 윤원형의 사사로운 청탁을 거절하였다가 미움을 받아 파직 당하였고, 이춘원(李春元, 1617)은 재임 중 권신들이 인목대비의 존호를 폐하고 대비에 대한 모든 의식을 없애려고 하자 이에 극력 반대하다가 파직 당하였다. 이태연(李泰淵, 1659)은 도내의 유배죄인 7명을 임의로 풀어주었다가 파직당하였고, 윤양래(尹陽來, 1721)는 재직 중에 왕명을 어겨 효수형을 받게 된 박세명(朴世明)을 두둔하였다는 죄로 파직당하고, 국문(鞠問)을 받았다. 이만(李曼, 1660)은 부모의 묘를 개장(改葬)하면서 민가를 철훼(撤毀)하였다는 오해로 파직 당하였다.⁹¹⁾ 심풍지(沈豐之, 1784)는 도내의 소요사건으로 1785년 파직 당하였고, 한

90) 그는 사건 발생 후에도 1870년 11월까지 공충감사를 仍任하였다.

91) 그는 지방관으로 오래 있는 동안 농사짓는 방법 및 토질을 잘 가려내는 일 등에 일가견이 있었으나, 너무 인색하고 理財에 밝아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였다고 한다.

배하(韓配夏, 1709)는 관내 내포의 사족 땅을 투점(偷占)하였다 하여 지평 이정억(李禎億)의 탄핵을 받고, 그 뒤 무주부사로 좌천당하였다.

현재 공산성 서문 입구에는 공주 시내의 이곳 저곳에서 수습하여 세워놓은 비석군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찰사송덕비 23기가 세워져 있다. 송덕비의 명칭은 영세불망비(김억령·김시현·심의신·김수근·김제갑·이근우·심의면·한정교·이겸재·신억·민치상·김병시·남일우·민영상), 청간선정비(정태화), 거사비(김소), 만세불망비(조병현), 유애불망비(조득립), 선정비(김옹근), 청덕선정비(김옹근) 등 다양하다. 이들 송덕비가 세워진 관찰사 가운데에는 충청도내의 다른 고을에도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표 7> 참조)

원래 송덕비란 인물의 공덕을 칭송하는 문자를 새긴 비석으로, 흔히 관아의 입구나 도로변에 세워진다. 대체로 관직에 있으면서 은혜와 교화를 끼쳤을 때 백성들이 이를 생각하여 비를 세워 송덕하는 것이 통례인데, 조선후기에는 재임시에 행정을 잘 해서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지탄을 받던 탐관까지도 백성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재물을 들여 억지로 송덕비를 세우는 예도 있었다. 그리하여 한때 국법으로 금지한 적도 있었는데, 조선말기에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수없이 세워졌다. 현재 충청도내의 관찰사송덕비도 19세기 중엽 이후에 세워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청도내에 세워진 관찰사송덕비도 재임기간 중의 치적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했던 인물 가운데에는 청백리에 녹선된 인물 20여명을 찾을 수 있으나,⁹²⁾ 이 가운데 송덕비가 세워져 있는 인물은 심의신 뿐이다.

92) 세종조의 鄭陟(1455 재임), 孟思誠(1417), 박팽년(1455), 황효원(1458), 세조조의 노숙동(1457), 성종조의 이신효(1481), 중종조의 한형윤(1511), 신공재(1519), 손중돈(1520), 명종조의 이몽필(1550), 윤현(1571), 박영준(1555), 김개(1557), 노진(1567), 선조조의 심수경(1559), 허육(1592), 성영, 인조조의 이안눌, 이명준(1624), 숙종조의 이상진, 강백년(1653), 순조조의 심의신(1836) 등이 그들이다.

〈표 7〉 충청도관찰사 송덕비 현황

성명(본관)	제임시기	송덕비 소재지	비고
金悌甲(안동)	1581	공주	신비
金億齡(안동)	1584	공주	신비
金時獻(안동)	1597	공주	신비
鄭太和(동래)	1637	공주	
金 素(안동)	1648	공주	신비
宋正明(여산)	1712	보령(주산), 서천(비인)	
趙秉鉉(풍양)	1833	공주, 천안(직산)	
沈宜臣(청송)	1836	공주(2), 아산(신창), 서산(읍내), 천안(목천), 보령(남포), 예산(대홍), 예산(덕산), 논산(노성), 논산(은진)	
金洙根(안동)	1847	공주	
趙得林(양주)	1848	공주, 예산(대홍)	
李根友(전의)	1852	공주	
沈宜冕(청송)	1853	공주	
韓正敎(청주)	1854	공주	
李謙在(한산)	1855	공주	
金應根(안동)	1857	공주2, 서산(읍내), 천안(목천), 예산(덕산), 논산(연산)	
申 檻(평산)	1865	공주, 서산(읍내), 논산(노성), 논산(은진), 서천(비인)	
閔致庠(여홍)	1868	공주3, 서산(읍내), 천안(목천), 예산(예산), 예산(대홍), 논산(노성)	
金炳始(안동)	1872	공주	
趙秉式(양주)	1876, 1982	서산(운산), 예산(오가), 논산(노성)	
南一祐(의령)	1882	공주, 아산(신창), 천안(목천), 논산(연산)	
朴濟寬(반남)	1884	아산(온양), 논산(은진)	
沈相薰(청송)	1885	아산(영인), 서산(읍내), 예산(대홍), 논산(상월)	
閔泳商(여홍)	1887	공주(2), 아산(영인), 예산(덕산), 논산(노성), 서천(비인)	
趙秉鎬(임천)	1893	논산(연산)	
李乾夏(전주)	1895, 1905	예산(대홍 2), 이건하(비인)	공주부, 충청남도
鄭周永(미상)	1897	서산(해미), 예산(예산)	홍주부
洪承憲(풍산)	1902	서산(운산)	충청남도

반면에 몇몇 인물은 선정과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우선 조병식(趙秉式, 1876, 1892)은 1876년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가 1878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충청감사 재임시에 탐학하였던 행적이 드러나 전라남도 나주목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또한 1892년에 다시 충청도관찰사에 부임하였는데, 이때 동학교도들이 교조의 신원청원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동학교문에 대한 탄압과 기찰을 강화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에서는 동학에 대한 무마책으로 1893년 1월에 그를 경질하고, 판의금부사에 제수하였으나 이듬해 충청도관찰사 재임시 장오(臟汚)의 행적이 드러나 결국 면천군에 투비(投卑)되었다. 심상훈(沈相薰, 1885)은 충청도관찰사로 있으면서 동학교도의 탄압에 앞장섰으며, 박제순(朴齊純, 1894)은 충청도관찰사 재직시에 일본군 및 경군(京軍)과 연합하여 공주에서의 동학농민군토벌작전에 참여하였다. 이승우(李勝宇, 1995)는 1895년 을미개혁으로 지방관제가 개혁될 때 홍주부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이해에 홍주에서는 강직한 관리로 이름났던 김복한·이설·안창식·안병찬·임한주·이근주 등이 을미사변 직후부터 기병을 계획하다가 단발령을 계기로 창의하여 공주와 임존산성을 점거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때 관찰사로 있던 이승우는 거짓으로 이 의병진에 가담한 뒤 몰래 정부측 관리와 내통하여 순검대를 끌어들여 김복한·이설을 비롯한 의병진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 투옥함으로써 의병진을 강제 해산하게 한 인물이다. 아마 당시에는 동학교도나 의병에 대한 탄압이나 진압은 송덕비가 세워질 큰 공로에 해당했던 모양이다.

V. 맷 음 말

고려시대에는 외관의 존재형태가 경·외관미분화 상태였으나, 조선초 기에 이르면 상주외관의 수적 증가와 일부 외방사신의 외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 등장하는 관찰사를 중심으로 외관제가 정비되고 확립되었다.

여말부터 재상급 관료로 충당된 관찰사에게는 태종 6년까지 교서와 부월이 함께 지급되고 있었으며, 이후 교서의 지급은 세종 12년에 부활되는데, 교서의 내용 중에는 관찰사의 출척권과 직단권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수령의 직계권은 박탈되고 대신 관찰사에게 직계권이 주어져 수령은 관찰사를 통한 전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는 관찰사가 중앙의 육조와 같은 2품아문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찰사는 수령 뿐만 아니라 점차 관내의 모든 외관을 통제하고 규찰할 수 있게 되었다. 병사나 수사와의 관계에서도 한때 갈등이 표출되기 도 하였으나, 점차 관찰사의 우위권이 보장되어 나갔다.

종2품직인 관찰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천거에 의해서 국왕이 임명하였으며, 관찰사의 자질로는 공렴정직과 암련이 요구되었다. 관찰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수령(목사, 부윤)을 겸하는 경우에는 2년간 재임하였다. 관찰사는 고유기능인 외현적 기능과 함께 방백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막중한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찰사의 속관으로 도사·검률·심약·판관·중군과 같은 외관이 파견되었다.

8도에 파견되던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갑오개혁기에 8도제가 23부제로 개편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에 관찰사가 파견되다가, 다시 13도로 개편되면서 조선이 망하는 1910년에 이르기까지 13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조선시대 충청도의 명칭은 간혹 충공도, 충홍도, 청공도, 청홍도, 공충도, 공청도, 공홍도, 홍충도, 홍청도 등으로도 불리었다. 이는 원래 충주

와 청주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도명 충청도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으나, 충주나 청주에서 강상사건이나 역적관련사건이 발생하면, 도명에서 충자나 청자를 배제하고, 공주와 홍주의 머리글자인 공자나 홍자를 도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충청도관찰사는 대략 53개 혹은 54개의 고을을 관할하였다.

충청도관찰사의 명단으로는 『금영공안』, 『공주감영읍지』(1790)의 선생안, 『공산지』의 영문선생안, 『(충청도)도선생안』 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선전기의 충청도관찰사 명단은 대부분이 누락된 채, 주로 조선후기에 재임했던 관찰사를 중심으로 300여명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선생안을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의 산견된 충청도관찰사 관련 기록을 찾아 정리한 결과 600여명 이상의 관찰사 명단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충청도도선생안의 복원작업은 앞으로 충청도관찰사연구는 물론, 지방사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충청도관찰사의 재임시 업적에 관한 부분과 관련유적 조사 작업은 미흡하다. 이 부분은 방대한 연구작업에 해당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사 료]

- 1) 역사서 :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高宗純宗實錄 등
- 2) 법전류 : 經國大典, 繢大典, 大典會通, 增補文獻備考 등
- 3) 지리지, 읍지 : 新增東國輿地勝覽, 公山誌, 忠淸道邑誌, 潤西邑誌, 錦營公案 등

[단행본]

- 이수건,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李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 1990. 2. 서울 一志社, 신국판 393쪽
吳甲均 저, 『朝鮮時代 司法制度 研究』, 1995. 2. 서울 三英社, 신국판 289쪽
대구광역시중구, 『경상감영사백년사』, 1998. 2., 857쪽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2000. 4.

[논 문]

- 金玉根, 「朝鮮朝 地方財政의 構造分析; 監營・鎮・驛의 歲入構造를 中心으로」,
論文集 제4집 제1권-人文・社會科學篇 301-316쪽, 1983. 3. 부산 부산수
산대학
金鎬逸, 「朝鮮後期의 外官制; 觀察使의 法制的 側面을 중심으로」, 國사관논총
8 117-146, 1989. 12. 과천 國사편찬위원회
김희태, 「한말 지방제도의 변천과 역대 관찰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향
토문화 제16집 35~53쪽, 1997. 2. 光州 향토문화개발협의회

- 白相起, 「朝鮮朝地方行政에 있어서 觀察使制에 관한 研究」, *사회과학연구* 12
집 2권 227-248, 1992. 12. 대구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尹汝憲, 「朝鮮朝 公州(忠淸)監營考; 位置·機構를 中心으로」, *백제문화* 20
43-70, 1990. 12. 공주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李存熙, 「朝鮮前期의 觀察使制」, 論文集 제18집 27-67쪽, 1985. 2. 서울 서울시
립대학
- 李存熙, 「朝鮮前期의 外官制」, *국사관논총* 8 67-116, 1989. 12. 과천 국사편찬
위원회
- 李勛相, 「朝鮮後期 上級 地方行政 體制에 있어서 身分 집단에 기초한 運營構造
와 行政實務集團의 出身지역의 偏在化 -監營 營房의 私的 聯網의 구축과
『湖南房先生案』의 작성 전통-」, *호남문화연구* 제26집 152~234쪽,
1998. 12. 光州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 李義權, 「朝鮮後期의 觀察使와 그 統治機能」, *全北史學* 제9집 87-147, 1985.
12. 전주 전북대학교 사학회
- 任先彬, 「麗末鮮初 京 · 外官職 分化와 使臣의 外官의 專任外官化」, 朝鮮時代
의 社會와 思想 37~69쪽, 1998. 4. 서울 朝鮮社會研究會
- 任先彬, 「朝鮮初期 外官制度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
位論文 204쪽, 1997. 9.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 任先彬, 「朝鮮初期 ‘外方使臣’에 대한 試論 -개념·종류 및 과정추이-」, 朝鮮
時代史學報 5, 朝鮮時代史學會, 1998. 6.
- 張炳仁, 「朝鮮初期의 觀察使」, 韓國史論 4 131~188쪽, 1978. 3. 서울 서울대학
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曹昇鎬, 「江原監營의 行政體制와 施設의 變遷」, *江原文化研究* 第16輯 75~105
쪽, 1997. 11. 春川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 曹昇鎬, 「朝鮮時代 江原監營 研究」,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8.
- 崔先惠, 「高麗末 · 朝鮮初 地方勢力의 動向과 觀察使의 派遣」, *震檀學報* 第78
號 59-84, 1994. 12. 서울 震檀學會
- 崔先惠, 「朝鮮初期 留鄉品官 研究」, 西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쪽,
1998. 6. 서울 西江大學校 大學院

■ 집 필자

임 선빈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부장

기본연구 01-0

충청도 관찰사에 대한 기초연구

발행자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발행일 : 2002년 월 일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320-91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7611 팩스 : (042)841-9902

인쇄처 : 필성인쇄사 (042)252-16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